

뉴질랜드

정보수정일자: 2014. 06. 30.

작성처: 오클랜드 무역관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재,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되며 위반 시에는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http://www.kotra.or.kr>
<http://www.globalwindow.org>

◀ 목 차 ▶

I. 국가일반

국가개요 / 1
정치사회동향 / 4
한국과의 주요이슈 / 18

II. 경제

경제지표 DB/ 22
경제동향 및 전망 / 23
주요산업동향 / 27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 36

III. 무역

1. 교역동향

수출입동향 / 38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 41

2. 무역관련 주요제도 및 절차

수입규제제도 / 44
대한수입규제동향 / 48
관세제도 / 51
주요인증제도 / 53
지식재산권 / 61
통관절차 및 운송 / 63

3. 무역환경

수출유망품목/ 68
시장특성/ 70
바이어 발굴/ 73
상관습 및 거래 시 유의사항/ 77
주요 전시회 개최일정/ 79
수출성공, 실패사례 / 85
수출 시 애로사항 / 88

IV.투자

1. 투자환경 및 동향

- 투자환경 / 89
- 투자 인센티브 제도/ 92
- 외국인 투자동향 / 94
- 한국기업 투자동향 / 98
- 한국기업 진출현황 / 101
- 투자진출성공, 실패사례 / 103

2. 외국인투자 유치제도

- 주요 투자법 내용 / 106
- 투자방식 / 109
- 투자진출형태 / 110
- 진출형태별 절차 / 113
- 투자법인 철수 및 청산/ 117
- 투자입지여건/ 118
- 투자진출 시 애로사항/ 120

3. 사업관리

- 노무관리제도 / 123
- 조세제도 / 127
- 금융제도 / 130
-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 131

V. Business 참고정보

- 물가정보 / 133
- 취업유망분야 및 유의사항/ 135
- 비즈니스 에티켓/ 137
- 이주정착 가이드/ 139
- 생활여건/ 145
- 취향정보/ 154
- 출입국 및 비자제도/ 157
- 관광, 호텔, 식당, 통역/ 161
- 출장 시 유의 및 참고사항/175
- 유관기관 웹사이트 / 179
- KOTRA 무역관 안내/ 179



I. 국가일반

1. 국가개요

가. 일반 사항

국 명	뉴질랜드(New Zealand) 원주민인 마오리어는 아오테아로아(Aotearoa, 길고 흰 구름의 땅)
위 치	남반구 남서 태평양 (호주대륙에서 동남쪽으로 약 2,000km) - 해안선: 태즈먼 해, 남태평양 (15,811km)
면 적	270,534 km ² (남한의 2.7배) (북섬 11만 6,000 km ² , 남섬 15만 1,000km ²)
기 후	온난해양성 기후(1월 평균 16.5도, 7월 평균 8도)
수 도	웰링턴(Wellington) - 1865년 오클랜드에서 천도
인 구	○ 450만 6천명(2014년 1월 기준) - 북섬에 약 76% 거주
주요 도시	오클랜드 (153만), 웰링턴 (45만, 수도), 크라이스트처치(37만), 해밀턴 (15만)
인 종	유럽인(70%), 마오리(14%), 아시아인(11%), 남태평양 도서국(7%), 기타(3%) (2013년)
언 어	영어(공용어), 마오리어(원주민어)
종 교	기독교 약 51%, 및 여러 종교 산재
건국일	1840.2.6 (영국 총독과 마오리 대표간 Waitangi 조약 체결)
정부형태	의원 내각제 (3년마다 총선실시)
국가원수	영국 Queen Elizabeth II
수 상	John Key (국민당 당수, 2008.11월 취임, 2011.11월 연임)

자료: Statistics New Zealand (www.stats.govt.nz)

나. 경제 지표

GDP (명목)	NZ\$ 2,230억 (연간, 2013 기준 = US\$1,811억)
경제 성장률	2.5% (연간, 2013년)
1인당 GDP(명목)	US\$ 40,465 (2013년)
1인당 GDP (구매력 평가 기준)	US\$ 30,396 (2013년)
실업률	6.0% (2013년)
소비자물가상승률	1.1% (2013년)
화폐단위	NZ Dollar(NZ\$)
환 율	NZ\$1 = US\$0.8658 (2014년 6월말 기준, 기준율)
외채	채무: NZ\$ 2,486 억 (민간부문 NZ\$ 1,990 억, 정부부문 NZ\$ 495 억) 채권: NZ\$ 1,079 억 (민간부문 NZ\$ 672 억, 정부부문 NZ\$ 407 억) 순 대외부채: NZ\$ 1,480 억 (자산포함 내역, GDP 대비 66.4%) (2014 년 3 월 기준)
외환보유고	US\$ 182억 (2014년 3월 기준)
산업구조	1차 산업(6.01%), 제조업(13.33%), 전기가스수도(2.02%), 건설(5.40%), 도소매 숙박(12.24%), 운송 통신(11.92%), 금융 보험(4.67%), 공공행정안전(4.12%), 부동산임대(12.35%) (2014년 3월 기준)
교역규모	US\$ 755.69억 (수출 US\$ 373.10억, 수입 US\$ 382.62억), 2012년 US\$ 791.06억 (수출 US\$ 397.79억, 수입 US\$ 396.27억), 2013년

자료: 통계청, IMF, 뉴질랜드 중앙은행, World Trade Atlas

다. 주요 교역 품목

수 출	낙농 제품, 육류, 목재, 양모, 수산물
수 입	기계류, 전기전자, 차량, 원유, 철강, 플라스틱

라. 한-뉴질랜드 관계

특수 관계	1950년 한국전에 뉴질랜드 군인 6,020명이 참전, 45명이 전사함. 북한과는 2001.3.26 수교하였으나, 대사관을 설치하지는 않았음.
체결 협정	○ 대사급 수교(1962), ○ 무역경제기술협력협정(1967.7), ○ 어업협정(1978.3), ○ 국제운수소득면세협정(1978.12), ○ 이중과세방지협정(1981.11), ○ 항공협정(1993.8), ○ 사증면제협정(1994.8), ○ 임업협력협정(1997.4), ○ 과학기술의정서(1997.9), ○ 취업관광사증협정(1999.5), ○ 형사사법공조협정(2000.3), ○ 방산물자품질보증약정(2000.11), ○ 범죄인인도조약(2001.5), ○ 영화공동제작 약정(2005.11), ○ 경찰협력약정(2006.6), ○ 농림부간협력약정(2007.4), ○ 군수협력협정(2007.11), ○ 영화공동제작협정(2008.9), ○ 관세상호인정협정(2011.6)
무역 규모	한국 수출 US\$14억9,121만, 한국 수입 US\$13억9,469만 (2013년 기준)
교역 품목	○ 한국의 수출: 석유제품,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철강 ○ 한국의 수입: 목재, 육류, 축산가공품, 기타석유화학
투자 교류	○ 우리나라는 도소매, 광업·농림어업, 숙박 및 요식업 등을 중심으로 신고기준 총 누적 543건, US\$ 4억9,445만 규모의 뉴 뉴 투자를 함. (2014년 3월기준) ○ 뉴질랜드는 제조,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신고기준 총 누적 91건 US\$ 7,124만 규모의 뉴 뉴 투자를 함. (2014년 3월기준)
교 민	2013년 인구센서스 결과, 한국출생 이민자수는 2만5,000명이며 뉴질랜드 출생자까지 포함할 경우 약 3만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뉴질랜드 전체 인구대비 약 0.7%에 해당하며 아시아계 이민자중 중국(17만), 인도(14만), 필리핀(4만)에 이어 네번째로 높다.

2. 정치사회동향

가. 정치약사

□ 10세기 뉴질랜드의 발견

뉴질랜드는 10세기경 폴리네시아 문화를 계승한 마오리족에 의해서 최초로 발견되었으며, 유럽인으로는 1642년 네덜란드인 아벨 타스만(Abel Tasman)이 최초로 발견하였다. 1769년 영국인 제임스 쿡 선장이 뉴질랜드를 탐험하며 많은 유럽인들이 뉴질랜드에 정착하기 시작하였다.

The Treaty of Waitangi (와이탕이 조약)

1. 의의

- 와이탕이 조약은 뉴질랜드 역사상 가장 중요한 문서
- 1840년 당시 유럽 이주민과 마오리 원주민들 사이에 특히 토지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마찰이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영국정부는 와이탕이 조약을 체결하고 뉴질랜드에 대한 식민통치를 본격화

2. 배경

- 1830년 이후 이민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났으며 1840년에 이르러서는 2,000명 이상의 유럽인 이 정착하게 됨. 마오리 원주민과 유럽이민 정착인들 사이에서는 늘 크고 작은 분쟁이 계속 됨.
- 영국 정부는 뉴질랜드에 군사력을 동원한 식민화보다는 조약 체결을 통한 식민화를 추진하게 됨

3. 주요 내용

- 마오리 부족장은 영국여왕에게 주권 이양
- 부족장 소유의 땅(토지), 자원 등의 소유권 보장. 단 모든 거래는 여왕을 당사자로만 성사
- 마오리 부족 모두에게 영국시민과 같은 권리와 특혜 부여

1840년 마오리족 대표와 영국 대리인 사이에 ‘와이탕이 조약(Treaty of Waitangi)’이 체결됨으로써 뉴질랜드는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다. 1907년 9월 26일 뉴질랜드는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여 영국의 자치령이 되었다가 1931년 영연방 정식회원국이 되었다.

□ 2014년 현재

2008년 11월 총선거 이후 2011년 연임에 성공한 존 키(John Key) 총리의 국민당은 경제 자유주의 시장논리를 바탕으로 뉴질랜드 경제회복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전 정부에 비해 경제적 자유를 보다 넓게 인정하면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인프라 투자, 자원개발 및 감세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나. 국가 조직 구성 및 제도

1) 정치 체제

뉴질랜드는 의원내각제 국가이나 일부 영연방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명목상 국가원수는 영국 여왕 Queen Elizabeth 2세로, 입헌군주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국가원수의 권한은 영국 여왕에 의해 임명된 총독에 있으며, 총독은 5년의 임기를 가진다. 단, 뉴질랜드 총독은 주권을 대표하지만 평시에는 상징적인 정치적 권력만을 보유한다.

뉴질랜드 총독(Governor-General)은 2011년 8월 31일에 취임한 전직 방위군 총 사령관 출신인 제리 마티파라이(Jerry Mateparae) 중장이다. 그는 뉴질랜드 최초의 마오리 방위군 참모총장이며, 역사상 두 번째 마오리 총독이다.

2) 선거 제도

개별 후보와 정당에 각각 투표하는 방식으로 지역구 및 전국구 의원을 뽑는 방식으로 되어 있으며 매 3년 마다 총선이 있다.

선거권은 뉴질랜드 국적/영주권 보유 여부와 상관 없이 1년 이상 뉴질랜드에 합법적으로 거주한 만 18세 이상의 사람에게(단 1개월 이상 해당지역 선거구에서 거주해야 함) 부여되고, 피선거권은 선거권을 가진 시민권 자에게만 부여된다.

3) 행정부

뉴질랜드는 단일국가(Unitary State)로 구성되어 있다. 중앙정부-기초 지방단체의 2원 정부체제(Two-Tier System)로 운영되고 있으며, 단원제의 의원 내각제를 운영하고 있다.

의원 내각제로 3년마다 실시되는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의 당수가 수상이 되며 수상이 임명한 의원이 각료가 되어 내각을 구성하고 있다. 이들 장관들은 정부 의사결정의 주도 역할을 하며 국무위원들은 정책 입안 및 정부주도의 법률안 제출과 행정 관장 및 세출 결정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일부 부처의 경우 여러 명의 담당 장관들이 존재하며 일개 장관이 여러 부처를 겸임하는 경우도 흔하다. 그래서 사무차관(Chief Executive) 제도를 도입하여 장관(Minister)은 의원이 겸직하고 실무는 사무차관이 담당하고 있다.

정부 주요 부처 및 담당 사무차관

부처 명	소속장관직	사무차관 명
기업혁신고용부(Ministry of Business, Innovation and Employment)	Minister of Tourism Minister for Regulatory Reform Minister for Tertiary Education, Skills and Employment Minister for Small Business Minister for Economic Development Minister of Science and Innovation Minister for ACC Minister of Housing Minister for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Technology Minister of Commerce Minister of Consumer Affairs Minister of Energy and Resources Minister of Labour Minister of Immigration Minister for Building and Construction	David Smol
재무부(The Treasury)	Minister of Finance) Minister of State Own Enterprise	Gabriel Makhoul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	Minister for Tertiary Education, Skills and Employment Minister of Education	Peter Hughes
법무부(Ministry of Justice)	Minister of Justice Minister for Courts	Andrew Bridgman
보건부(Ministry of Health)	Minister of Health	Chai Chuah
외교통상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Minister of Trade	John Allen
국방부(Ministry of Defence)	Minister of Defence	Helene Quilter
환경부(Ministry for the Environment)	Minister for Climate Change Issues Minister for the Environment	Paul Reynol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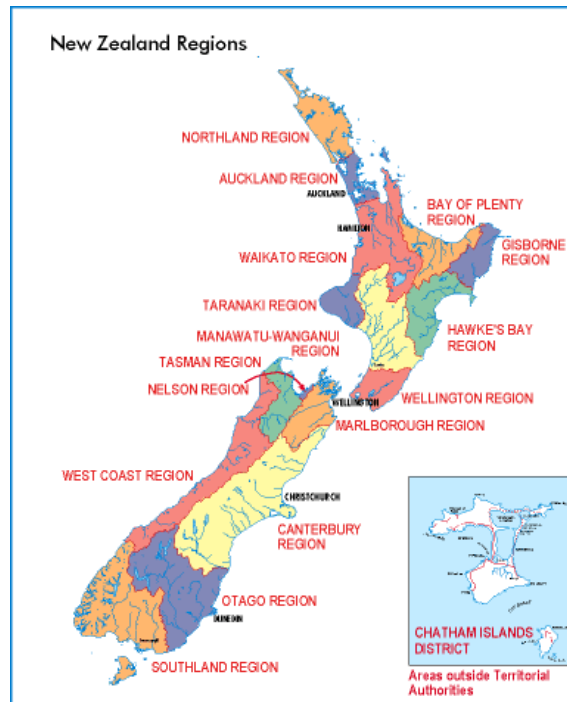
부처 명	소속장관직	사무차관 명
내무부(Department of Internal Affairs)	Minister responsible for Ministerial Services Minister for Ethnic Affairs Minister of Local Government Minister for Racing Minister of Civil Defence Minister for Community and Voluntary Sector Minister of Internal Affairs	Colin MacDonald
문화유산부(Ministry for Culture and Heritage)	Minister for Arts, Culture and Heritage Minister for Sport and Recreation Minister of Broadcasting	Lewis Holden
환경보호부(Department of Conservation)	Minister of Conservation	Lou Sanson
1차산업부(Ministry for Primary Industries)	Minister for Primary Industries Minister for Food Safety	Martyn Dunne
마오리개발부(Ministry of Māori Development)	Minister of Māori Affairs Minister for Whānau Ora	Michelle Hippolite
남태평양도서부(Ministry of Pacific Island Affairs)	Minister of Pacific Island Affairs	Pauline Winter
사회개발부(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Minister for Social Development Minister of Youth Affairs Minister for Senior Citizens	Brendan Boyle
교통부(Ministry of Transport)	Minister of Transport	Martin Matthews
여성부(Ministry of Women's Affairs)	Minister of Women's Affairs	Jo Cribb

주: 각부 장관은 다. 주요인사의 내각명단 참고

자료: 뉴질랜드 정부포털(www.newzealand.govt.nz, 2014년 6월 기준)

지방 행정조직은 16개 Region, 13개의 City, 53개의 District, 1개의 특별 Territory(67개 Territorial Authorities)로 각각 지방의회 (Council)가 있으며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방 행정조직도



4) 사법부

불문법 국가로 성문헌법은 없으며 New Zealand's Constitution Act 1986 이외에 영국법률(Imperial Acts)과 역사적인 성문법(Magna Carta, Habeas Corpus Act 1679 등)이 헌법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 영국 법률들은 뉴질랜드 국내법 Imperial Laws' Application Act 1988에 열거되어 있다.

뉴질랜드는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한 상소법원,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 등 4심 제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 외에 특정분야의 법률문제를 다루는 특수법원으로 Small Claims Tribunal, Labor Court, Maori Land Court, Children & Young Persons Court, Family Court Division, Dispute Tribunal 등이 있다.

판사는 우리와 달리 변호사로서 7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대상으로 소정의 추천 절차를 거쳐 임용하며 실제로는 최소 15년 이상의 변호사 경험이 있는 자들이 임용되는 게 관례화 되어 있다.

뉴질랜드에는 한국과 같은 검찰청이 따로 없고 수사권은 경찰에 일임되어 있으며, 정부 기관의 법률 업무는 왕실 변호사(Crown Solicitor)란 기관이 담당하며 수사권은 없다. 다만, 한국적인 의미에서의 검사 역할, 즉 기소 변호사(Prosecutor)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와의 계약에 의해 한 변호사 사무실이 그 업무를 맡아 하게 된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헌법과 헌법재판소가 따로 없다는 점에서 최고 법원인 대법원이 정부에 대한 최대의 견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5) 의회

영국 의회는 1852년 The New Zealand Constitution Act를 제정하여 뉴질랜드 의회를 인정하였다. 영국식 의원내각제를 통해 국정이 운영되고 있고 1893년 세계 최초로 여성의 참정권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 임기 3년의 단원제 및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혼용하며 2012년 기준 의석 총수는 121석이다

총선은 3년마다 비밀투표로 실시되며 18세 이상인 뉴질랜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물론 합법적인 거주자중 1년이상 뉴질랜드에 체류하고 선거구에 1개월이상 거주할 경우 선거권이 주어진다. 유권자는 정당에 한 표, 선거구의 후보자에게 한 표씩을 행사하는 혼합비례 선거제도 (MMP; Mixed Member Proportional Representation)를 채택하고 있다. 가장 최근의 총선은 2011년 11월 26일 실시되었으며, 집권당인 국민당이 59석을 얻어 재집권에 성공했다.

정당 별 득표 및 의석 현황(2011년 11월 총선 결과)

정당 명	정당 득표	지지율	지역구	전국구	총 의석
 국민당 (National Party)	1,058,636	47.31	42	17	59
 노동당 (Labour Party)	614,937	27.48	22	12	34
 녹색당 (Green Party)	247,372	11.06	0	14	14
 뉴질랜드 제일당 (New Zealand First Party)	147,544	6.59	0	8	8

정당 명	정당 득표	지지율	지역구	전국구	총 의석
 마오리당 (Maori Party)	31,982	1.43	3	0	3
 마나당 (Mana)	24,168	1.08	1	0	1
 행동당 (Act New Zealand)	23,889	1.07	1	0	1
 미래연합당 (United Future)	13,443	0.6	1	0	1
총계			70	51	121

자료: 뉴질랜드 선거관리위원회 (2014년 6월 기준)

의회구성은 의장(Speaker), 부의장(Deputy Speaker), 위원회 전체의장(Chairman of Committees), 사무총장(Clerk of the House), 정무장관(Minister of State) 그리고 18개에 달하는 분과 위원회(Select Committee)로 되어 있다.

다. 주요인사

뉴질랜드 정부각료명단

이름	직위
 John Key	국민당 당수 총리 (Prime Minister) 관광부 장관 (Minister of Tourism) 겸임 정보부 장관 (Minister in Charge of the NZ Security Intelligence Service) 겸임 정부통신보안부 장관 (Minister responsible for the Government Communications Security Bureau) 겸임

이름	직위
 Bill English	부총리 (Deputy Prime Minister) 재무부 장관 (Minister of Finance) 겸임 규제개혁부 장관 (Minister of Regulatory Reform) 겸임
 Gerry Brownlee	교통부 장관 (Minister of Transport) 캔터베리 지진재건청 장관 (Minister for Canterbury Earthquake Recovery) 겸임
 Steven Joyce	경제개발부 장관 (Minister for Economic Development) 과학혁신부 장관 (Minister of Science and Innovation) 겸임 소상공인 장관 (Minister for Small Business) 겸임 고등교육부 장관 (Minister for Tertiary Education, Skills and Employment) 겸임
Judith Collins	법무부 장관 (Minister of Justice) 사고보험공사 장관 (Minister of ACC) 겸임 소수민족부 장관 (Minister of Ethnic Affair) 겸임
Tony Ryall	보건부 장관 (Minister of Health) 국유기업부 장관 (Minister for State Owned Enterprises) 겸임
Hekia Parata	교육부 장관 (Minister of Education)
Christopher Finlayson	검찰총장 (Attorney-General) 와이탕이 조약부 장관 (Minister For Treaty of Waitangi Negotiations) 겸임 예술문화유산부 장관 (Minister for Art, Culture and Heritage) 겸임
Paula Bennett	사회개발부 장관 (Minister for Social Development) 지방자치정부담당 장관 (Minister of Local Government)
Dr. Jonathan Coleman	국방부 장관 (Minister of Defence) 공공사업부 장관 (Minister of State Service) 겸임
Murray McCully	외무부 장관 (Minister of Foreign Affairs) 체육부 장관 (Minister for Sport and Recreation) 겸임

이름	직위
Anne Tolley	경찰총장 (Minister of Police) 교정부 장관 (Minister of Corrections) 겸임
Dr. Nick Smith	자연보호부 장관 (Minister of Conservation) 건설부 장관 (Minister for Building and Construction) 겸임 주택부 장관 (Minister of Housing) 겸임
Tim Groser	통상부 장관 (Minister of Trade) 기후 변화부 장관 (Minister for Climate Change Issues) 겸임
Amy Adams	환경부 장관 (Minister for the Enviroment) 정보통신부 장관 (Minister for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Technology) 겸임
Nathan Guy	1차산업부 장관 (Minister for Primary Industries) 경마부 장관 (Minister for Racing) 겸임
Craig Foss	상무부 장관 (Minister of Commerce) 소비자보호부 장관 (Minister of Consumer Affairs) 겸임 방송부 장관 (Minister of Broadcasting) 겸임
Simon Bridges	에너지자원부 장관 (Minister of Energy and Resources) 노동부 장관 (Minister of Labour) 겸임
Nikki Kaye	식품안전부 장관 (Minister for Food Safety) 민방위 장관 (Minister of Civil Defence) 겸임 청소년부 장관 (Minister of Youth Affairs) 겸임
Jo Goodhew	복지부 장관 (Minister for the Community and Voluntary Sector) 노인부 장관 (Minister for Senior Citizens) 겸임 여성부 장관 (Minister of Women's Affair) 겸임
Chester Borrows	대법원장 (Minister for Courts)
Michael Woodhouse	이민부 장관 (Minister of Immigration) 국토정보부 장관 (Minister of Land Information) 겸임 보훈부 장관 (Minister of Veterans' Affairs) 겸임
Todd McClay	국세청 장관 (Minister of Revenue)
Nicky Wagner	관세청장 (Minister of Customs) 통계청장 (Minister of Statistics) 겸임
Peseta Sam Lotu-liga	태평양도서국관할 장관 (Minister of Pacific Island Affairs)
Dr. Pita Sharples	마오리담당 장관 (Minister of Maori Affairs)
Tariana Turia	와나우오라(마오리 보건)담당 장관 (Minister for Whanau Ora) 장애문제담당 장관 (Minister for Disability Issues) 겸임
Peter Dunne	내무부 장관 (Minister of Internal Affairs)

주: 인물사진은 정부 핵심 인물 4인만 표기

자료: 내각부(Department of the Prime Minister and Cabinet, 2014년 6월 기준)

뉴질랜드 기타 주요인사

이름	비고
 David Cunliffe	정치인 현 노동당 당수 정보통신부 장관 역임 (2002~2008) 보건부 장관 역임 (2007~2008)
 Winston Peters	정치인 현 뉴질랜드 제일당 당수 부총리 역임 (1996~1998) 외무부 장관 역임 (2005~2008)
 Helen Clark	현 유엔개발계획 (UNDP) 사무총장 총리 역임 (1999~2008)

자료: 뉴질랜드 의회, UNDP (2014년 6월 기준)

라. 외교관계

1) 외교 기초

외교는 뉴질랜드의 최우선 국가 전략이다. 뉴질랜드는 효과적인 외교정책을 통해서 혁신과 고품질을 기반으로 하는 지속 가능한 경제건설, 고유의 국가 정체성과 가치 투여, 뉴질랜드 국민의 미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장기전략 개발 등의 국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이 세 가지를 달성하기 위해 뉴질랜드는 국제사회의 좋은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여 국가 전체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 것을 외교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 따라서 뉴질랜드는 자국의 단기·중기·장기 이익보다 국제적인 명분과 정의를 먼저 고려한다. 외교정책 수행 과정에서 뉴질랜드가 감수해야 하는 부담감이나 손해가 있더라도 국제적인 명분과 정의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뉴질랜드 정부는 국민들이 희생을 감수하도록 국민을 설득한다.

현재 뉴질랜드 외교부는 이러한 외교정책 기초를 이어가기 위해 외교정책의 목표와 우선 순위를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많은 대내외 토론을 통해 정책을 개선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한다.

2) 주요 국가들과의 관계

□ 호주

Trans-Tasman Travel Agreement에 의해 양국 국민들은 자유롭게 상대국을 여행할 수 있고 거주도 용이하다. 약 40만명의 뉴질랜드인이 호주에, 약 5만명의 호주인이 뉴질랜드에 거주하며 매년 단기 방문자는 약 100만 명에 이른다. 양국은 또한 정치·안보 면에서 가장 중요한 우방국가로 간주, 연례 총리회담 및 반년마다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는 한편, 군사·안보 협력을 위하여 CDR(Closer Defence Relations)로 일컬어지는 국방협력관계 유지 및 연례 국방장관 회의도 개최한다.

□ 중국

2008년 중국과 FTA를 체결한 이후 양국간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호주를 제치고 최대 무역국으로 떠올랐다. 2013년 기준, 뉴질랜드의 대중국 무역규모는 전체 수출의 21%, 수입의 17%를 차지하고 있으며 계속 증가하고 있다. 무역 증가세와 더불어 인적 교류 또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중국 출신 이민자수는 최근 6년간 급증하여 2013년말 현재 17만 명을 기록하고 있다.

□ 미국

제 2위의 무역 상대국(수출 2위, 수입 3위)이며 정치, 외교, 국방 등 모든 방면에 있어서 관계가 중시된다. 1985년 2월 뉴질랜드 정부의 미핵함 기항거부로 양국관계가 악화되고 뉴질랜드는 사실상 ANZUS 동맹으로부터 축출되었으나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2010년 11월 힐러리 국무장관이 방뉴, 뉴질랜드의 반핵정책으로 야기된 양국의 불편했던 관계를 공식적으로 청산하는 의미의 웰링턴 선언을 발표하였고, 현재 기후변화 및 통상, 과학 분야 등 국제·지역 이슈에서의 양국간 교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 영국

영국 여왕이 뉴질랜드 국가원수로서 전통적으로 특별한 유대관계를 지속하고 있으며,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아직도 다수 뉴질랜드 인들은 모국 같은 감정을 유지하고 있다. Don McKinnon 전 뉴질랜드 외교통상부 장관이 2000년부터 8년간 영연방 (Commonwealth) 사무총장을 역임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아시아와의 관계증진 등에 따라 젊은 세대들에게는 영국왕실과의 유대관계의 의미가 약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유럽

EU와의 전통적 유대관계가 강화되고 있으며, 특히 EU시장에 대한 수출 확대에 관심이 많다. 1996년 프랑스의 남태평양 핵실험으로 야기된 양국간 대립관계에 대해, 1997년 10월 Jim Bolger 총리가 프랑스를 공식방문, 양국 관계의 완전 회복을 선언했다.

마. 최신정보

1) 정치 동향

□ 2014년 총선일자 확정

정부는 2014년 9월 20일에 총선을 치르기로 발표했다. 이는 대개 11월에 치러지던 예년 총선에 비해 두달정도 앞당겨진 일정으로 11월에 예정된 호주 브리즈번 G20 정상회담과의 일정충복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는 뉴질랜드 국기변경을 묻는 국민투표도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밝혀졌다.

□ 존 키 총리 중국 국민 방문

2014년 3월 19일 중국을 국민 방문한 존 키 총리는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정상회담에서 양국정상은 양국 무역 교역량을 2020년까지는 300억 달러로 늘리는 데에 합의를 하였으며 뉴질랜드 달러와 중국 위안화의 직거래를 합의했다.

뉴질랜드와 중국의 지난 해 교역량은 182억 달러로 나타났으며, 2015년까지는 200억 달러로 목표를 세우고 있으며, 2030년까지는 300억 달러로 교역량을 늘리는 데에 양국 정상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뉴질랜드 정부는 4,000만 달러를 들여 새로운 대사관을 지을 것으로 알려졌으며, 뉴질랜드 외교통상부와 1차 산업부는 중국주재 직원들을 보강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중국으로부터 더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으로 밝혔다.

□ 김닥컴 인터넷당 창당

2014년 3월 27일 김닥컴의 인터넷당이 공식 창당을 선언하고 9월에 있을 총선에 참여하기로 발표하였다. 미국의 불법 파일공유 사이트 운영자로, 현재 뉴질랜드에 체류하고 있는 김닥컴은 1석을 가지고 있는 마나당과의 연합을 통한 국회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6월 17일에 실시한 정당지지도 여론조사에서 처음으로 인터넷당이 조사대상으로 등록되었으며 약1%의 지지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뉴질랜드 집권당 과반 이상의 지지도

2014년 6월, 뉴질랜드 주요언론인 헤럴드지의 여론조사에서 집권 국민당이 50%의 꾸준한 지지도를 보이며 올 9월에 있을 총선에서 단독집권의 가능성을 높였다. 제1야당인 노동당은 30.5%로 국민당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으며 노동당의 연정파트너인 녹색당과의 지지도를 합해도 41.2%에 불과해 국민당을 따라잡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뉴질랜드 해군 30년만에 미 해군기지 입항

2014년 6월 26일에서 8월 1일까지 하와이에서 실시하는 미 태평양 함대 주도의 환태평양 합동 군사훈련인 림팩 훈련에 뉴질랜드 해군이 참가하여 30년만에 미 해군기지에 기항하게 되었다.

1985년 노동당 정부 시절 미 핵추진 군함의 뉴질랜드 입항거부로 시작된 양국간의 절끄러운 관계가 국민당 정부가 들어선 이후 대미 관계의 개선노력이 지속되었고 6월 20일 미국에서 개최된 존 키 총리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우호관계를 재확인하며 문제가 해결되었다.

림팩 훈련은 지구 상 최대의 연합 해상훈련으로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태평양 연안의 23개 국가 함정들이 참가하며 2년 전에도 뉴질랜드가 참가했으나 미국 해군기지 안에는 정박하지 못했다.

2) 사회동향

□ 인구 센서스 조사 실시

2006년 이후 7년만에 실시된 인구센서스 조사가 발표되었다. 2013년 12월 공개된 인구 센서스 조사 결과에서 뉴질랜드의 인구는 지난 7년 동안 21만4,000명이 늘어난 424만 2,000명으로 집계되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뉴질랜드의 인구는 매년 3만 명 정도씩 늘어난 것으로 그 이전의 2001년부터 2006년 사이의 5만8,000명의 매년 인구 증가 현상에 비하여 그 절반 정도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인구 센서스 조사 결과에 따라 도시 개발 계획 및 도로 확보 등의 사회 간접 자본의 투자 계획을 비롯하여 병원, 학교 등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서 재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 뉴질랜드 인구 450만 돌파

2013년 12월 뉴질랜드 전체인구가 45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통계청이 발표했다. 통계청에 의하면 매 7분마다 아기가 태어나고, 14분마다 이민자가 유입되고 있으며 17분마다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통계청이 발표한 전체인구 450만 명은 올해 3월에 실시한 인구센서스 결과 424만 명과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인구센서스 조사 당시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센서스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들로 생긴 격차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뉴질랜드 전체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6년경에 500만 명을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합성 마약류 판매 금지조치 시행

2014년 5월 8일부터 합성 마약류 판매 금지 조치가 시행됐다. 합성 마약류에 대한 판매 금지 조치가 시행되며, 합성 마약류를 소지하거나 공급 또는 제조하는 행위들도 불법적인 행위로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판매 허가를 받은 35개 브랜드 제품들이 모두 새로운 법안에 포함되어 합성 마약류는 일체 판매가 금지되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즉 합성 마약류 소지자는 500 뉴질랜드달러의 벌금 그리고 제조 또는 공급자에게는 50만 뉴질랜드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뉴질랜드 약물 재단에서는 약물 복용이 꼭 필요한 환자들을 위하여 이들에 대해서만 6개월 유보를 요청하고 있으며, 약 150~200명 정도가 이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3. 한국과의 주요이슈

가. 개관

뉴질랜드는 6.25 참전 및 62년 수교이래 정치, 외교분야에서 전통적 우호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국제무대에서 양국간 긴밀한 협조와 지지입장을 견지해온 한국의 전통적 우방국이다.

1) 한국-뉴질랜드 FTA 협상

□ FTA 진행경과

뉴질랜드는 한국이 FTA 연구를 한 첫 번째 국가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9년 뉴질랜드 국빈방문 당시 양국간 FTA 연구에 동의하여 한국 대외 경제정책 연구원 (KIEP)과 뉴질랜드 경제 연구원(NZIER)이 연구에 착수하여 FTA 체결 시 한국과 뉴질랜드가 확보할 순경제적 편익을 밝혀낸 바 있다.

본격적인 양국간 FTA 협상은 2009년 3월 3~4일 뉴질랜드에서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과 존 키(John Key)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 협상의 공식 개시가 선언되면서부터다. 그 후 4차례 협상이 한국과 뉴질랜드를 오가며 진행되었으나 주요 쟁점에 대해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해 진전되지 못하고 2012년 10월 서울에서 개최된 양국간 FTA 수석대표 회의 이후 중단되었다.

2013년 7월 26일 한국을 방문한 존 키(John Key) 총리와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FTA 협상 재개에 합의하여 2014년 6월 현재 총 7차례의 협상이 개최되었다.

□ 최신동향

2014년 6월 8일~13일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제7차 한-뉴 FTA 협상이 개최되었다.

제7차 FTA 협상 참석자

한국: 이성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심의관(수석대표) 외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외교부, 관세청, 산림청 등 정부대표단

뉴질랜드: 마틴 하비(Martin Harvey) 외교통상부 국장(수석대표) 외 외교통상부, 1차산업부, 기업혁신공용부, 관세청 등 정부대표단

양측은 남은 쟁점을 해소하기 위해 각 분야별로 협상을 진행하였고, 특히 상품 분야에서는 양측 간 첨예한 이견을 좁히기 위해 수석대표 간 협의도 실시했다.

그 결과, 서비스, 투자, 원산지, 총칙, 협력, 지식재산권 등 분야에서는 양국 간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루었으나, 상품 분야에서는 우리 농산물의 민감성을 보호하는 수준에 대한 양국 간 의견차가 여전히 커서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 양국간 FTA 협상 연혁

1999년 9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뉴질랜드 방문을 계기로 양자간 FTA 연구개시
 2009년 3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존 키 총리간의 양자 FTA 협상 개시 선언
 2009년 6월, 1차 협상 개최 (서울)
 2009년 9월, 2차 협상 개최 (웰링턴)
 2009년 12월, 3차 협상 개최 (서울)
 2010년 5월, 4차 협상 개최 (웰링턴)
 2012년 10월, 양국 FTA 수석대표간 회의 (서울)
 2013년 7월, 박근혜 대통령과 존 키 총리간에 FTA 협상 재개 합의
 2014년 2월, 5차 협상 개최 (웰링턴)
 2014년 3월, 6차 협상 개최 (서울)
 2014년 4월, 회기간 협상 개최 (인도네시아)
 2014년 6월, 7차 협상 개최 (오클랜드)

2) 무역/통상

□ 한국-뉴질랜드간 교역규모 증가세

한편, 1987년 1억 달러를 돌파했던 뉴질랜드로의 수출이 24년만인 2011년 10억 달러를 돌파, 11억 달러를 기록함으로써 수출증가세가 탄력을 받고 있다. 그러나, 2013년 우리나라의 對 뉴질랜드 수출은 2012년도 32.7%의 급상승 후 숨 고르기가 진행되면서 1.8% 성장에 그쳤다. 수출품목은 승용차, 경유, 휘발유, 철도차량 등이며, 수입품목은 원목, 낙농품, 가축육류 등이다.

2014년 5월 기준, 한국의 對뉴질랜드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30% 상승한 7억 7,654만 달러,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6% 상승한 6억 5,398만 달러로 1억 2,256만 달러의 흑자를 이어가고 있다.

3) 정무/문화

많은 뉴질랜드인들은 아직도 한국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어 있는 나라 등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양국 관계의 심화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한, 한류가 전파되지 않은 미개척지로, 뉴질랜드 거주 아시아계 이민자와 일부 마니아 층을 제외하고는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가 그다지 높은 편이 아니다. 지속적인 문화적, 정서적 격차 해소를 통해 뉴질랜드에 한국에 대한 호의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4) 경제협력

뉴질랜드는 정치·경제적으로 APEC국과의 관계증진을 대외정책의 핵심으로 추진중인 바, APEC, EAS(동아시아정상회의) 등에서 우리나라와 긴밀한 협력을 맺고 있다.

5) 한국과의 주요인사교류 현황

방뉴	방한
1968년 9월 박정희 대통령	1993년 5월 Jim Bolger 총리
1972년 2월 백두진 국회의장	1996년 5월 Jim Bolger 총리
1977년 8월 정일권 국회의장	1999 7월 Jenny Shipley 총리
1999년 9월 김대중 대통령	2001년 5월 Helen Clark 총리
2000년 3월 박준규 국회의장	2003년 7월 Helen Clark 총리
2006년 12월 노무현 대통령	2006년 4월 Silvia Cartwright 총독
2009년 3월 이명박 대통령	2008년 5월 Helen Clark 총리
2014년 2월 강창희 국회의장	2010년 7월 John Key 총리
	2012년 3월 John Key 총리
	2013년 7월 John Key 총리

나. 최신동향

1) 무역/통상

□ 한-뉴 통상장관회담 개최

2013년 12월, 발리에서 개최된 WTO 세계각료회의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팀 그로서(Tim Groser) 통상부 장관이 회담을 갖고 FTA협상을 재개하는데 합의했다. 회담에서 양측은 공식협상에서 상품 시장접근 이슈, 양국간 이익의 균형 확보방안을 포함한 협상 전 분야에 대한 논의를 진행키로 하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 2014 필데이스 농업박람회 한국기업 참가

2014년 6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남반구 최대규모의 필데이스(Fieldays) 농업박람회가 뉴질랜드의 농업도시 해밀턴에서 개최됐다.

오클랜드 무역관의 지원을 바탕으로, 박람회장에서 바이어를 발굴하고 수출 상담을 진행하는 등 현장마케팅에 참여하는 우리나라 대중소기업이 10여 개사에 달하며, 양국의 1차 산업 무역 증진에 크게 기여를 했다.

2) 정부/문화

□ 한국-뉴질랜드간 교육과정 교류협력 체결

2013년 11월 21일, 한국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뉴질랜드 교육청간에 양국간 교육 과정 상호 인정 및 연구, 연수 프로그램 개발 등 교류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한국에서 열린 이 협약식에는 캐런 푸타시(Karen Poutasi) 뉴질랜드 교육청장, 그랜트 맥퍼슨(Grant McPherson) 뉴질랜드 교육원장, 최운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등이 참석하였다.

□ 리디아 고 2014 뉴질랜드 체육대상 수상

2014년 2월 13일, 뉴질랜드 한인 골퍼 리디아 고(17, 한국명 고보경)가 역대 최연소의 나이로 뉴질랜드에서 가장 권위있는 체육상인 할버그상 대상(2013 Halberg Award Winner)을 수상했다.

현지 언론은 세계 여자골프 랭킹 4위인 리디아 고가 세계 여자 골프 계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이 수상 이유로 꼽혔다고 전했다.

□ 강창희 국회의장 뉴질랜드 방문

2014년 2월 14일부터 19일간 강창희 국회의장이 국회의장으로서 6년 만에 뉴질랜드를 공식 방문하였다.

강창희 의장은 방문기간 동안 존 키(John Key) 총리 및 데이비드 카터(David Carter) 국회의장을 면담하고, 전쟁기념관 방문 및 한국전 참전용사 초청오찬주최, 재외동포초청 간담회 주최 등의 일정을 가졌다.

뉴질랜드 주요인사와의 면담을 통해 양국 의회 간 교류확대, 남극분야협력, FTA체결 등 양국 간 주요현안을 심도 있게 협의하였으며, 2회에 걸친 동포간담회 개최를 통해 우리 동포사회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우리 정부의 맞춤형 재외동포정책을 설명하는 기회를 가졌다.

3) 경제협력

□ 한국-뉴질랜드 경제공동위원회 개최

2014년 3월 21일 안충기 외교부 경제조정관과 데이비드 워커(David Walker) 뉴질랜드 외교통상부 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한-뉴질랜드 경제공동위원회'를 웰링턴에서 개최하였다. 양측은 이번 공동 위에서 농업, 산림, 과학기술, 방위산업 그리고 교육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합의하였으며, 이를 위한 각 분야의 양자 협의회를 구성하여 적극 활용하기로 하였다.

II. 경제

1. 경제지표DB

구분	지표	단위	2013				
국가 일반	인구	(명)	450만 6천				
	면적	km ²	270,534				
	한반도 대비면적	배	2.7				
	지표	단위	2010	2011	2012	2013	2014 (1Q)
대내 경제	경제성장률	%	1.8	1.4	2.7	2.9	-
	1인당 GDP	US \$	32,455	36,687	38,255	40,465	-
	명목 GDP	US \$	1,423억	1,627억	1,704억	1,813억	-
	정부부채/GDP	%	16.0	20.3	24.4	22.6	-
	소비자물가상승률	%	2.3	4.0	1.1	1.1	2.1
	종합주가지수(NZX50)		3309.03	3274.71	4075.04	4769.04	5123.90
	실업률	%	6.7	6.5	6.9	6.0	-
대외 경제	수출실적	백만 US \$	31,419	37,707	37,310	39,479	11,449
	수입실적	백만 US \$	30,643	37,136	38,262	39,627	9,756
	대외의존도	%	43.6	46.0	44.4	43.6	-
	무역수지	백만 US \$	776	571	-952	-196	1675
	외국인투자금액(당해분)	억 NZ \$	100	137	60	-19	27
	총외채	억 NZ \$	1,465	1,470	1,528	1,476	1,480
	외환보유고	억 US \$	190	187	193	177	182
	이자율	%	2.50	2.50	2.50	2.50	3.25
	환율	US \$	0.78	0.77	0.82	0.83	0.85

주: 외국인투자금액. 총외채의 경우 NZ\$ 통계로 집계

자료: 뉴질랜드 통계청, 뉴질랜드 중앙은행, IMF, World Trade Atlas, 한국무역협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출입은행, 뉴질랜드 증권거래소

2. 경제동향 및 전망

가. 개관

뉴질랜드는 자유시장 원리를 바탕으로 개방 경제를 지향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 경기 위축으로 뉴질랜드 경제도 2009년과 2010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많은 영향을 받았다. 하지만 2009년 8.25%에 달하던 기준금리를 2.5%까지 낮추고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통한 중소기업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경제 위기에 대응하였다. 또한 주력 수출상품인 1차 상품의 국제가격이 상승하면서 수출이 호조를 보였고 뉴질랜드 달러화의 강세가 이어지는 등 유럽, 미국 등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양호한 경제 상태를 유지했다.

2014년에는 크라이스트처치 지진재건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오클랜드를 중심으로 한 주택건설 활성화로 건설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환율의 영향으로 인한 교역조건의 개선으로 무역수지가 개선되는 등 경제전망이 낙관적인 상황이다.

나. 항목별 동향

1) 경제성장

2013년 뉴질랜드 경제성장률은 2.9%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대부분의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양호한 수준이었다. 한편, HSBC를 비롯한 세계 금융전문기관들과 경제연구소 등은 뉴질랜드의 2014년 경제성장률을 약 3.0%로 전망하고 있다.

2014년 6월 뉴질랜드 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 GDP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1.0%, 전년동기대비 3.8% 성장한 것으로 2007년 이후 7년만에 최고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2) 대외거래

뉴질랜드는 교역규모 기준으로 세계 58위(2011년 기준 WTO 발표, 2012년 통계 미발표)에 위치하며 수출은 59위, 수입은 53위를 기록 중이다. 전체 수출에서 60% 이상을 차지하는 1차 상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는데 수출 1위 품목은 분유, 치즈 등 낙농품이 차지하고 있다. 이 밖에도 육류, 목재 등이 2, 3위를 차지한다. 수입의 경우, 화석연료 부족으로 원유 및 석유제품의 수입량이 많고, 자동차, 전자제품 등 공산품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2013년 기준, 수출대상국으로는 중국이 1위이며, 호주, 미국, 일본, 영국 등의 순으로 많이 수출 중이다. 한국은 제 6위의 수출대상국에 올라있다. 수입의 경우는 2011년 중국이 호주를 앞지른 이후 계속해서 1위 수입대상국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호주, 미국, 일본 등의 순이며, 한국은 7위를 기록 중이다.

경상수지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적자규모가 연속해서 100억 뉴질랜드달러를 넘어 섰다. 적자폭이 가장 컸던 해는 2008년으로 164억 3,000만 뉴질랜드달러를 기록했다. 하지만 2009년에는 46억 3,000만 뉴질랜드달러로 대폭 감소한 후 2010년과 2011년에는 각각 67억 8,000만 뉴질랜드달러, 82억 6,000만 뉴질랜드달러를 기록했고, 2012년에는 또 다시 91억 뉴질랜드달러의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중앙은행의 발표에 의하면 2013년 경상수지 역시 95억 뉴질랜드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3) 환율

뉴질랜드는 1985년 환율 변동제를 도입했다. 뉴질랜드가 전체인구 450만명의 소규모 경제규모를 가진 탓에 외국자본의 유입·유출에 따라 환율변동은 심각한 상태다. 2005년 1뉴질랜드 달러 대비 0.68달러 수준의 환율이 2008년 3월 한때 0.81달러까지 치솟았으나, 같은 해 하반기에 금융위기의 여파로 한때 0.5달러 수준으로 급락한바 있다. 유럽발 금융위기 후 뉴질랜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2012년 12월 기준 0.8236달러까지 상승했다. 2014년 6월 기준 뉴질랜드 달러 대비 환율은 0.8658달러이다.

환율변동 추이

시기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6월)
환율(NZ\$:US\$)	0.7285	0.7577	0.7768	0.8236	0.8202	0.8658

자료: 뉴질랜드 중앙은행, 매년 12월 기준

4) 인플레이션

중앙은행은 물가상승률 관리 목표를 1~3%로 잡고 있다. 2010년에는 비교적 높은 4.0%를 기록했고, 2011년~2013년에는 1.9%~0.9%를 기록하여 물가가 안정세를 되찾았다. 한편, 중앙은행은 2014년 물가상승률을 1.4%로 예상하고 있어 안정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5) 노동시장

2010년 6.7%를 기록했던 실업률은 2011년에는 6.3%로 낮아졌고, 2012년에는 남섬 지진복구 작업 확대에 따른 고용증대로 5% 중반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 바 있으나, 2012년 뉴질랜드 실업률은 6.7%를 기록하였다. 2013년에는 6.2%로 다소 낮아졌으며 2014년에도 하락추세는 이어져 5.8%의 실업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저임금은 매년 4월 1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되는데, 2014년 6월 기준 최저임금(세전금액)은 시간당 14.25뉴질랜드달러이다.

6) 기준금리

뉴질랜드의 기준금리는 금융위기 이전 8%대에서 계속 하락하여 2009년 4월 30일 2.5%로 인하되었으며, 2014년 1월까지 유지하고 있다. 현재, 뉴질랜드 달러의 강세가 지속되어 경기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4년 초까지 2.50%를 유지하였으나 부동산 시장안정화를 위해 기준금리를 2014년 3월 2.75%로 인상한 이후 4월 3.00%, 6월에 또다시 3.25%로 인상하였다.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올해 안으로 약 4.00%까지 기준금리를 올린 후 유지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준금리 변동 추이

시기	2010	2011	2012	2013	2014 (6월)
%	2.50	2.50	2.50	2.50	3.25

자료: 뉴질랜드 중앙은행, 매년 12월 기준

다. 주요 경제정책

현 집권당인 국민당은 '더욱 경쟁력 있는 경제개발'을 표방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각종 인프라 구축에 힘쓰고 있다.

1) 크라이스트처치 지진복구 사업

지난 2011년 2월 22일 뉴질랜드 남섬을 강타했던 크라이스트처치 지진 복구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뉴질랜드 건설 산업이 활성화되고 주택 경기가 부진에서 탈출하는 양상을 띄고 있는데, 실제로 뉴질랜드의 연간 건축허가 금액은 2007년 124억 뉴질랜드달러를 정점으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며 2011년에는 89억 뉴질랜드달러까지 떨어졌다. 2016년에는 이 금액이 100억 뉴질랜드달러로 회복될 것이며, 지진 복구작업이 대거 추진되면 100억 뉴질랜드달러를 훨씬 상회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지진재건사업의 소요비용은 약 400억 뉴질랜드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뉴질랜드 정부는 5월에 발표한 2014/15년 예산안에서 약 150억 뉴질랜드달러의 재건 비용을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은 외국의 재보험사에서 부담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2) 오클랜드시 인프라 구축 (제2의 하버 브리지, City Rail Link)

뉴질랜드 최대 상업 도시인 오클랜드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대규모 건설프로젝트가 연이어 추진되고 있다. 오클랜드 시티와 노스쇼어 시티를 잇는 하버브릿지는 올해로 건설한 지 52년이 되어 안전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년 1.6%의 꾸준한 오클랜드 인구 증가로 20년 후에는 교통량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다.

이에 뉴질랜드 정부는 공사비 39억 뉴질랜드달러를 투자해서 약 2020년경 완공을 목표로 제2의 하버브리지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상태다.

또한, 'City Loop Project'로 명명된 뉴질랜드 최초의 지하철도 건설사업의 예산안이 2012년 하반기 오클랜드 시의회를 통과하였다. 이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오클랜드 서부지역의 마운트 이든(Mt. Eden) 역과 북부 지역의 브리토마트(Britomart) 역을 연결해서 오클랜드 시내 철도가 순환하도록 하는 것인데, 전체 건설구간은 3.5km이며, 3개 역이 신설될 예정이다. 특히 공사 구간 전체가 최대 48m 깊이의 지하철도로 이루어지는데, 지하철도 공사는 뉴질랜드에서는 최초로 시도되는 것으로 주목할 만 하다.

이러한 제2의 하버브릿지 및 신규 철도 건설은 오클랜드 도심 내의 원활한 교통은 물론, 도시 외곽지역으로의 인구 분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3) 범국가 차원의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사업

뉴질랜드가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사업을 추진 중이다. 2011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번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사업은 병원, 기업, 학교 등에는 2015년까지 먼저 설치하며, 그 외 지역은 2020년까지 구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뉴질랜드 인터넷 이용자의 75%가 초당 100MB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기존 뉴질랜드 평균 인터넷 속도의 20배 이상 빠른 수준이다.

4) 늘어나는 민관협력 (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사업

뉴질랜드 교통청(NZTA, New Zealand Transport Agency)은 현재 웰링턴 도로건설 프로젝트를 뉴질랜드 최초로 민관협력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2012년 12월에 발표된 10억달러 규모의 본 프로젝트는 2014년 현재 사업자가 선정되어 협상진행 중에 있는 상태이다. 이외에도 뉴질랜드 정부는 오클랜드 북부 고속도로 프로젝트를 포함한 각종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를 민관협력사업으로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3. 주요산업동향

가. 최신 산업 동향

□ 유학산업의 침체

뉴질랜드는 영어권이면서도 저렴한 유학비용과 쾌적한 환경이라 유학하기 좋은 국가로 알려졌지만, 수년 간 이어진 글로벌 경기침체와 뉴질랜드 달러화 강세에 따른 유학비용 증가, 그리고 2011년 2월 발생했던 크라이스트처치 지진으로 인해 최근 유학산업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

2013년 5월 뉴질랜드 기업혁신고용부는 2012년 뉴질랜드에 거주 중인 외국인 유학생의 숫자가 2011년과 비교했을 때 7% 감소했으며, 지난해 신규로 비자를 발급받은 유학생이 2011년에 비해 약 10%인 7,400명이 감소한 것으로 보고했다. 이는 2009년에 비해 25%나 감소한 것이어서 뉴질랜드 주력 산업 중 하나인 유학, 관광 산업에 적신호를 보이고 있다.

□ 유제품 수출 증가세

뉴질랜드 전체수출액의 25%를 차지하는 유제품의 세계적인 수요와 가격 상승세가 맞물리면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3년 일반식품가격이 3.6% 하락한 반면 유제품은 22% 상승하여 이는 유제품의 공급량에 비해 중국 등의 신흥수요가 크게 늘어남에 따른 현상으로 보고 있다.

세계 최대 유제품 수출국인 뉴질랜드는 전 세계 거래량의 30%이상을 공급하고 있으며, 이러한 유제품 수요 증가와 가격 상승은 뉴질랜드 경제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 건설경기 호황

2014년 뉴질랜드는 크라이스트처치 지진 재건사업의 본격적인 실시와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주택건설붐이 일면서 건설경기가 큰 호황을 맞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진재건사업의 경우, 2013년 하반기에 지진 보험비용 집행이 시작되면서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될 계획으로 있다. 약 400억 뉴질랜드달러가 소요될 이번 재건사업은 외국의 재보험사에서 전체 비용의 절반이상을 지불할 예정으로 있다.

또한, 오클랜드를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의 상승은 작년 한 해 약 15%에 육박하며 전국적으로도 10% 이상 상승하였다. 특히, 아파트 건축 프로젝트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2013년 11월 한 달간 아파트 건축 승인건수가 492건으로 2008년 4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나. 핵심 산업 개요

뉴질랜드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목축업이 잘 발달되어 있는 선진 낙농 국가이다. 전 국토의 54%가 목초지, 28%가 삼림, 5%가 경작지, 기타 13%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산업은 1978년에 200해리 경제수역을 선포한 바 있다.

뉴질랜드 농업은 주요 선진국과는 달리 농업 보조금이 없으나, 보조금을 받고 있는 여타 국가의 제품들과 겨룰 수 있을 정도로 세계 시장에서 강한 농업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지난 1995년 발효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우루과이라운드 농업 협정에 따라 많은 나라들이 자국의 농산품 및 수출에 지급하던 보조금을 크게 축소하고 있어 뉴질랜드 수출 품목의 해외 시장 수출 기회는 더욱 넓어지고 있다.

다. 전체 산업구조 개요

1) 1차 산업

□ 낙농업

뉴질랜드는 국토의 54%가 목초지로 낙농 선진국이다. 전체 수출에서 낙농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25%를 차지할 정도다. 주요 낙농 제품으로는 분유, 치즈, 버터, 식품 원료 등이 있는데, 뉴질랜드 낙농산업은 대규모 가공 시설과 결합한 효율적인 목축 시스템, 연구 개발에 대한 많은 비용의 투자, 혁신적인 마케팅을 자랑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유제품 수출 비중은 전세계 유제품 교역량의 30%에 이르고 있으며 시장 영향력도 막강하다.

뉴질랜드 낙농업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기업은 폰테라 협동조합(Fonterra Cooperative Group)이다. 폰테라는 뉴질랜드에서 생산되는 유제품의 90%이상을 수출하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낙농업의 발전을 위해 뉴질랜드의 가장 큰 유가공업체 2개와 뉴질랜드 낙농청(New Zealand Dairy Board)의 합병으로 인해 설립됐다.

폰테라는 서울에도 사무소가 있어 뉴질랜드 낙농 제품의 수출 통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주요 제품 및 원료를 뉴질랜드에서 수입하려 할 때는 폰테라를 통해 구매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폰테라는 가격과 물량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폰테라는 세계 120개국에 1만 7,000여 명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180억 뉴질랜드달러의 연간 매출을 올리고 있다.

한편, 뉴질랜드 목축업의 근간이 되는 가축 숫자는 인구의 10배에 육박하는 4,200만 마리로 집계되고 있다. 가장 많은 가축은 양(3,000만 마리)이며, 그 다음으로는 젖소, 육우, 사슴, 돼지의 순이다.

특이한 점은 뉴질랜드에서는 연중 풀이 자라고 혹한이나 혹서의 기후가 없는 관계로, 대부분의 가축이 방목으로 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2013년 12월에 발표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간 양과 육우의 숫자는 계속해서 감소추세에 있는 반면, 젖소의 숫자는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유제품의 수요 증가로 인한 가격향상이 원인인 것으로 이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연도별 뉴질랜드 가축 사육두수 변화

(단위: 천마리)

종류	2009	2010	2011	2012	2013
양 (Sheep)	32,384	32,563	31,132	31,263	30,905
젖소 (Dairy Cattle)	5,860	5,915	6,174	6,446	6,590
육우 (Beef Cattle)	4,100	3,948	3,846	3,735	3,688
사슴 (Deer)	1,145	1,122	1,088	1,061	1,050
돼지 (Pig)	322	335	326	314	309
합계	43,811	43,883	42,566	42,760	42,542

자료: 뉴질랜드 통계청(2013년 12월 발표, 2014년 6월 기준 최신통계)

이들 가축들이 만들어 내는 수출도 막대한 규모로 뉴질랜드 전체 수출에서 약 40%에 달할 정도이다. 2013년 수출 1위 품목인 유제품(분유, 버터, 치즈)의 수출 비중은 전체에서 약 28.3%를 차지하고 있고, 2위 품목인 육류(내장 포함)의 수출 비중도 전체에서 11%를 차지하고 있다. 이 밖에도 양모를 비롯해 가축과 관련된 각종 제품의 수출을 합할 경우 수출금액이 전체에서 40%를 넘고 있다.

뉴질랜드의 주요 농업 제품 수출 실적

(단위: US\$ 백만)

구분	2010	2011	2012	2013
낙농품, 계란, 꿀 등	7,542	9,454	9,372	11,185
육류	3,655	4,355	4,185	4,340
음료	950	1,079	1,196	1,223
과일, 견과류	1,047	1,279	1,252	1,210
양모류	532	721	649	621
기타 식품	442	526	605	606

자료: World Trade Atlas (2014년 6월 기준 최신통계)

이처럼 뉴질랜드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1차 상품의 높은 비중 때문에 이들 상품의 국제가격 변동에 따라 뉴질랜드 전체 수출이 크게 영향 받는 문제점이 노출되기도 한다.

□ 임업

뉴질랜드는 국토의 약 30%(810만 Ha)가 광활한 산림 지역으로 임산자원이 풍부하고 이 중 640만 Ha는 천연림, 170만 Ha는 조림지로 전체 목재의 95% 가량이 조림지에서 생산된다.

원목을 포함한 목재 제품의 수출은 2013년 기준 전년대비 약 23% 증가한 31억 5900만 뉴질랜드달러에 달하고 있다. 2008년 한국이 뉴질랜드 최대의 목재 수입국이었던 적이 있으나 그 후 중국 등이 수입량을 늘리면서 2013년의 경우 한국이 3위 수입국가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이 가장 많은 원목을 수입하고 있는 나라가 뉴질랜드이며, 한국이 뉴질랜드로부터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는 품목 1위 역시 원목이다. 2013년 기준으로 원목이 우리나라의 전체 뉴질랜드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1.3%에 이르고 있다.

2013년 뉴질랜드의 주요 목재 수출국

(단위: US\$ 백만, %)

순위	국가	수출금액	비중
1위	중국	1,554	49.18
2위	일본	344	10.89
3위	한국	323	10.22
4위	호주	295	9.34
5위	인도	164	5.19
전체국가 합계		3,160	100.00

자료: World Trade Atlas (2013년 12월 기준 최신통계)

□ 수산업

뉴질랜드는 310만 평방해리에 달하는 배타적경제수역 (EEZ)을 가지고 있고, 2013년 수출액이 10억 9,000만 달러에 달하는 등 수산업 시장이 뉴질랜드의 중요한 수입원이 되고 있다. 주요 수출 해양자원에는 초록잉 홍합, 대구의 일종인 Hoki, 고등어, 오징어, 참치 등이 있으며, 주요 수출국으로는 홍콩, 호주, 미국 일본 등이 있다.

2) 2차 산업

□ 건설업

오랜 침체를 겪고 있는 뉴질랜드 건설업은 크라이스트처치 지진 복구와 주택 부족현상을 겪고 있는 오클랜드 인근의 건설경기에 힘입어 활기를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13년 7월에 발생한 수도 웰링턴 지진 피해 복구작업 역시 건설경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7년 124억 뉴질랜드달러를 기록하며 정점에 이르렀던 연간 건축허가 금액이 2011년에는 89억 뉴질랜드달러까지 떨어졌지만, 2012년을 전환점으로 상승세로 전환되면서 2016년에는 100억 뉴질랜드달러를 회복할 것이며, 지진 복구작업이 대거 추진된다면 100억 뉴질랜드달러를 훨씬 상회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다만, 뉴질랜드 건설시장은 Fletcher 등 몇몇 현지 기업들이 독과점 형태로 장악하고 있는 시장이어서 외국 기업의 진출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건축자재를 중심으로 한 진출이 우선 시도 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제조업

제조업은 극히 취약한데, 이는 시장규모가 작아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외경쟁력을 보유한 제조업은 레저용 보트 분야가 유일할 정도다. 또한 1990년대 중반 국민당 시절, 관세인하 및 관세 조기철폐 정책의 추진으로 제조업체들이 공장을 폐쇄하는 사례가 많았다. 도요타, 포드, 혼다, 마즈다가 공장을 폐쇄했고, 2012년에 중국 가전업체인 하이얼에 매각된 뉴질랜드 최대 가전제품 생산업체인 Fisher & Paykel 역시 냉장고와 세탁기 공장을 2008년도에 태국으로 이전했다.

반면, 식품제조업의 경우 청정국가 이미지와 높은 식품안전규격으로 뉴질랜드산 식품의 해외인지도가 높다는 점을 활용하기 위해 많은 외국기업이 뉴질랜드에 제조공장을 두고 있다. 이미 네슬레가 식품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하인즈의 호주공장이 뉴질랜드로 이전하였다. 또한,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기업들의 유제품 제조공장 투자도 활발한 편이다.

한국기업의 경우 ㈜오뚜기가 1997년에 오클랜드 남부에 소고기 가공품 공장을 설립해 운영하는 중이며, 최근 소스제품을 생산하여 현지시장에 판매하고 있다.

3) 3차 산업

□ 관광업

청정국가의 이미지를 가진 뉴질랜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산업 중의 하나가 관광이다. 뉴질랜드는 아름다운 경관과 자연 환경, 다양한 야외 스포츠를 가진 나라로 매년 250만 명 이상의 외국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다.

관광업은 낙농업 다음으로 많은 외화를 벌어들이는 산업으로 2013년 회계연도(3월말) 기준 239억 뉴질랜드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하였고 특히 외국 관광객 대상 매출액인 98억 뉴질랜드달러로 뉴질랜드 전체 재화 및 서비스 수출액의 16.1%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2013년 회계연도 기준, 뉴질랜드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11만 800명으로 이는 전체 노동인구의 약 5.7%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뉴질랜드 통계청에 따르면, 2012년 뉴질랜드를 찾은 외국관광객 수는 256만 4,618명을 기록하여 2011년의 260만 1,444명에 비해 1.7% 감소하였으나 2013년 271만7,695명의 외국관광객이 방문하여 전년대비 6.0% 증가하였다.

주요 국가별 방문객 현황

(단위: 명, %)

순위	국가	2011	2012	2013	비중(2013년)
1	호주	1,156,426	1,155,792	1,218,016	44.82%
2	중국	145,524	197,024	228,928	8.42%
4	미국	184,714	177,680	201,424	7.41%
3	영국	230,316	189,648	191,632	7.05%
5	일본	68,963	72,080	74,560	2.74%
6	독일	63,719	63,776	69,808	2.57%
7	한국	52,787	52,896	50,992	1.88%
8	캐나다	49,154	46,448	48,192	1.77%
9	싱가포르	30,300	38,680	42,256	1.55%
10	인도	28,262	29,856	30,976	1.14%
총계		2,601,444	2,564,618	2,717,695	100.00

주: 총계는 기타 국가 포함 총 방문객 숫자임

자료: 뉴질랜드 통계청(2014년 6월 기준 최신통계)

4) 에너지 산업

□ 화력 및 수력에너지

뉴질랜드는 석유를 제외한 나머지 에너지는 자급자족이 가능해서 전체 에너지 자급률은 70%에 달한다. 주된 에너지원은 수력으로, 지형 구조상 낙차가 크고 유속이 빠른 남섬에 수력발전소가 집중되어 있어 이 지역에는 80여 개의 댐이 있다. 북섬에는 중부 지역의 타우포와 와이카토 강에 수력발전소가 편중되어 있다.

가장 큰 수력 발전소는 남섬의 MANAPOURI 발전소로 600MW 급으로 연간 38억 8,700만KW의 전력을 생산한다. 남섬에서 생산된 전력은 해저 케이블을 이용하여 수요가 많은 북섬으로 공급된다. 화력발전소는 9개 지역에 45개소가 가동 중이나 점차 쇠퇴 일로에 있다.

원유는 북섬 남서부 해안 돌출부에 소재한 타라나키에서 일부가 생산되고 있다. 뉴질랜드는 남한의 2.7배에 달하는 국토를 보유하고 있지만 광물자원은 풍부하지 않은 편으로 금, 철 성분의 모래, 점토, 골재 등이 일부 채굴되는 정도다. 석탄은 채굴 가능 매장량이 86억 톤으로 최대 동력 자원이며 30%가 남섬 지역에 매장되어 있다.

□ 신재생 에너지

뉴질랜드는 환경보존에 매우 민감하여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다. 정부는 2011년 말 기준 전체 전력 중 77%를 얻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2025년에는 9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특히 태양열, 바이오 에너지, 조력, 파력 등의 개발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정책적으로 핵발전소는 보유하지 않고 있고 보유 계획도 없는 상태다.

지열발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전력 수요의 약 13.5%를 충당하고 있다. 지열 발전소는 북섬 중부 지역의 타우포, 로토루아 지역에 위치하며 가정용 전력으로 사용되는데 1958년 건설된 와이라케이 발전소와 1989년 건설된 카웨라우 발전소 등 9개가 있다.

전체 전력에서 약 4.5%를 생산하는 풍력의 경우는 최근 관련 기자재들이 중국에서 낮은 비용으로 생산되기 시작하면서 향후 20년 내에 전체 발전량에서 약 20%를 차지할 정도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관련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태양광발전의 경우는 하루 생산량이 45MW에 불과하여 통계에 잡히지 않을 정도로 미미하다. 태양광이 발전하지 못한 주된 원인은 정부의 보조금이 없기 때문인데 일부 뉴질랜드 기업들은 보조금이 있는 미국에서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기도 했고, 통가에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을 세우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최근 뉴질랜드 태양광 발전시장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이는 전세계적으로 태양 전지판의 가격이 크게 떨어진 때문으로 분석되는데, 특히 일반가정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한편, 뉴질랜드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뉴질랜드 에너지 정책(New Zealand Energy Strategy 2011-2021)’과 ‘뉴질랜드 에너지 효율 및 보존정책(New Zealand Energy Efficiency and Conservation Strategy 2011-2016)’에 잘 나타나 있다. 이 정책들은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생산,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각 분야의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들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에너지 효율적 교통시스템 구축, 주택에서의 에너지 효율 제고, 에너지 고효율 제품의 보편화, 공공부문에서의 에너지 효율 제고 등을 추구하는 내용이다.

전력 생산현황

(단위: GWh)

대구분	소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1Q)
재생 에너지	수력	24,493	24,868	22,673	22,815	5,649
	지열	5,546	5,777	5,843	6,053	1,594
	바이오가스	218	234	239	237	60
	목재	346	350	352	356	91
	풍력	1,618	1,932	2,053	1,997	501
	소계	32,221	33,162	31,160	31,459	7,896
화력	석유	2	2	3	3	1
	석탄	1,929	2,028	3,320	2,242	349
	가스	9,203	7,812	8,256	8,099	1,680
	폐열	57	46	42	42	10
	소계	11,190	9,888	11,622	10,385	2,039
총계		43,411	43,050	42,782	41,844	9,935
재생에너지 비율		74%	77%	73%	75%	79%

자료: 경제개발부(2014년 6월 기준 최신통계)

5) 정보통신 산업

뉴질랜드의 정보통신 산업은 초고속인터넷 구축과 함께 큰 발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뉴질랜드 정부는 2011년 상반기에 초고속인터넷 구축사업을 위한 업체 선정 절차를 마무리 지었으며, 2011년 8월부터 업체별로 공사가 시작되었다.

뉴질랜드 전역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사는 2020년까지 진행될 예정이지만 병원, 기업, 학교 등에는 늦어도 2015년까지 초고속인터넷 설치를 완료한다는 방침이어서 지역에 따라서는 훨씬 빨리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설치가 완료되면 뉴질랜드 인터넷 이용자의 75%가 초당 100MB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2012년 기준의 뉴질랜드 평균 인터넷 속도 보다 20배 이상 빠른 수준이다.

또한, 기존 3G보다 10배이상 빠른 4G LTE망이 2013년 2월 보다폰을 시작으로 10월에는 텔레콤이 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2014년내 전국 광대역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처럼 뉴질랜드가 조만간 초고속인터넷 시대를 맞게 됨에 따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의 수요도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뉴질랜드 정부는 초고속인터넷이 기업의 생산성을 높여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고화질의 화상회의, 온라인 직원교육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가정에서는 온라인 TV의 활성화로 쇼프로, 영화, 다큐멘터리 등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지고, 교육분야에서는 인터넷 학습, 화상교육 등을 통해 교육여건이 부족한 지역의 학교 교육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의료 분야 역시 큰 기대를 걸고 있는데 MRI와 같은 고용량의 의료문서가 우편이 아닌 이메일로 전송할 수 있게되면서 의사들이 더욱 편리하게 환자들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텔레헬스기술(Tele-Health Technologies)의 활성화로 의사들이 환자들을 원격 검사 및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라. 산업별 비중

뉴질랜드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2013년 산업별 GDP 비중은 1차 산업이 6.01%, 2차 산업이 21.06%, 3차 산업이 64.6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GDP by Industries (2013년 기준)

(단위: %)

대분류	소분류	비중	
1차 산업	농업, 임업, 수산업	4.94	6.01
	임업	0.85	
2차 산업	제조업	13.33	21.06
	전기, 수도, 가스	2.02	
	건설업	5.40	
3차 산업	도매업	5.47	64.65
	소매업, 숙박, 요식업	6.77	
	교통, 우편, 운송업	5.03	
	정보통신업	6.89	
	금융, 보험업	4.67	
	임대, 부동산업	12.35	
	과학, 기술업	8.74	
	공공 행정업	4.12	
	교육업	2.98	
	의료 복지업	5.22	
	예술, 여가 및 기타산업	2.88	
미분류			8.28
합계		100.00	

자료: 뉴질랜드 통계청(2014년 6월 기준 최신통계)

4.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가. 뉴질랜드의 무역협정 체결 현황

체결국가	협정종류	발효연도
호주	CER	1983
싱가포르	CEP	2001
태국	CEP	2005
브루나이	TPP P4	2006
칠레	TPP P4	2006
중국	FTA	2008
미국	TPP	2008
페루	TPP	2008
말레이시아	FTA	2010
미얀마	아세안-호주-뉴질랜드 FTA	2010
필리핀		2010
베트남		2010
라오스		2011
캄보디아		2011
홍콩	CEP	2011
캐나다	TPP	2012
멕시코	TPP	2012
인도네시아	아세안-호주-뉴질랜드 FTA	2012
일본	TPP	2013
대만	ECA	2014
바레인	GCC FTA	2011 협상 타결, 2014 발효 예정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자료: 뉴질랜드 외교통상부, 2013년 12월 기준

뉴질랜드는 2013년 12월 기준으로 모두 24개국과 FTA에 준하는 무역협정을 발효시켜 놓았다. 이 중 CEP(Closer Economic Partnership)은 홍콩, 호주, 싱가포르, 태국 등 4개국과의 무역 장벽을 넘어선 효율적 교류를 목표로 한다. TPP(Trans Pacific Partnership)는 환태평양 12개 국가와 맺고 있으며, 브루나이, 칠레, 싱가포르, 뉴질랜드의 P4를 시작으로, 최근 2013년 일본의 가입을 이끌어내면서 각국 경제 무역 교류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뉴질랜드는 FTA를 교역확대에 적극 활용하면서 전체 교역에서 FTA 체결국과의 역내교역이 차지하는 비중도 약 46%에 이르고 있다. 또한 협상이 타결된 GCC 회원국과의 FTA가 발효되면 그 비중이 50%를 웃돌 전망이며, 협상이 진행 중인 FTA들이 모두 발효되면 역내교역 비중이 70%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뉴질랜드가 이처럼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는 이유는 교역 상대국의 관세장벽을 낮춰 주력 수출품목인 원자재, 농축산물의 수출을 확대하고,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는 제조기반 품목들의 수입가 하락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나. 최근 제도 변경사항

□ 일본 TPP 참여

2013년 4월 21일 일본이 새로운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Trans Pacific Partnership) 가입국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뉴질랜드의 일본에 대한 농업부문에 대한 현재의 높은 관세가 낮아져 뉴질랜드의 수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대만과 경제협력협정 체결

2013년 7월 10일 비수교국으로 처음으로 대만과 ECA(경제협력협정: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를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뉴질랜드가 대만으로 수출하는 상품의 70% 이상에 대해 적용되던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다. 이번 협정에는 양국 간 항공자유화협정과 환경 관련 제품의 무역이 즉시 자유화되는 조항도 포함됐으며, 뉴질랜드 기관이 대만에서 학교를 운영할 수 있게 됐고 영화 및 TV 방송의 공동제작을 장려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이 밖에도 대만인과 뉴질랜드 원주민인 마오리족 및 남태평양 섬나라 인종간의 DNA 추적에 대한 협력도 이례적으로 포함되었다. 이번 협정은 향후 국회의 심의절차와 필요한 입법절차를 거쳐 2014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 러시아와의 FTA 협상 중단

2014년 3월 3일, 뉴질랜드 정부는 러시아와 진행 중이던 FTA 협상을 중단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파견한 데 대한 항의의 표시이며 양자 협상 중이던 팀 그로서(Tim Groser) 통상장관의 귀국을 명령하였다. 당시 FTA 협상은 마무리 단계에 있었으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뉴질랜드 정부는 밝혔다. 2014년 6월 현재, 양자간의 FTA 협상재개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Ⅲ. 무역

1. 수출입 동향

가. 뉴질랜드 무역수지

뉴질랜드 수출은 전체수출액의 25%를 차지하는 유제품의 세계적인 수요와 가격 상승세가 맞물리면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2013년 3분기 교역조건지수가 40년 만에 최고를 기록하여 2014년 수출전망치에 대한 기대감을 증폭시켜주고 있는 상황이다.

수출가와 수입가를 비교하여 측정하는 교역조건지수(TOT)의 경우, 2013년 3분기 1,356을 기록하면서 1973년 이후 가장 높았으며 2014년에는 1,553으로 최고치를 갱신할 것으로 보여 수출호조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뉴질랜드의 2013년도 무역수지는 1억 9,6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여 3년 연속 무역수지 적자를 이어갔으나 2014년들어 수출 급증세에 힘입어 2014년 1분기 16억 7,5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다.

나. 뉴질랜드 국가별 수출입

뉴질랜드의 주요 수출대상국

(단위: US\$ 백만, %)

순위	구분	2012	2013	2014 (1분기)	
				수출액	비중
	총계	37,310	39,444	11,457	100.00
1	중국	5,562	8,192	2,944	25.71
2	호주	8,030	7,486	1,743	15.23
3	미국	3,425	3,344	972	8.49
4	일본	2,595	2,321	551	4.81
5	영국	1,131	1,148	413	3.61
6	한국	1,258	1,340	341	2.98
7	인도네시아	679	727	238	2.08
8	대만	670	724	225	1.97
9	아랍에미리트	493	540	225	1.96
10	싱가포르	683	837	217	1.89

자료: World Trade Atlas (2014년 6월 기준 최신통계)

뉴질랜드의 2013년도 수입은 396억 4,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3.60% 증가했다. 중국이 여전히 1위를 고수하고 있으며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8.27%가 증가해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한국은 2013년 기준으로 8위의 수입대상국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주요 수입대상국

(단위: US\$ 백만, %)

순위	구분	2012	2013	2014 (1분기)	
				금액	비중
	총계	38,262	39,640	9,756	100.00
1	중국	6,251	6,768	1,560	15.99
2	호주	5,821	5,269	1,117	11.45
3	미국	3,553	3,710	894	9.16
4	일본	2,471	2,536	652	6.68
5	싱가포르	1,702	1,657	583	5.99
7	말레이시아	1,487	1,660	527	5.41
6	독일	1,698	1,827	497	5.10
8	한국	1,460	1,611	452	4.63
9	태국	1,222	1,360	356	3.65
10	프랑스	746	996	279	2.86

자료: World Trade Atlas (2014년 6월 기준 최신통계)

다. 뉴질랜드 품목별 수출입

뉴질랜드의 주요 수출품목

(단위: US\$ 백만, %)

HS코드	구분	2012	2013	2014 (1분기)	
				수출액	비중
	총 수출	37,310	39,444	11,449	100.00
04	낙농제품	9,372	11,185	4,035	35.24
02	육류	4,185	4,340	1,569	13.70
44	목재	2,563	3,160	824	7.20
98	기타	1,362	1,324	362	3.16
35	단백질	985	1,031	314	2.75
27	천연가스, 석유	1,770	1,416	306	2.68
22	음료, 주류	1,197	1,223	300	2.62
84	기계류	1,390	1,252	296	2.58
03	수산물	1,118	1,090	290	2.53
08	과일, 견과류	1,253	1,210	182	1.59

자료: World Trade Atlas (2014년 6월 기준 최신통계)

수출품목 1위는 낙농품으로 전체에서 35.24%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육류, 목재, 광물, 기계류 등이 차지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주요 수입품목

(단위: US\$ 백만, %)

HS코드	구분	2012	2013	2014 (1분기)	
				수출액	비중
	총 수입	38,262	39,640	9,756	100.00
27	천연가스, 석유	6,755	6,716	1,623	16.64
84	기계류	4,907	4,963	1,200	12.30
87	자동차	4,202	4,779	1,187	12.17
85	전기제품	3,130	3,119	682	6.99
39	플라스틱	1,411	1,479	375	3.85
90	광학, 의료기기	1,114	1,173	279	2.93
30	제약	920	905	229	2.35
23	식품부산물, 동물사료	524	617	222	2.28
89	선박	92	266	208	2.13
48	종이, 판지	734	750	180	1.84

자료: World Trade Atlas (2013년 12월 기준 최신통계)

가장 큰 수입품목은 휘발유, 석유 등인데 이는 뉴질랜드 내에 석유정제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기계류, 자동차, 플라스틱 등이 그 다음으로, 뉴질랜드 내 제조 기반이 취약한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라. 최신동향정보

뉴질랜드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4월 수출입 통계에 의하면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4%,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5% 상승하였다. 특히, 분유와 버터, 치즈 등의 유제품의 수출증가세는 전년동기대비 36% 상승하였다.

유제품 수출 증가에 힘입어 대중국 수출 역시 전년동기대비 38% 성장한 반면, 호주는 8% 성장에 그치면서 중국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

2.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가. 한-뉴 교역현황

2013년 기준으로 뉴질랜드는 한국의 44위 수출대상국이자 41위의 수입대상국이다.

2011년 한국의 對뉴질랜드 수출은 사상 최초로 10억 달러를 돌파한 이후 계속해서 상승추세에 있으며 특히, 2012년 수출은 32.6%가 증가한 반면, 수입은 9.3% 감소하여 한국이 1억 2,700만 달러가 넘는 무역 흑자를 기록했다.

2013년의 경우, 지난해 급상승한 수출이 숨고르기에 들어가면서 1.8% 증가하는데 그쳐 14억 9,100만 달러를 기록하였고 수입은 4.2% 증가한 13억 9,500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무역수지는 9,600만 달러의 2년연속 흑자행진을 지속하였다.

2014년 5월 기준, 한국의 對뉴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30% 상승한 7억 7,654만 달러,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6% 상승한 6억 5,398만 달러로 1억 2,256만 달러의 흑자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의 對뉴 수출은 휘발유, 자동차, 전자제품 등 공산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수입은 원목, 낙농품 등 1차상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나. 한-뉴 무역통계 총괄표

한국의 對뉴질랜드 수출입 실적

(단위: US\$ 천,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5월)
수출 (증감율)	918,464 (3.1)	1,103,835 (20.2)	1,465,066 (32.7)	1,490,532 (1.7)	776,543 (30.1)
수입 (증감율)	1,175,909 (33.7)	1,474,143 (25.4)	1,339,176 (-9.2)	1,395,172 (4.2)	653,980 (6.1)
무역수지	-257,445	-370,308	125,890	95,360	122,563

자료: 한국무역통계 2014년 6월기준

다. 한국과의 무역통계 특징

□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

2014년 5월 기준, 뉴질랜드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30.1% 증가하였다. 특히, 전체 수출액의 약 30%를 차지하는 휘발유와 경유의 수출이 각 23%, 70% 성장하였고 승용차와 건설중장비 역시 크게 증가하며 전체 수출 증가세를 이끌었다. 그러나, 수출 금액이 석유화학제품과 차량 등 일부 대기업 제품에 집중되어 있는 점은 뉴질랜드 수출에서 풀어야 할 과제이다.

한국의 뉴질랜드 주요 수출품목

(단위: US\$ 백만, %)

순위	품목명	2012		2013		2014 (5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1465	32.7	1491	1.7	777	30.1
1	휘발유	429	347.8	420	-2.1	213	23.0
2	경유	173	1.9	225	29.7	152	69.7
3	승용차	231	20.9	246	6.2	111	11.9
4	제트유 및 등유	0	-	8	-	31	-
5	건설중장비	50	18.0	59	18.3	29	46.7
6	합성수지	37	12.0	50	33.8	23	23.0
7	동조가공품	8	9.8	19	132.5	15	190.4
8	화물자동차	18	61.6	24	34.1	15	139.9
9	화학기계	0	37.2	0	-41.7	13	27734.7
10	기타어류	46	3.7	26	-43.2	12	-4.9

주: 품목은 MTI 4단위 분류, 순위는 2014년 실적 기준

자료: KITA 한국무역통계 2014년 6월기준

□ 뉴질랜드 주요 수입품목

2014년 5월 기준, 뉴질랜드 수입액은 전년동기대비 6.1% 증가했다. 특히, 원목과 석유화학제품과 같은 원자재의 수입이 급증한 반면, 낙농품과 가축육류 수입은 2013년에 이어 감소추세다. 이는 미국, EU, 칠레 등 한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들 상품과의 경쟁에서 고전한 것이 하나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한국의 뉴질랜드 주요 수입품목

(단위: US\$ 백만, %)

순위	품목명	2012		2013		2014 (5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1339	-9.2	1395	4.2	654	6.1
1	원목	286	-13.8	347	21.3	153	5.7
2	기타석유화학제품	155	29.4	169	9.4	141	66.7
3	낙농품	177	-21.7	172	-2.4	60	-28.4
4	가축육류	122	-23.8	117	-4.0	53	-6.7
5	알루미늄괴 및 스크랩	107	-2.4	118	9.9	37	-26.8
6	펄프	63	-21.1	61	-3.4	34	61.8
7	단백질류	40	5.5	37	-6.5	18	-4.7
8	과실류	58	-16.4	35	-40.3	14	66.9
9	채소류	20	28.0	15	-21.2	13	-13.1
10	제재목	41	13.7	44	6.8	12	-24.1

주: 품목은 MTI 4단위 분류, 순위는 2014년 실적 기준

자료: KITA 한국무역통계 2014년 6월 기준

3. 수입규제제도

가. 수입 규제 제도 개요

뉴질랜드는 제조업이 매우 취약하여 공산품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을 지향하고 있으며, 수입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해온 까닭에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총 수입액 중 약 95% 이상이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으며, 2014년 6월 기준으로 의류, 신발, 섬유를 포함한 일부 공산품에 대해 5%~10%의 수입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수입품을 대체할 만한 적당한 물품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을 경우 무관세를 허용하는 제도를 운영한다.

나. 수입금지 품목

뉴질랜드 관세청은 관세 및 소비세법(Customs and Excise Act 1996) 및 각 정부기관의 법률적 기준에 의거하여, 관련기관의 허가 없이는 아래 품목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금지품목	설명	관련기관
Agricultural items and foods	검역법, 식품법에 의해 허가받지 않은 품목 반입 제한 및 금지	1차 산업부
Antarctic toothfish and Patagonian toothfish	국제협약에 의해 반입금지	1차 산업부
Anthrax prevention – importing brushes that contain animal hair or bristle	미승인 품목 반입 제한	1차 산업부
Chemical Weapons and chemicals that may be used in the manufacture of chemical weapons	국제협약 및 화학무기법에 의해 반입금지	외교통상부
Chewing tobacco	금연환경법에 의해 반입금지	보건부
Cloned or hybrid human embryos	인간보조생식기술법에 의해 인간복제 배아 반입금지	보건부
Controlled drugs and utensils	약품남용법에 의한 미승인 약품 및 기구 반입제한	보건부
Dog tracking devices	주파수간섭 가능성 이유로 개 추적장치 반입금지	기업혁신고용부
Dogs	개관리법에 의한 일부품종의 개 반입제한	내무부
Endangered Species	희귀동물군거래법에 의한 멸종 위기의 동물군 반입금지	보존부

금지품목	설명	관련기관
Explosives, including fireworks	위험물질관리법에 의해 반입금지	환경보호청
False or misleading goods	공정거래법에 의해 표기사항 오류제품 반입금지	소비자보호부
Hazardous substances	위험물질관리법에 의해 반입금지	환경보호청
Hazardous wastes	수출입(제한)금지명령에 의해 위험폐기물 반입금지	환경보호청
Laser Pointer	휴대용 고출력의 레이저포인터 반입금지	보건부
Marine mammals	해양포유류보호법에 의해 반입금지	보존부
Money	허가받지 않은 1만 뉴질랜드이상의 현금 반입제한	경찰청
Motor vehicles with inaccurate odometers	주행기록 조작된 자동차 반입금지	소비자보호부
Objectionable material	음란, 폭력성이 있는 영상물, 출판물 반입금지	관세청
Ozone depleting substances and goods containing these substances	오존층보호법에 의해 오존층 파괴 가능성 있는 물질 반입금지	환경보호청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스톡홀름 협약 및 위험물질관리법에 의해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반입금지	환경보호청
Polychlorinated biphenyls (PCBs), children's crayons, finger paints, and watercolour paints	위험물질관리법에 의해 독성물질 반입금지	환경보호청
Prescription medicines	의약법에 의해 처방의약품의 반입제한	보건부
Radio jamming equipment	미허가 주파수방해장치 반입금지	경제개발부
Radioactive materials	방사선보호법에 의해 허가 받지 않은 방사선물질 반입금지	국립방사선연구원, 보건부
Southern bluefin tuna	남방 참다랑어 보존 협약에 의거 반입금지	1차 산업부
Trout and trout products	송어반입금지명령에 의해 10kg미만의 비매용을 제외한 송어 및 관련 제품 반입금지	보존부
Tyres	뉴질랜드 규격에 미달하거나 제품 표기가 지워진 타이어 반입금지	경제개발부
UN sanctions	유엔제재조치를 받은 품목 반입금지	외교통상부
Unsafe goods	뉴질랜드 규격 검정을 받지 않은 안전사고가능성이 있는 제품 반입금지	소비자보호부
Weapony	미허가 무기류 반입금지	경찰청

자료: 뉴질랜드 관세청 (2014년 6월 기준)

다. 수입규제 품목

□ 수입 규제 부과 현황 (2009년 이후)

품 목	국 가	유 형	관 세	판정 연도
Canned peaches	South Africa	Review Investigation	Current	2014
Diaries	China Malaysia	Dumping Review	Current	2013
Diaries	China Malaysia	Dumping Reassessment	Current	2013
Peaches in preserving liquid	China	Dumping Reassessment	Current	2012
Plasterboard	Thailand	Review investigation	Current	2012
Wire nails	China	Limited review investigation	Current	2012
Peaches in preserving liquid	China	Review Investigation	Current	2012
Preserved Peaches	Spain	Dumping Investigation	Current	2011
Reinforcing Steel Bar and Coil	Thailand	Dumping Review	Current	2009
Canned Peaches	Greece	Dumping Reassessment	Current	2009
Galvanised Wire	Malaysia	Dumping Review	Current	2009
Canned Peaches	Greece	Dumping Review	Current	2009

자료: 뉴질랜드 기업혁신고용부 (2014년 6월 기준)

□ 조사 진행 중인 건수

2014년 6월 현재, 진행중인 수입규제와 관련하여 진행중인 조사 건은 없다.

라. 기타 수입제한 법규

자국에서 생산되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 산업 보호와 고용 유지를 위해 수입품에 대해 반덤핑, 상계 관세를 부과하는 등 규제를 하고 있다. 준거 법률은 The 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Act 1988 및 The Temporary Safeguard Authorities Act 1987 등이 있다.

마. 수입 쿼터

뉴질랜드는 교역 자유화를 주창하고 있어 수입 쿼터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바. 비관세 장벽

□ 통관 절차 상의 제약

뉴질랜드는 1996년 이래로 현대화된 통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래서 검역과 검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통관 지연사례나 통관절차상의 규제를 비롯한 기술적 장벽은 거의 없다. 그러나 모든 동·식물 수입에 관해서는 환경보호와 국민보건을 위해 검역과 통관 절차를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다. 일부 육류 등 동·식물 관련 제품은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의 사전 수입허가 규정에 맞도록 엄격하게 관리 및 규제된다. 그러나 새로운 과일과 채소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검역기준이 먼저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와 관련된 행정절차가 신속하지 못하여 뉴질랜드로 수출하는 데에 있어서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 환경 관련 규제

뉴질랜드는 야채와 가축 등 식품으로 소비되는 유전자변형식물, 동물 및 미생물과 유전자 변형생물체(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를 가공한 유전자변형식품(GMF, Genetically Modified Food)을 엄격하게 관리한다. 유전자변형생물체와 유전자변형식품의 개발, 수입, 실험 재배, 상업적 판매를 위해서는 뉴질랜드 정부가 임명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환경위험관리당국(ERMA, Environmental Risk Management Authority)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뉴질랜드 정부는 유전자변형(GM, Genetically Modified) 식품의 실험과 시험 재배만 허용하고, 유전자변형식품의 상업적 판매를 금지해 왔으나, 2003년 10월 29일 이를 해제했다. 유전자변형식품의 경우, 유전자변형상표임을 표시해야 한다. 또한 식품 원료 중 일부에 유전자변형성분이 포함된 경우에도 해당 원료 표시 옆에 유전자변형성분이 포함되었다는 것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뉴질랜드에서 판매되는 유전자변형식품은 수입품이 대부분이다. 2014년 현재 뉴질랜드에서 상업적으로 재배되거나 사육되는 유전자변형 동·식물은 없다.

사. 최신정보

뉴질랜드 보건부 (Ministry of Health)는 2014년 3월 1일자로 보건부 허가가 없는 휴대용 고출력 레이저포인터 기기의 수입을 금지했다. 이번에 수입이 금지된 레이저 포인터는 1밀리와트 이상의 출력을 내는 제품으로, 해당제품의 수입자는 뉴질랜드 보건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만 수입이 가능하다.

4. 대한수입규제동향

가. 한국산에 대한 수입 규제 현황

우리나라의 對뉴질랜드 수출이 자동차, 전자제품, 석유연료 등으로 자국 산업 및 기업과 이해 대립이 적기 때문에 우리 상품에 대한 수입 규제 가능성은 낮다.

특히 과거 우리나라 냉장고, 세탁기 등에 대한 덤핑제재를 초래했던 현지 유일의 백색가전 제품 제조공장이 중국, 태국 등지로 공장을 이전함으로써 우리나라 전자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 가능성은 더욱 낮아진 상태이다.

□ 수입 규제 사례/ 자동차용 배터리(HS: 8507.10) 반덤핑 규제

- 규제 기간: 1991년 12월 ~ 2000년 2월
- 관련 기업: GNB Technologies (GNB) Century Batteries (NZ) Ltd
- 대상 국가: 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대만
- 우리 기업: Delkor Corp., Global & Yuasa Battery, Korea Storage Battery
- 조치 경과
 - 1991년 4월 반덤핑 혐의로 피소
 - 1991년 6월 덤핑 조사 착수
 - 1991년 9월 예비 덤핑(40% 덤핑 마진율)
 - 1991년 12월 덤핑 최종 판정(47~48% 덤핑 마진율)
 - 1994년 6월 반덤핑 세율 최고 20%로 하향 조정
 - 1999년 6월 재검토
 - 1999년 8월 반덤핑 관세12~18% 부과
 - 2008년 9월 기준 규제 기간 만료로 반덤핑 규제는 종료됨.

□ 수입 규제 사례/ 연마용 디스크(HS: 6804.22) 반덤핑 규제

- 규제 기간: 1995년 10월 ~ 2000년 10월 16일
- 관련 기업: Abrasives Manufacturing Ltd
- 규제 대상국: 한국, 대만
- 규제 대상 한국 기업: Dongbo Grinding Wheel Co., Dongil Industries Co., Ltd
- 조치 경과
 - 1995년 1월 피 제소
 - 1995년 4월 반덤핑 조사 착수
 - 1995년 7월 반덤핑 잠정 관세 부과
 - 1995년 10월 반덤핑 최종 판정(덤핑 관세 12-16%)
 - 2000년 10년17일 해제

□ 수입 규제 사례/ 냉장고(HS: 841810/21) 반덤핑 규제

- 규제 기간: 2001년 6월 10일 부터 5년간
- 관련 기업: Fisher & Paykel
- 규제 대상국: 한국
- 규제 대상 우리 기업: 삼성, LG, 대우 등
- 조치 경과
 - 2000년 11월 피 제소
 - 2000년 12월 반덤핑 조사 착수
 - 2001년 3월 덤핑 예비 판정
 - 2001년 3월 반덤핑 잠정 관세 부과(25% - 71%)
 - 2001년 6월 최종 판정(32%-55%)
 - 2006년 6년 11 해제

□ 수입 규제 사례/ 세탁기(HS: 845011) 반덤핑 규제

- 규제 기간: 2001년 6월 10일 부터 5년간
- 관련 기업: Fisher & Paykel
- 규제 대상국: 한국
- 규제 대상 우리 기업: 삼성, 엘지, 대우 등
- 조치 경과
 - 2000년 11월 피 제소
 - 2000년 12월 반덤핑 조사 착수
 - 2001년 4월 덤핑 예비 판정
 - 2001년 4월 반덤핑 잠정 관세 부과(52% - 93%)
 - 2001년 6월 최종 판정(52%-93%)
 - 2006년 6월 11일 해제

□ 수입 규제 사례/ 오일필터 반덤핑 규제

- 조사 개시일: 2004년 7월 20일
- 잠정 판정: 2004년 10월 28일
- 조사 종료일: 2005년 1월 14일
- 규제 기간: 2005년 1월 14일 ~ 2010년 1월 14일
- 2006년 12월 뉴질랜드 오일필터 생산 공장의 폐쇄로 규제 사유가 없어져 해제

□ 수입 규제 사례/ 다이어리 반덤핑 규제

- 조사 개시일: 2007년 3월
- 판정: 2007년 8월
- WTO 반덤핑 협약 제5.8항(미소 물량 수입에 대한 조사 종료)에 의거하여 한국, 홍콩, 인도네시아산에 대한 반덤핑 조사 결과 반덤핑제소 취소

나. 최신정보

2013년 12월, 뉴질랜드 기업혁신고용부는 6월에 시작된 한국산 다이어리의 반덤핑혐의에 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한국의 다이어리 제조사인 양지사, 타라 TPS, Artpac 등이 연관된 이번 조사에서 한국산 다이어리의 덤핑은 확인되었으나, 피해가 없고 실질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무혐의 판결 내렸다.

5. 관세제도

가. 개요

뉴질랜드는 농업, 임업 및 목축업이 주요 산업이며 목재, 소고기 및 낙농제품이 주요 수출 품목이다. 이들 1차 산업은 정부 보조 없이도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자유무역을 지향하며, 농산물 및 서비스 등 전 부분의 교역 자유화를 주창한다. 이에 따라 마약류, 무기류, 동식물 같은 수입 금지 품목 등을 제외하면 수입이 자유롭다. 또한 자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대부분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단, 일부 품목에 대해 상대적으로 5-10%대에 이르는 고율관세가 부과되기도 하나, 이 경우에도 WTO 권고에 따라 점진적인 인하를 단행 중이다.

나. 관세율 종류

1) 일반관세(GT: General Tariff)

뉴질랜드는 WTO회원국으로서 MFN대우를 부여한다. 이에 따른 관세율은 모든 품목에 대하여 3.5% 수준이다. 그러나 일반세율 자체가 낮거나 무관세 적용 품목이 많아서 협정 체결에 따른 관세 혜택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2) 일반특혜관세(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개발도상국의 수출증대 및 공업화의 촉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관세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수산물, 공산품, 반제품에 대해 일반 관세율보다 낮은 관세율 혹은 무관세를 적용하는 관세 상의 특혜제도를 의미한다.

뉴질랜드에서 일반특혜제도(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혜택을 받으려면 제품의 최종 생산 공정이 해당 국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원자재나 부품을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여 생산하는 경우에는 수혜 대상국의 원자재 비용, 제조, 노동비용 등이 해당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원산지 증명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국가에서 발급받아야 하지만 뉴질랜드에서는 신고만으로 일반특혜제도를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뉴질랜드에서 출공 개도국으로 분류되어 특혜관세(GSP) 혜택을 받아 왔으나 2004년 11월부터 일반관세 부과 대상국으로 분류되어 소폭의 관세 수혜도 소멸되었다.

3) 최저개발국관세(LDCT: Least Developed Country Tariff)

최저개발국가는 최빈국가라고도 하며,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에 의해 1인당 국내총생산 개인소득이 900달러 미만에 속하는 나라들 중 중등교육 수준, 성인 문맹률, 평균 수명 등을 기준으로 3년 마다 해당 국가들의 명단이 작성된다. 아프리카, 아시아 및 카리브해와 태평양의 섬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다.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이디오피아, 네팔 등의 최저개발국가에서 생산되는 수출상품에 대해서는 무관세 혜택을 부여하는데 형식상 이를 최저개발국관세라 일컫는다.

4) 최혜국관세(MFN: Most Favoured Nation Tariff)

최혜국대우(MFN: Most Favoured Nation)를 부여 받은 국가들에 부과되는 관세로 뉴질랜드에서는 FTA나 그에 준하는 무역 협정을 맺은 나라에 준하여 발효된다. 이에 따른 관세율은 모든 품목에 대하여 3.5% 수준이다. 그러나 일반세율 자체가 낮거나 무관세 적용 품목이 많아서 협정 체결에 따른 관세 혜택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다. 관세율 확인 방법

뉴질랜드 관세와 관련된 사항은 관세청 사이트(www.customs.govt.nz)에서 파악할 수 있다. 동 관세청 웹사이트를 통한 세율 검색방법은 “웹 초기화면>Library>The Working Tariff Document” 순으로 접근하고, 해당품목 군 섹션을 찾은 후 HS Code를 검색하면 pdf 파일로 검색이 가능하다. 동 pdf 파일에서 특혜관세 표기는 AAN, CA, CN, TH, TPA 등의 기호가 나오는데, 각각 호-뉴-아세안 특혜세율, 캐나다 특혜세율, 중국 특혜세율, 태국 특혜세율, 태평양 도서국 특혜세율을 의미한다.

라. 원산지 결정기준

두 곳 이상의 여러 나라에서 물건이 생산되거나 공정된 경우에는 원산지 규정이 필요하다. 뉴질랜드는 현행 세계무역기구의 원산지 협약에 준하여, 부가가치 기준에 의한 원산지 규정을 채택하고 있다.

마. 최신정보

2014년 5월 15일 발표한 정부 예산안 2014/2015에 의하면 뉴질랜드 정부는 건설경기 호황으로 인해 수요와 가격이 폭증하는 건축자재의 관세와 세금을 한시적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이번 세금 인하조치로 인해 약 90%의 건축자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측된다.

6. 주요인증제도

가. 개요

뉴질랜드는 품목별로 개별 법이나 규정에 의한 안전 표준 및 인증을 요구하며, 대부분 임의 규정이 많아 품목별로 세부적인 사항들을 기관은 소비자보호부(Ministry of Consumer Affairs) 산하 뉴질랜드 표준원(Standards New Zealand)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이 기관(www.standards.co.nz)을 접속하면, 관련 정보를 쉽게 입수할 수 있고 E-메일이나 전화로도 필요한 자료와 정보, 서식 등을 쉽게 입수할 수 있으며, 인증 절차나 기관 등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 관련 법규로는 표준법(Standards Act 1988)이 있는데, 이 법은 뉴질랜드에서 표준 사용을 촉진하고 장려하여 제품의 품질 하자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소비자보호부와 법이 있기는 하지만 모든 공산품의 표준 취득 여부에 대해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법규 또는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는 이러한 인증이 필요한 대상이 다소 모호하다. 그러나 식품, 의약품, 기계류, 전기 및 가스용품 등은 인체나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많기 때문에 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뉴질랜드는 호주와 TTMRA(Trans-Tasman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라는 상호인증협정 (1998.5.1부 발효)을 체결하였고, EU와는 NZ/EU MRA (Mutual Recognition of Conformity Assessment)를, 싱가포르와는 CEP(Closer Economic Partnership)를, APEC 회원국과는 식품 및 전기전자 제품에 대해 상호인증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나. 강제인증

1) HACCP 기반 RMP(Risk Management Programme), FSP(Food Safety Programme)

□ 인증마크와 인증대상품목

- RMP 인증은 동물성 식품제조 및 유통, 수출업종을 대상으로 한다.
- FSP 인증은 비동물성 식품 제조 또는 식품 내수유통, 식품수입을 대상으로 하며, 식품제조업에만 강제규정이 적용된다.
- 별도의 마크는 없으며 인증여부는 1차산업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인증담당기관 및 도입시기

- RMP와 FSP는 각각 2000년, 1996년에 도입되었으며 1차산업부에서 인증을 담당하고 있다.

□ 인증 발급절차/소요기간/비용

- 절차 : HACCP 기반의 RMP, FSP 시스템 구비 -> 1차산업부에 신청 -> 1차산업부 감사 -> 1차산업부 승인 및 인증 -> 1차산업부의 주기적인 감사
- 소요기간 : 6개월 이내.
- 비용 : 시스템구비에 5,000~10,000 뉴질랜드달러소요, 그외에 주기적인 MPI 감사에 따른 비용이 청구된다.

□ 미이행시 제재사항 및 우리나라 업체 유의사항

- 해당인증없이 식품제조가 불가능하다.
- 해당인증은 1차산업부의 주기적인 감사를 받게되며 문제발생시 사업정지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 식품 수입 및 유통에 관한 FSP의 경우, 임의규정이기는 하나 현지 주요 대형마트 납품시 해당인증을 필수로 요구하고 있다.

2) Medsafe(New Zealand Medicines and Medical Devices Safety Authority)

□ 인증마크와 인증대상품목

-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의약품법(the Medicines Act 1981) 및 의약품 오남용방지 법(the Misuse of drugs Act 1975) 등을 통해 규제하고 있다.
- 별도의 마크는 없으며 인증여부는 보건부(Ministry of Health) 산하 Medsafe에서 확인가능하다.

□ 인증담당기관 및 도입시기

- 의약품 및 의료기기와 관련된 법의 집행은 Medsafe가 담당하고 있다.
- 또한, 안전 표준을 인증 받지 않아도 다른 나라의 인증을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호주를 비롯하여 유럽(EU), 싱가포르, APEC 회원국의 제품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에도 특정 품목이나 사항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해당되지 않는 품목과 자국의 개별법에서 요구하는 안전 표준도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의료기기 수입에 대해 사전허가제를 채택하지 않고 등록제를 적용하고 있다. 즉, 수입상은 수입품 유통 30일전에 메드세이프의 WAND(Web Assisted Notification of Devices)에 등록하면 된다.

□ 인증 발급절차/소요기간/비용

- 절차 : Medsafe에 신청 -> 적합성 검사 -> 승인
- 소요기간 : 평균적으로 12~24개월 정도 소요된다.
- 비용 : 품목에 따라 30,000~80,000 뉴질랜드달러 소요

□ 미이행시 제재사항 및 우리나라 업체 유의사항

- 강제인증으로 미인증시 제조, 수입 및 유통이 불가능하다.

3) WaterMark Certification Scheme

□ 인증마크와 인증대상품목

- 상수시설에 사용되는 파이프, 수도꼭지 제품은 호주의 Watermark 인증을 받도록 규제하고 있다.



자료 : Sai Global

□ 인증담당기관 및 도입시기

- 상수 시설 제품의 인증 집행과 관련하여 뉴질랜드는 호주 인증을 인정하고 있으며 제품의 테스트와 인증발급을 호주의 Sai Global이 담당하고 있다.

□ 인증 발급절차/소요기간/비용

- 절차 : Sai Global에 신청 -> 적합성 검사 -> 승인
- 소요기간 : 평균적으로 약 12~24개월 정도 소요된다.
- 비용 : 품목에 따라 3,000~10,000 뉴질랜드달러 소요되며 인증 발급 후 연간 갱신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

□ 미이행시 제재사항 및 우리나라 업체 유의사항

- 상수도와 관련된 제품은 강제인증으로 미인증시 제조, 수입 및 유통이 불가능하다.

다. 임의인증

1) S-Mark

□ 인증마크와 인증대상품목

- 뉴질랜드 표준원에 등재된 공산품 대부분이 해당된다.

S-마크



자료: Bureau Veritas (New Zealand) Ltd

□ 인증담당기관 및 도입시기

- 뉴질랜드 표준원에서 모든 공산품 표준을 담당하고 있으며, 품질 전담기관인 Bureau Veritas (New Zealand) Ltd에서 자체 시험 검사를 거쳐 승인한다.

□ 인증 발급절차/소요기간/비용

- 절차 : 뉴질랜드 표준원에서 해당제품의 표준확인(유료) -> Bureau Veritas NZ에 시험 신청 -> 자체 검사 -> 승인
- 소요기간 : 품목에 따라 상이함.
- 비용 : 품목에 따라 상이함.

□ 미이행시 제재사항 및 우리나라 업체 유의사항

- 뉴질랜드에서는 제품 하자로 인해 소비자에게 해를 끼친 경우, 제품의 표준 준수 입증 책임이 수입업체에게 있기 때문에 수입상이 인증확보 여부를 따지게 되며, 우리 수출 업체로서도 진출 초기부터 S마크 획득이 요구된다.

2) RCM(Regulatory Compliance Mark)

□ 인증마크와 인증대상품목

- RCM인증은 뉴질랜드에 사용중인 모든 전기, 전자제품이 대상품목이다.

RCM 마크



자료: Branz Group

□ 인증담당기관 및 도입시기

- 기존의 C-Tick 인증을 대체하기 위해 2013년 3월 1일부터 새롭게 실시되었다
- 뉴질랜드 기업혁신고용부(Ministry of Business, Innovation & Employment)와 호주 방송통신청(Australian Communications and Media Authority)에서 주관하며 호주 전기 규제 허가청(ERAC, Electrical Regulatory Authorities Council)에서 등록을 담당한다.

□ 인증 발급절차/소요기간/비용

- 기존 C-Tick 인증업체 변경절차 : 2016년 2월말까지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C-Tick에서 RCM마크로 변경.
- 신규 업체 인증절차 : 호주-뉴질랜드 표준 AS/NZS 4417 확인(유료) -> 전기 규제 허가청(ERAC)에 등록 -> RCM 마크 획득
- 소요기간 : 품목에 따라 상이함.
- 비용 : 품목에 따라 상이함.

□ 미이행시 제재사항 및 우리나라 업체 유의사항

- 임의인증이나 미이행시 뉴질랜드 현지 마케팅이 어려운 관계로 인증을 획득하는 것이 좋다.

라. 민간자율인증

1) BRANZ

□ 인증마크와 인증대상품목

- 뉴질랜드는 95%이상의 주택이 목재로 건축되고 있다. 따라서 화재나 누수에 취약하기 때문에 건축자재에 대해서는 각별한 안전규격을 요구하고 있다.
- 모든 건축자재가 BRANZ 인증의 대상은 아니다. 일부 자재는 BRANZ승인 없이도 통용되고 있는데 동 인증을 득해야 하는지 여부는 바이어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BRANZ 인증마크



자료: Branz Group

□ 인증담당기관 및 도입시기

- 1974년부터 도입이 시작되었으며 비영리법인인 BRANZ Group이 인증을 담당하고 있다.

□ 인증 발급절차/소요기간/비용

- 절차 : 바이어와 인증여부 협의 -> BRANZ에 신청(온라인또는 서면신청가능) -> 호주 및 뉴질랜드 건축기준 적합성 검사 -> BRANZ 승인 및 인증 -> BRANZ의 지속적인 점검 실시
- 소요기간 : 평균적으로 6개월~12개월정도 소요된다.
- 비용 : 품목에 따라 상이한 관계로 바이어와 사전협의 및 확인이 필요하다.

□ 미이행시 제재사항 및 우리나라 업체 유의사항

- 임의인증이나 미이행시 뉴질랜드 현지 마케팅이 어려운 관계로 인증을 획득하는 것이 좋다.
- 대부분의 현지 바이어들이 BRANZ 인증을 요구하기 때문에 바이어와의 사전협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테스트에 시간이 오래걸리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

라. 뉴질랜드 인증 기관 및 관련 부처

- Standards New Zealand
 - 주소: 155 The Terrace Private Bag 2439, Wellington
 - 전화: 64-4)498 5990
 - FAX: 64-4)498 5994
 - Email: snz@standards.co.nz
 - Website: www.standards.co.nz

- Bureau Veritas (New Zealand) Ltd
 - 주소: 35 O'Roke Road Penrose Penrose 1061
 - 전화: 64-9) 526-4546
 - FAX: 64-9) 571-2285
 - Website: www.bureauveritas.co.nz

- Ministry of Health
 - 주소: Ministry of Health PO Box 5013, Wellington
 - 전화: 64-4) 496-2000
 - FAX: 64-4) 496-2340
 - Email: moh@moh.govt.nz
 - Website: www.health.govt.nz

- Ministry of Health
 - 주소: Ministry of Health PO Box 5013, Wellington
 - 전화: 64-4) 496-2000
 - FAX: 64-4) 496-2340
 - Email: moh@moh.govt.nz
 - Website: www.health.govt.nz

- Ministry for Primary Industries
 - 주소: 25 The Terrace, PO Box 2526, Wellington
 - 전화: 64-4) 894-0100
 - FAX: 64-4) 894-0720
 - Email: info@mpi.govt.nz
 - Website: www.mpi.govt.nz

- Medsafe - New Zealand Medicines and Medical Devices Safety Authority
 - 주소: Level 6, Deloitte House, 10 Brandon Street, P O Box 5013, Wellington
 - 전화: 64-4) 819-6800
 - FAX: 64-4) 819-6806
 - Email: becci_slyfield@moh.govt.nz
 - Website: www.medsafe.govt.nz

- BRANZ
 - 주소: Moonshine Rd., Judgeford, Porirua City, Wellington
 - 전화: 64-4) 237-1170
 - FAX: 64-4) 237-1171
 - Email: appraisals@branz.co.nz
 - Website: www.branz.co.nz

- Telarc SAI (Sai Global Ltd 뉴질랜드 에이전트)
 - 주소: Level 3, 626 Great South Road, Ellerslie, Auckland
 - 전화: 64-9) 525-0100
 - FAX: 64-9) 525-1900
 - Email: info@telarcsai.co.nz
 - Website: www.telarcsai.co.nz

7. 지식재산권

가. 지적재산권 보호 대상 및 보호 제도

뉴질랜드에서 자신의 지적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인 뉴질랜드 지적재산권 등록소(Intellectual Property Office)에 등록을 해야 한다. 뉴질랜드에서 보호되는 지적재산권의 종류는 상표권(Trade marks), 특허권(Patents), 의장권(Designs), 품종보호권 (PVR: Plant Variety Rights) 등 4가지이며 관련 법률로는 저작권법(Copyright Act 1994)을 비롯하여 상표법(Trade Marks Act 2002), 특허법(Patents Act 1953), 의장법(Designs Act 1953), 품종보호법(Plant Variety Rights Act 1987) 및 공정거래법(Fair Trading Act 1986) 등이 있다.

저작권법(Copyright Act 1994) 및 상표법(Trade Marks Act 2002) 등에서는 재판을 통한 권리구제는 물론 제품의 반환 등에 대해서도 열거하고 있는데 지적재산권 침해 사범에 대해서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15만 뉴질랜드달러(약 10만 달러)의 벌금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법(Fair Trading Act 1986)에서도 소비자 기만을 이유로 이들 침해에 대해 강력히 규제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 외에도 도매 및 소매 부문에서부터 이러한 침해를 방지 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과 경찰의 단속이 이어지고 있으며, 특허 및 상표권과 의장권 침해를 당한 사람은 뉴질랜드 세관에 이들 제품의 반입 금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된다.

그러나, 뉴질랜드가 1998년부터 병행수입(Parallel Import)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표권 등이 침해를 받는 경우가 있다. 뉴질랜드 정부의 Parallel Import 허용관련 사항은 뉴질랜드 기업혁신고용부(www.med.govt.nz > Business > Intellectual Property Policy > Parallel Importing in New Zealand)을 참고하면 된다.

□ 특허권, 상표권, 의장권, 품종보호권

특허권은 1953년 제정되고 1982년 개정된 특허법에 따라 존속기간은 제출일로부터 16년(5년 또는 10년 연장 가능)이며 출원 공고는 3개월이다.

상표권은 1953년 제정되어 2002년 개정된 상표법에 따른 것으로 서비스 마크 제도를 도입하여 서비스 마크 등록을 허용하고 있다. 존속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7년으로 선사용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5년 동안 상표권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선의의 제3자가 등록 상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의장권은 1953년 제정되어 1980년에 개정된 바 있다. 심사주의를 원칙으로 하나 등록 표시를 요하지 않으며 출원일로부터 15년(5년씩 2회 연장 가능) 존속이 가능하다.

품종보호권은 1987년 제정되었으며, 2002년에 개정된 바 있다.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지적소유권이다. 채소의 경우 20년, 과수와 임목은 23년의 배타적 권리를 갖는다.

□ 관련기관

- IPONZ -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New Zealand
- 주소: PO Box 9241, Marion Square, Wellington 6141, 205 Victoria Street, Wellington
- 전화: 64-3)962-2607
- Email: info@iponz.govt.nz
- Website: www.iponz.govt.nz

이 웹사이트에는 특허/상표/의장권 및 품종보호권의 온/오프라인 등록절차, 등록 요금 및 처리에 예상되는 소요시간, 등록 후 변경/갱신 및 폐기의 방법과 함께 이미 등록되어 있는 특허/상표/저작권의 데이터 베이스, 지적재산권에 대한 관련 법규, 뉴질랜드 체류 외국인의 지적재산권, 뉴질랜드 내 지적재산권 통계자료, 변리사에 관한 정보 등 지적재산권 및 특허/상표/의장권/식물특허권에 관한 실질적 가이드 라인이 제시되어 있다.

- AJ Park
- 주소: AMP Centre, Level 14, 29 Customs Street West, Auckland
- 전화: 64-9)353-6637
- Email: auckland@ajpark.com
- Website: www.ajpark.com

뉴질랜드 대표 특허법인으로 뉴질랜드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사항은 우선 뉴질랜드 특허 전문 변호사나 변리사를 통하는 것이 우선이다.

나. 최신정보

□ 신 특허법(Patents Act 2013)

2013년 9월 13일 신규 특허법안(The Patents Bill 2008)이 영국여왕을 대리하는 총독의 재가를 받았다. 새로운 특허법은 Patents Act 2013으로 불리게 되며 2014년 9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신 특허법에 새롭게 포함되는 신규 규정
- 공공질서 및 도덕에 반하는 발명의 특허권 제한
- 컴퓨터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특허권
- 식물 품종 특허권
- 인간질병의 진단, 치료 및 수술방법의 특허권

8. 통관절차 및 운송

가. 일반 통관절차 개요

뉴질랜드는 기생충 및 질병으로부터 국민경제의 주요 원천인 동식물 자원을 보호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엄격한 통관 및 검역 절차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동식물 제품 등에 대해서는 사전 수입허가제 실시 등 엄격한 통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질병 및 기생충 예방차원에서 박멸 및 봉쇄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시장 개방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수입 규제는 없으나 외국산 신선농산물의 경우 수입 검역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만 통관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한국산 과일 중 뉴질랜드 검역 기준(IHS: Import Health Standard)이 마련된 배(Pear)와 포도(Grape)는 수입이 허용되나 검역기준이 마련 되지 않은 과일은 수입이 불가능하다.

여행자가 비행기를 통해 반입하는 물품 검사도 까다롭기는 마찬가지이다. 입국신고서에 사과와 같은 과일이나 식품류를 기재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400뉴질랜드달러(약 3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동식물, 씨앗 류, 식품 류를 제외한 주요 수입 금지/제한품목은 한국과 비슷하다.

나. 통관의 종류

□ 약식통관 (Informal Entry)

1,000뉴질랜드달러 미만이면서 관세가 60뉴질랜드달러 이상의 품목의 한하여 약식통관이 이루어진다. 약식통관은 무관세로 이루어진다.

□ 정식통관 (Formal Entry)

1,000뉴질랜드달러 이상의 품목에 대하여 정식통관이 이루어진다. 수입업자는 상업송장 등 관세평가 및 세 번 분류에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을 포함한 선적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여 수입허가 및 관세 납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물품의 인출 이전에 관세, GST(2013년 12월 기준 15%) 및 특별 소비세(Excise Duty) 등을 완납하고 세관에서 발행하는 화물 인도 지시서(Delivery Order)을 교부 받아야 물품을 반출할 수 있다.

□ 임시통관 (Temporary Import Entry)

뉴질랜드에 들어온 품목을 사용하지 않고 12개월 이내에 다시 반출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 임시통관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 경우에는 현금 보증이나 관리자의 허가에 의한 별도의 승인이 필요할 수 있으며, 현금 보증을 했을 경우에는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다.

□ 허가통관 (Permit Entry)

이미 통관이 이루어졌으나, 통관 후에 다시 포장, 혹은 운송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에 허가통관을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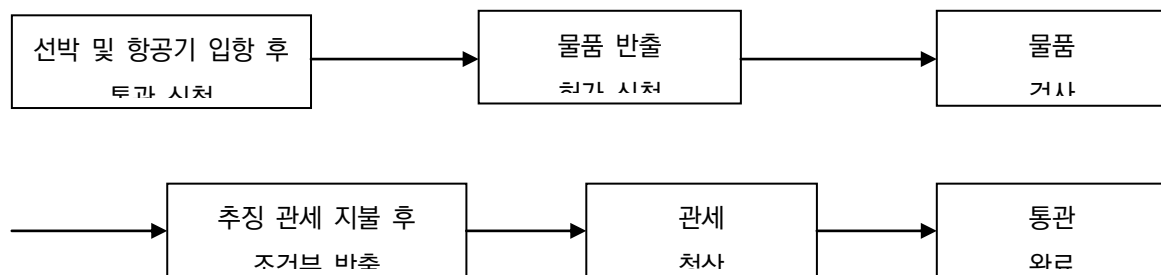
□ 가수입계 (Sight Entry)

물품에 표기된 내용이 정확하지 않거나 모두 표기되지 않은 경우 가수입계를 실시한다.

□ 전자 운송 정보 시스템 (ECIS)

뉴질랜드에서는 1000뉴질랜드달러 이하이면서 관세가 60뉴질랜드달러 이하인 품목에 한하여 전자 운송 정보 시스템을 이용하여 통관을 진행할 수 있다. 이 때는 운송 수단에 따른 부가요금이 적용될 수 있다.

다. 통관 절차 흐름도



라. 통관에 필요한 선적서류

모든 수입업자는 통관업자를 통하지 않는 경우에 반드시 세관 인터넷페이지(www.cusweb.co.nz) 또는 EDI를 이용하여 전자 문서로 반출 신청을 해야 하며 이때 추가로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등의 서류 등이 요구될 수 있다

□ 상업송장

효율적인 통관을 위해서는 상세한 표기, 수량, 무게, 부피 등 해당 화물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상세하게 기입하여야 한다. 수입 통관서류 작성시 기입 사항은 뉴질랜드 세관이 발행하는 Fact Sheet 7 에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으며, 주요 사항으로는 통관 종류, 수입항의 이름, 운송수단, 상업송장 번호, 수입, 혹은 공급자의 이름 및 인적사항, 수입일자 (일/월/년), 원산지, 물품의 정확한 가격의 상세한 표기, 물품 가격 외에 드는 비용 (운송비용, 보험료, 포장비용 등) 등이다.

□ 포장명세서 (Packing List)

각 포장상자마다 자세한 명세를 기입하여야 하며, 품목에 따라 FDA, EPA 등 관할에 따라 추가로 작성해야 하는 서식이 있을 수 있다.

□ 세관의 조사항목

세관에서는 CASPER라 불리는 컴퓨터 시스템을 활용하여 무작위로 수입품을 검사하는데, 평균 검사 비율은 7.5~10% 수준이다. 그러나 신선농산물의 경우 전수검사를 실시하기도 한다.

□ 통관 경비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뉴질랜드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은 GST 라 불리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데 산정 기준 가격은 세관신고가격+관세+운송 및 보험료 포함 가격이다. 또한 수입되는 모든 물품은 28.75 뉴질랜드달러의 IETF(Import Entry Transaction Fee)라 불리는 수입 통관 수수료가 부과 되는데 여기에는 1 차산업부에서 부과하는 4.00 뉴질랜드달러의 검역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다.

□ 통관 절차 및 안내 문의

구체적인 품목의 수입 금지/제한 여부나 통관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뉴질랜드 관세청 홈페이지 (www.customs.govt.nz)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마. 뉴질랜드 무역항 및 공항개황

뉴질랜드의 국제공항은 3대 도시인 오클랜드, 웰링턴, 크라이스트처치에 위치하고 있다. 매년 약 26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과 200만 명의 내국인이 이용하고 있다. 오클랜드 공항은 뉴질랜드의 국내외 관문 역할을 하고 있으며 대한항공을 비롯한 주요 항공사의 취항이 집중되어 있는데, 매일 100여개 국제선 및 300여개 국내선이 이륙하고 있다. 오클랜드 공항은 시내에서 21km 떨어져 있고 차량으로 35분 가량 소요되며, 국제선과 국내선으로 청사가 구분되어 있다.

주요 항구 및 공항별 수출입 금액

(단위: US\$ 백만, FOB, %)

항구/공항	2012			
	수출액	수입액	합계	비중
Auckland	4,238	13,668	17,906	23.69
Tauranga	13,240	4,815	18,055	23.89
Auckland 공항	2,866	7,514	7,514	9.94
Lyttelton	4,311	2,880	7,191	9.52
Whangarei	623	4,870	5,493	7.27
Dunedin	2,934	286	3,220	4.26
Napier	2,784	447	3,231	4.27
Wellington	804	2,013	2,817	3.73
New Plymouth	2,053	274	2,327	3.08
Invercargill	825	519	1,344	1.78
Christchurch 공항	939	480	1,419	1.88
전체 항구/공항	37,310	38,261	75,571	100.00

자료: 뉴질랜드 통계청 (2013년 12월 기준, 2014년 6월 기준 최신정보, 2013년 통계는 7월 발표예정)

웰링턴 공항은 행정수도에 위치 하고 있으며 국제선보다는 국내선 성격이 강하다. 크라이스트처치 공항은 남섬의 교두보에 위치하고 있고 국내는 물론 국제선 역할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대한항공은 비수기와 성수기에 따라 운행 비행기편을 달리 하고 있다. 2014년 6월 운항 스케줄은 비수기 주 4회 운항(인천→오클랜드 월수금토, 오클랜드→인천 화목토일), 성수기는 매일 운항하고 있다.

국제 항구로는 북섬의 Tauranga, Auckland, Napier, New Plymouth, 남섬의 Christchurch, Dunedin, Nelson 등이 있다. 수출 물량은 뉴질랜드 최대 도시이자 경제활동 중심지인 오클랜드 항구가 가장 많으며, 원목 및 농산물을 주로 수출하는 북섬 동부의 타우랑가가 두 번째이다. 하지만, 2012년 오클랜드 항구 파업사태로 여러 선사가 타우랑가 항구로 옮기면서 2014년 현재 타우랑가 항구가 뉴질랜드 최대항구로 등극하였다. 또한, 타우랑가 항구는 2014년 6월 뉴질랜드 최대 수출기업인 폰테라, 육류회사 실버펀 팜스등과 10년 계약을 체결하며 규모를 확장해가는 상황이다.

한국과 뉴질랜드 사이를 운항하는 컨테이너선은 주 1회 스케줄로 COSCO, NYK, MOL, Hamburg Sud 등이 공동운항하고 있다. 한국에서 수입되는 컨테이너의 하역은 오클랜드 항구에서 진행하나 한국 수출 컨테이너의 경우는 주로 타우랑가 항구에서 선적된다.

바. 운송비용

뉴질랜드는 총 길이가 2011km나 되고, 구불구불한 도로지형을 가지고 있으며, 인구는 적지만 널리 산재되어 있는 나라이다. 그렇게 때문에 뉴질랜드에서 운송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전국에 걸쳐 약 9만 3000km의 통합 도로망과 4200km의 철로가 가설되어 있다. 대외 교역은 약 90%가 선박에 의해 이루어지고 나머지 10%가 항공을 통해 이루어 진다. 선박 운송의 경우 30여 개의 외국 회사가 맡고 있으며, 항만 관리, 운영도 이제는 거의 민영화 되었다.

□ 컨테이너 비용 (40ft Dry Container, 2014년 6월 ANL사 견적 기준)

- 내륙 운송비: 310달러 (오클랜드 지역 내)
- 해상 운송비: 3,000달러 (오클랜드 → 부산)
- 한국 → 뉴질랜드 해상운송비: 2,000달러
- 한국 ↔ 뉴질랜드간 운송 소요 기간: 약 3주

사. 주요 운송회사 및 통관 서비스 회사 리스트

- AION Cargo Solution (한국업체)
 - 주소: PO box 201205, Auckland Airport 2150
 - 전화: +64-9)254-4900
 - Email: cargo@aioncargo.com
 - Website: www.aioncargo.co.nz
- EIF
 - 주소: PO Box 97727, Manukau City, Manukau 2241
 - 전화: +64-9)263-0222
 - Email: lundj@eif.co.nz
 - Website: www.eif.co.nz
- TRANSTORE
 - 주소: P.O. Box 58 467, Botany, Manukau 2163
 - 전화: +64-9)259-0086
 - Email: info@transtore.co.nz
 - Website: www.transtore.co.nz

9. 수출유망품목

가.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유망품목

□ 식품 제조 및 포장기계 설비

중국의 경제성장으로 인한 중산층 증가와 중국산 식품의 안전성문제로 인해 뉴질랜드산 유제품을 포함한 식품 수입이 대폭 증가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식품제조산업이 성장추세에 있다. 또한, 뉴질랜드의 청정이미지로 인한 제품 프리미엄 효과가 더해져 외국의 글로벌 식품제조기업들도 앞다투어 뉴질랜드에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3년 1,671만 달러의 식품 제조관련 기계가 수입되었는데 이는 2012년대비 70%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주로 독일을 비롯한 유럽산 제품이 많이 수입되고 있으며 한국산 제품의 2013년 수입액은 전년대비 788% 증가한 158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 소형 잡화

2013년 11월 4일에는 한국의 KD미디어가 출자한 예스숍 홈쇼핑 채널이 공식 개국했다. 전국 방송인 예스숍 홈쇼핑은 한국 상품의 비율을 90% 정도로 구성할 계획으로 있어 한국산 제품의 현지 소비가 늘어날 전망이다. 홈쇼핑 방송관계자에 따르면 홈쇼핑채널의 주요 구매층이 뉴질랜드 지방에 거주하는 중년층이며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담 없는 가격대의 소형 잡화의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유망품목으로는 아웃도어용 소형 제품, 가정용 소형 잡화 등이 있다.

□ 기계, 자동차 부품 및 소모품

2013년 12월 현재, 한국산 신차 판매 점유율이 10%를 넘어서고 있고, 산업용 기계 및 장비의 판매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부품이나 소모품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한국산 부품이나 장비의 품질이 유럽, 일본수준으로 향상되었고 중국산 제품의 신뢰도 하락으로 인한 바이어의 공급선 변경 움직임이 눈에 띄게 보이고 있다. 특히, 한국산 베어링이나 벨브류와 같은 소모성 부품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

□ 스마트폰 액세서리 제품

2013년 12월 현재, 스마트폰의 뉴질랜드 보급률이 전체 국민의 절반을 넘어섰는데 보수적인 뉴질랜드 시장을 감안했을 때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 또한, 스마트폰에 부착하는 다양한 종류의 액세서리나 케이스의 수요 역시 크게 늘어나고 있다. 최근 미팅을 가진 한 스마트폰 관련 제품 바이어는 사업초기 저가의 중국산 케이스 및 액세서리 제품을 수입했으나, 품질이나 디자인이 현격히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 수입선을 한국으로 변경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 농기계 및 농부자재

뉴질랜드 전체 수출에서 농업, 목축업, 임업, 수산업 등 1차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70%가 넘을 정도로 뉴질랜드의 1차 산업은 시장 규모가 크고 경쟁력이 높다. 따라서 농기계, 농부자재 등 관련 상품의 수요 커서 관련 상품을 수출하는 우리 중소기업에는 기회 시장이다. 계속되는 경제 위기 속에서 뉴질랜드 바이어와 농부들은 앞으로의 경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농기자재 확보를 희망하고 있고, 중국 상품에 실망한 바이어들이 우리 상품을 찾는 경향이 있는 것도 우리에게는 기회다. 특히 매년 6월 해밀턴에서 개최되는 남반구 최대규모의 종합 농업박람회인 ‘필데이스 박람회’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 건축기자재

오클랜드 중장기 발전계획인 Auckland Plan에 따르면 2013년 150만 명인 오클랜드 인구는 30년 후에는 270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새로 늘어날 120만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필요한 주택 건설 역시 활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지진피해를 입었던 뉴질랜드 남섬 크라이스트처치 지역의 지진복구가 활발하여 건축기자재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기도 하다. 뉴질랜드는 대부분의 건축기자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가격이 높은 선진국 제품 사용 비중이 높아 우리 상품이 진입하기에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뉴질랜드 건축기자재 시장의 폐쇄성을 고려하여, 협력 바이어와 긴밀한 관계를 구축한다면, 수출 시장에서 우리 건축기자재 제품이 큰 경쟁력을 얻을 수 있다.

□ 인터넷 어플리케이션 및 IT 기술

뉴질랜드에서는 2011년 8월부터 초고속 인터넷 망 구축이 본격화되었고, 2013년 2월부터 서비스가 실시된 4G LTE로 인해 사회 각 분야에서 인터넷을 활용하려는 시도가 매우 활발하다. 한 예로, 뉴질랜드의 대표적인 대형 슈퍼마켓인 Countdown이 2012년 11월 19일 모바일 가상스토어를 3개 주요 도시 도심에 설치했다. 이러한 흐름 아래, 우리 우리나라에서 상품성을 인정받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앱이나 기술은 뉴질랜드시장 진출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10. 시장특성

가. 소비자 특성

1) 소비자 성향 및 관습

2014년 3월 기준, 1인당 국민 소득은 약 4만 5,000달러로 우리나라보다 높은 편이지만 최고 33%에 이르는 높은 소득세율로 인해 가처분 소득이 낮고, 현지 공산품 물가가 높아 실질적인 구매력은 제한적이다. 검소하고 보수적이며 실용적인 소비의 특성을 보이고 있어 유행이나 고가품을 찾는 경향이 덜하고 적정 가격의 품질이 좋은 상품을 꼼꼼히 비교하며 구매한다. 중고가 상품을 구매해야 할 경우에는 크리스마스 또는 부활절과 같은 특수 세일 시즌을 최대한 활용하여 싸게 사려는 경향이 있다. 최근 들어 IT 기술의 발달과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해외 직구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쇼루밍과 같이 매장에서는 제품을 보고, 온라인에서 저렴하게 구매하는 새로운 소비행태가 등장하고 있다.

2) 소비자 구매 선호도

일반시민들은 중저가 실용적인 제품을 선호하고 첨단 신제품에 대한 실질적인 구매력은 낮다. 브랜드나 유행에 민감하지 않아 가격대비 합리적인 물건을 선호한다. 또한, 전자제품 구매에 있어 화려한 색감이나 무늬가 있는 제품보다는 무채색 계열의 무난하게 오래 두고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선호한다. 한편, 시장규모가 작고 개성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강해 전체적으로 소량 다품종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3) 4P (제품, 가격, 유통, 판촉)

□ 제품

해양 스포츠가 발달하여 보트에 대한 수요가 전세계적으로 높은 편이다. 또한, 캠핑이나 레포츠가 발달하여 아웃도어 제품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 가격

뉴질랜드 현지 생산 공장이 거의 없고 노동력이 부족하여 인건비가 비싸다. 그래서 현지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의 숫자 적을뿐더러 품질대비 가격이 비싸다. 이런 이유로 저가 공산품 대부분을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 등에서 수입해 판매하는 실정이다. 또한, 일부 고품질의 제품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수입되고 있다.

□ 유통

도로 사정이 좋지 않으며 인구가 오클랜드 및 소수 대도시에 집중되어 살고 있어 지역에 따라 가격 및 물건 종류의 편차가 심하다.

□ 판촉

우편으로 제품 카달로그나 광고지를 보내는 식의 고전적인 판촉활동이 가장 많으며, 버스 정류장이나 버스외관에 광고를 부착하는 방식도 많다. 최근 인터넷 보급이 활성화되고 스마트폰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온라인을 통한 광고가 늘고 있는 추세다. 뉴질랜드 인터넷 광고협회 조사에 의하면 2013년 2분기 온라인광고가 전년동기대비 31%나 증가했다.

나. 한국상품 인지도

한국 상품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편이며, 특히 IT, 자동차, 전자 및 기계 등을 중심으로 우리 제품의 우수성과 경쟁력이 인정받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휴대폰, LCD TV, 가전제품 등이 있으며, 도요타 리콜 사태 후 한국산 자동차의 인지도도 크게 높아졌다.

그러나 뉴질랜드 소비자들은 가격 위주의 실속 구매를 하는 경향이 강해, 한국상품에 대한 높은 인지도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중저가 제품과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시장진출이 용이한 편은 아니다.

다. 한류동향

한류에 대한 인식이 그다지 높지 않은 편이어서 그에 대한 구매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다만, 현지 아시아계 이민자를 중심으로 한류가 확산되는 추세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 상품에 대한 수요가 조금씩 늘고 있다.

라. 유통채널

□ 유통구조

과거의 전문 수입상→중간 도매상→소매상의 정형화된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나 최근 대규모 도/소매상들은 직접 수입한 후 자사가 보유한 대규모 직판장에서 직접 판매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회 주문 단가가 높은 품목(산업용 원자재 및 설비 등)은 수입 업체들이 수출 기업이 요구 하는 최소 주문량을 맞추지 못해 극소수 수입상들에 의해서 수입되어 공급되고 있다.

□ 판가결정 체계

영업 활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수많은 기업들이 새로 생겨나기도 하지만 수시로 폐업되며 광범위한 중저가 제품 시장과 고가의 유명 브랜드 제품 시장이 공존하고 있다.

대부분 공산품이 무관세나 저율관세로 수입되어 가격 경쟁이 치열하다. 뉴질랜드는 전통적으로 지리적인 근접성과 문화의 유사성으로 인해 호주로부터의 수입에 크게 의존해 왔으나 최근 미국 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중국 및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으로부터의 저가품 시장도 급속히 늘고 있다.

마. 유망상품

□ 고급 소비재

승용차, 휴대폰, 전자제품 등 브랜드가 중요한 고급상품시장에서, 최근 우리 상품의 인지도가 크게 향상돼 우리나라 상품의 전체 인지도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특히 승용차의 경우, 뉴질랜드에는 자동차 메이커가 없어 승용차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데, 일본 차에 대한 선호도가 높으며 특히, 일본산 중고차 수입이 많은 편이었다. 하지만 2012년 들어 뉴질랜드 교통청(NZTA, New Zealand Transport Agency)의 수입 중고차 배기가스 기준 강화로 신차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또한, 한국산 자동차의 인지도가 올라가면서 판매량이 증가해 2014년 현재 약 10%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휴대폰, 전자제품 등 고급 소비재의 구매에 있어서 한국 제품의 선호도가 높아지는 바, 이들 제품의 뉴질랜드 수출에 대한 한국 기업의 관심이 요구된다.

□ IT 관련제품

뉴질랜드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초고속 인터넷 광케이블 구축사업이 성과를 보이는 가운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IT 제품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초고속 광케이블 인터넷용 모뎀이나 공유기를 비롯한 통신장비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2013년 2월부터 시작된 4G LTE 인터넷서비스로 인해 4G 스마트폰의 판매도 늘어나고 있다.

11. 바이어 발굴

가. 협회, 매체, 전시회, 기타방법

□ 신문 및 잡지 광고

무역사절단 상담 주선 등의 경우, 텔레마케팅을 통해 바이어를 발굴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신문 및 잡지, 교민 신문 등을 통해 바이어를 찾기도 한다. 전국을 커버 하는 일간지로는 The New Zealand Herald(www.nzherald.co.nz)가 유일하며, 광고료는 일반 지면 10Cmx15Cm 크기의 광고료가 1,500뉴질랜드달러 수준이다. 교민 신문으로는 잡지를 포함하여 10종 정도가 있다.

□ 전시회 활용

전시회 참관은 제품에 대한 시장 수요 및 동향 그리고 바이어의 요구 사항을 직접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바이어를 발굴하는 매우 유용한 방법이다. 또한 전시회 개최 기관을 통해 참가업체를 확인하고 품목별 바이어를 발굴할 수도 있다

나. 각종 홈페이지

다음과 같은 경제 유관기관 및 단체 접촉을 통해 바이어를 발굴 할 수도 있다.

ID	Organization & Association	Website
1	New Zealand Trade and Enterprise	www.nzte.govt.nz
	국제 무역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는 정부 산하 기관.	
2	Investment New Zealand	www.investmentnz.govt.nz
	뉴질랜드에 투자하고자 하는 외국 기업 및 투자자들에게 유용한 정보 제공하는 기관.	
3	Employers & Manufacturers Association	www.ema.co.nz
	뉴질랜드의 모든 사업주(고용주)에 사업 활동 전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	
4	Waikato Chamber of Commerce	www.waikatochamber.co.nz
	와이카토 지역의 사업자에게 도움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	
5	New Zealand AgriTech	www.nzagribusinesscentre.co.nz
	낙농업 전반에 관련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	
6	FashionNZ	www.fashionz.co.nz
	뉴질랜드의 패션 산업의 이익을 부양하기 위한 단체.	
7	Fonterra	www.fonterra.co.nz
	뉴질랜드 최대 유제품 회사.	

ID	Organization & Association	Website
8	NZ Marine	www.nzmarine.com
	보트산업을 포함한 뉴질랜드 해양산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단체.	
9	Beef and Lamb NZ	www.beeflambnz.com
	뉴질랜드 전역의 소와 양고기 시장을 보호, 관련 기술 개발을 격려하는 단체.	
10	New Zealand Winegrowers	www.nzwine.com
	뉴질랜드 와인 시장의 이익을 도모하는 단체.	
11	Organic Products Exporters	www.organictradenz.com
	유기농으로 재배되는 농업 상품의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	
12	New Zealand Pine Manufacturers Association	www.pine.net.nz
	목재가공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들의 연합기관.	
13	Plastics New Zealand	www.plastics.org.nz
	플라스틱의 생산과 유통 전반에 관한 사업을 지원하는 기관.	
14	Seafood Industry Council	www.seafood.co.nz
	뉴질랜드 해양자원의 안전한 육성 및 활용을 지원하는 기관.	
15	Software New Zealand	www.nzsa.org.nz
	뉴질랜드 내에서 소프트웨어 산업을 하는 회사들의 연합기관.	
16	Textiles New Zealand	www.textilesnz.org.nz
	뉴질랜드 내에서 섬유사업을 하는 중소기업들의 회원제 기관.	
17	Turners and Growers & ENZA	www.turnersandgrowers.com
	뉴질랜드 국내외 원예제품의 생산과 유통 전반에 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단체.	
18	New Zealand Trade Centre	www.newzealandtradecentre.com
	뉴질랜드 국내외 기관에 뉴질랜드 전반의 수출/무역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	
19	Automotive Parts & Accessories Association	www.apaa.co.nz
	자동차 관련 산업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이익신장을 도모하기 위한 회원제 기관.	
20	Business NZ	www.businessnz.org.nz
	수출과 무역에 관해 방대한 자료를 제공하는 기관.	
21	New Zealand Food & Grocery Council	www.fgc.org.nz
	식음료를 포함한 뉴질랜드 식품 제조 및 유통업자를 대변하는 회원제 기관.	
22	New Zealand Ice Cream Manufacturers Association	www.nzicecream.org.nz
	뉴질랜드 아이스크림 산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회원제 기관.	
23	Packaging Council of NZ	www.packaging.org.nz
	뉴질랜드 내 포장산업에 관해 효율적인 사업 지침을 안내하는 회원제 기관.	
24	NZ Juice & Beverage Association	www.nzjba.org.nz
	생수를 포함한 뉴질랜드 식음료 생산, 유통, 소비 전반에 관한 지원을 담당하는 기관.	
25	NZ Bio	http://www.nzbio.org.nz
	바이오 경제의 기술 협력 및 지원을 도모하는 회원제 기관.	
26	Marine Industry Association	www.nzmarine.com
	오클랜드 국제 보트쇼 개최를 담당하는 단체.	

ID	Organization & Association	Website
27	Auckland Chamber of Commerce 오클랜드 내에서의 사업을 지원하는 단체	www.aucklandchamber.co.n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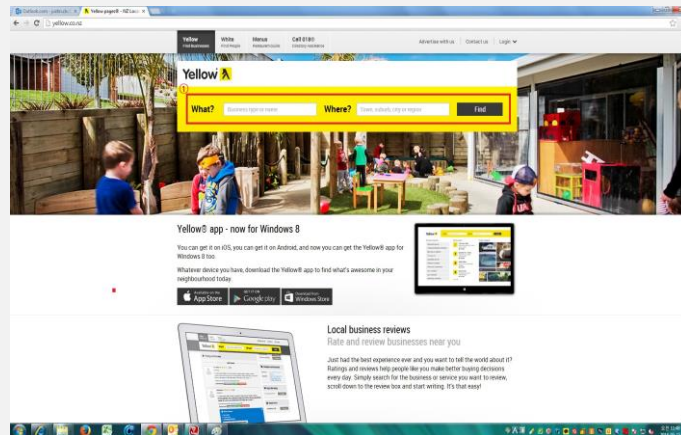
다. DB활용등 온/오프라인 바이어 발굴 방법 소개

□ 온라인 바이어 발굴

가장 일반적이고 유용한 바이어 발굴 방법은 구글 등 인터넷 검색 엔진을 활용하거나 인터넷 상에서 활용이 가능한 기업 디렉토리를 통해 1차 잠재 바이어를 찾은 후 이를 D/B화하고 직접 텔레마케팅을 구사하는 방법이다. 이들 사이트는 수시로 업데이트 되어 다양한 품목 및 분야의 최신 바이어를 발굴하기에 유용하다.

- Yellow page: <http://www.yellow.co.nz> (전화번호부)
- <http://www.finda.co.nz> (기업디렉토리)

Yellow Page(www.yellow.co.nz) 이용방법



- 1988년에 설립된 뉴질랜드를 기반으로 하는 전화번호 제공 서비스업체. 전화번호부 제작부터 기업검색사이트까지 다양한 서비스 제공.
- 언어 : 영어
- 특별한 메뉴구성은 없으며 첫 화면의 검색창을 통해 업체 검색가능

□ 기존 고객 대상 발굴

오클랜드 무역관 홈페이지(www.kotra.or.kr/auckland)상의 인콰이어리 정보를 활용하여 해외고객을 발굴할 수도 있다.

라. KOTRA 바이어 발굴 소개

국내업체가 필요로 하는 현지 바이어리스트 및 각종 시장동향 정보를 대신 수집하여 제공하는 유료정보조사 서비스로 관심바이어 발굴조사, 공급선 발굴조사, 시장동향(수요, 수출, 수입, 생산, 경쟁, 가격 등) 조사, 기타 조사 등이 있다.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12. 상관습 및 거래 시 유의사항

가. 상담 / 계약 체결시 유의 사항

거래선을 잘 바꾸려 하지 않는 보수적 성향의 바이어가 많아 기존 거래선이 있을 경우에는 거래 개시까지 상당한 인내심이 요구된다. Sample, 가격, 품질 보증 등 까다로운 사항들을 요구하기도 하나 원칙에서 어긋날 정도는 아니며 합리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많은 한국 업체들은 접촉 방법의 미숙으로 거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바이어 입장을 고려한 접촉 방법이 중요하다. 일례로 바이어에게 제품 검토를 요청한 경우 이메일이나 단순 레터보다는 영문으로 된 카탈로그 등이 포함된 세부 자료를 송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담 시 뉴질랜드가 소량 다품종 시장임을 감안하여 최소 주문량 및 바이어 요청 사항에 대해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 주어야 한다. 상담 이후 바이어의 문의 사항은 회신기한을 준수하여 답하며, 바이어와의 상담 시 약속했던 사항은 확실하게 이행하여 거래의 기본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Wood Packing 또는 Pallet을 사용할 때 수출 전 사용 목재에 대한 방역 검사가 필수 조건이므로 가격을 산정할 때 반드시 소요 비용을 감안해야 한다. 선편이 주 1회 있으므로 선적 일정 작성 시 고려해야 한다. 유럽과 거래 중인 업체는 기존 거래선을 변경하기를 꺼리는 경우도 많아 품질, 납기 등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시장 조사 시 소매 가격이 높은 것은 유통 기간이 길고 마진율이 높기 때문에 소매 가격을 기준으로 수출 가격을 책정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일반 제품의 소매 가격은 수입 가격의 대략 4배 수준임을 기억해두면 좋다.

나. 대금결제 방식

일반적인 수입 절차 및 관행이 서구사회와 비슷하며 대금 결제 방식은 비용절감을 위하여 L/C보다는 T/T를 선호한다. T/T결제는 소액 거래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심지어 수출 업체의 은행 계좌로 직접 송금하겠다는거나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겠다는 수입상도 있다.

샘플 주문, 테스트 오더 등의 경우 최근 KOTRA의 소액 온라인 결제 시스템인 KOPS (Kotra Online Payment System, kops.buykorea.org)을 이용하는 빈도가 늘고 있다.

다. 거래 시 유의 사항

뉴질랜드의 상거래 관행과 호주의 상거래 관행이 꼭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뉴질랜드 시장을 호주 시장과 묶어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뉴질랜드가 시장 규모는 작지만 별도의 시장으로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최근 들어 한국 업체들의 적극적인 마케팅 노력으로 현지 업체와 직거래하는 경우도 점증하는 추세다.

뉴질랜드 기업의 평균 종업원 수는 8~9명 수준이다. 대부분 기업은 가족 단위의 Family Business로 운영된다. 직원 별 담당업무가 정해지면 타 직원의 업무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메일 교신 등 업무 연락 시에 담당자가 출장 중이거나 휴가 중일 때에는 업무가 마비된다. 이 때 회신 지연 등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 느긋하게 기다리는 것이 좋다.

A/S나 클레임 해결 등 한국 업체들의 사후 관리는 현지에서 제기되는 주요 애로사항 중 하나이다. 이는 소량 주문에 따른 부수적인 영향으로 판단되나 신뢰도 저하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역으로 A/S나 클레임을 신속하게 해결하여 신뢰도가 높아지면 거래 물량 확대 등 부수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라. 기업문화

뉴질랜드 바이어의 경우 아침 일찍 근무를 시작하여 오후 3~4시경 끝내고 남은 오후 시간을 즐기려 하는 경향이 있고, 휴가기간이나 휴일을 방해 받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강하다.

대부분의 뉴질랜드 정부기관 및 사기업은 성탄절과 신정연휴를 전후로 2주에서 길게는 4주까지 휴업을 한다. 따라서 12월과 1월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기간에는 출장을 피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라면 현지 방문대상 업체와 미리 조율해두는 것이 좋다.

럭비가 국기이므로 럭비를 주제로 한 대화를 좋아하는 편이며, 럭비경기장 스카이박스에서의 접대문화가 보편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정부나 국영기업이 바이어일 경우 이들의 품위를 저해할 수 있는 로비나 압력은 행사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13. 주요 전시회 개최일정

가. 뉴질랜드 주요전시회 일정

□ 뉴질랜드 국제식품 박람회(Fine Food New Zealand 2014)

- 개최국가/도시: 뉴질랜드/오클랜드
- 개최주기: 격년
- 최초 개최년도: 2010
- 개최기간: 2014.06.22 ~ 2014.06.24
- 개최규모: 10,000 m²
- 전시장: ASB Showgrounds
- 참가국수: 30개국
- 개최국 참가업체수: 170
- 외국참가업체수: 50
- 개최국 참관객수: 5,000
- 전시분야: 식품, 음료, 유흥, 요식업
- 주최기관: North Port Event Ltd
- 전시품목: 식음료, 식자재, 주방기기, 건강식품, 주류
- 홈페이지: www.finefoodnz.co.nz
- 특징: 식음료 산업관련 B to B 전시회, 사전등록된 관련 종사자만 입장 가능

□ 오클랜드 식품전(The Food Show)

- 개최국가/도시: 뉴질랜드/오클랜드
- 개최주기: 매년
- 최초 개최년도: 1995년
- 개최기간: 2014.07.31 ~ 2014.08.03
- 개최규모: 5,000 m²
- 전시장: ASB Showgrounds
- 참가국수: 다수
- 개최국 참가업체수: 270
- 외국참가업체수: 다수
- 개최국 참관객수: 35,000
- 전시분야: 식품, 음료, 유흥, 요식업
- 주최기관: North Port Event Ltd
- 전시품목: 식음료, 식자재, 주방기기, 건강식품, 주류
- 홈페이지: www.foodshow.co.nz

□ 오클랜드 아기용품 전시회(Baby Show)

- 개최국가/도시: 뉴질랜드/오클랜드
- 개최주기: 매년
- 최초 개최년도: 1994년
- 개최기간: 2014.08.22~ 2014.08.24
- 개최규모: 6,000 m²
- 전시장: ASB Showgrounds
- 참가국수: 1
- 개최국 참가업체수: 180
- 외국참가업체수: 0
- 개최국 관람객수: 14,269
- 전시분야: 교육, 유학, 서적, 완구, 게임, 의류, 캐릭터, 게임
- 주최기관: North Port Events
- 전시품목: 아동 및 유아용품, 장난감, 학습용 교재, 이유식, 산후용품
- 홈페이지: www.parentandchildshow.co.nz

□ 오클랜드 식품 기술, 포장기술 전시회(Foodtech Packtech 2014)

- 개최국가/도시: 뉴질랜드/오클랜드
- 개최주기: 격년
- 최초 개최년도: 1980년
- 개최기간: 2014.09.23 ~ 2014.09.25
- 개최규모: 10,000 m²
- 전시장: ASB Showgrounds
- 참가국수: 6개국
- 개최국 참가업체수: 210
- 외국참가업체수: 5
- 개최국 관람객수: 6,000
- 전시분야: 기계류, 식음료 포장산업
- 주최기관: XPO Exhibitions Ltd
- 전시품목: 식품제조 및 포장기기, 기술
- 홈페이지: www.foodtechpacktech.co.nz

□ 오클랜드 홈 쇼(Auckland Home Show)

- 개최국가/도시: 뉴질랜드/오클랜드
- 개최주기: 매년
- 최초 개최년도: 1982년
- 개최기간: 2014.09.10 ~ 2014.09.14
- 개최규모: 12,593 m²
- 전시장: ASB Showgrounds
- 참가국수: 7
- 개최국 참가업체수: 630
- 외국참가업체수: 6
- 개최국 참관객수: 72,000
- 주요 참가국: 호주, 뉴질랜드, 영국, 미국, 태평양 국가
- 전시분야: 가구, 가정용품, 건축, 냉난방, 실내외 인테리어, 청소
- 주최기관: DMG World Media (NZ) Ltd
- 전시품목: 가전제품, 가구, 건축자재, 부엌 및 욕실제품, 에너지절약 제품
- 홈페이지: www.aucklandhomeshow.co.nz

□ 오클랜드 보트쇼(Auckland On Water Boat Show)

- 개최국가/도시: 뉴질랜드/오클랜드
- 개최주기: 매년
- 최초 개최년도: 1990년
- 개최기간: 2014.09.25 ~ 2014.09.28
- 개최규모: 27,000 m²
- 전시장: Viaduct, Auckland, New Zealand
- 참가국수: 4
- 개최국 참가업체수: 229
- 외국참가업체수: 9
- 개최국 참관객수: 20,053
- 전시분야: 보트, 해양산업관련
- 주최기관: North Port Events
- 전시품목: 레저용품, 조선, 보트 등
- 홈페이지: www.aucklandinternationalboatshow.com

□ 허치윌코 보트쇼(The Hutchwilco New Zealand Boat Show)

- 개최국가/도시: 뉴질랜드/오클랜드
- 개최주기: 매년
- 최초 개최년도: 1953년
- 개최기간: 2015.05.14 ~ 2015.05.17
- 개최규모: 10,000 m²
- 전시장: ASB Showgrounds
- 참가국수: 1
- 개최국 참가업체수: 200
- 외국참가업체수: 0
- 개최국 참관객수: 36,000
- 전시분야: 보트, 해양산업관련
- 주최기관: Premiere Exhibitions Ltd
- 전시품목: 기계류, 레저용품, 조선, 보트 등
- 홈페이지: www.boatshow.co.nz

□ 뉴질랜드 농업 박람회(Fieldays 2015)

- 개최국가/도시: 뉴질랜드/해밀턴
- 개최주기: 매년
- 최초 개최년도: 1968년
- 개최기간: 2014.06.15 ~ 2014.06.18
- 전시장: Mystery Creek Event Centre
- 참가국수: 40여개국
- 개최국 참가업체수: 1000
- 외국참가업체수: 다수
- 개최국 참관객수: 130,000
- 전시분야: 농축산관련 제품 포함 기계, 자동차 등
- 주최기관: Mystery Creek Event Centre
- 전시품목: 예초기, 관개시설, 농기계, 파종기, 물탱크, 자동차, 건설중장비 등
- 홈페이지: www.fieldays.co.nz

□ 오클랜드 전자 기계 박람회(EMEX 2016)

- 개최국가/도시: 뉴질랜드/오클랜드
- 개최주기: 격년
- 최초 개최년도: 1970년
- 개최기간: 2016.05.31 ~ 2016.06.02
- 개최규모: 5,800 m²
- 전시장: ASB Showgrounds
- 참가국수: 6
- 개최국 참가업체수: 218
- 외국참가업체수: 16
- 개최국 참관객수: 5,000
- 전시분야: 건설기계, 제철제어기기, 기계류, 자동차, 전자, 컴퓨터 등
- 주최기관: XPO Exhibitions Ltd
- 전시품목: 기계 및 장비류,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 홈페이지: www.emex.co.nz

나. 한국관 전시참여 내역

□ 오클랜드 식품전(The Food Show)

- 일시: 2013.08.01 ~ 2012.08.04
- 전시관명: 한국 농식품 홍보관
- 주관 및 후원: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참가업체: 재뉴음식업협회, 오투기 뉴질랜드 외 식품관련 업체 8개사
- 전시품목: 김치, 두부, 인삼 및 홍삼 제품, 한국 전통차 및 불고기 양념, 한국 전통주, 한국 포도 및 한국 만두, 알로에 주스 및 김 등
- 2014년 오클랜드 식품전에도 한국 농식품 홍보관으로 참가 준비 중.

□ 오클랜드 보트쇼(Auckland On Water Boat Show)

- 일시: 2013.09.26 ~ 2012.09.29
- 전시관명: 한국관
- 주관 및 후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호남선도산업평가원
- 참가업체: (주)에스컴텍, 금강산전(주) 외 호남 소재 레저 선박기업 8개사
- 전시품목: 소형보트, 해양 네비게이션, 해양 블랙박스, 자동 항법 장치 등

다. KOTRA주최 전시일정

2014년 6월 기준으로 아직까지 뉴질랜드에서는 KOTRA주최 전시회 계획이 없다.

14. 수출 성공실패사례

가. 한국기업 수출 성공사례

□ 남선지티엘 (주)

2006년에 오클랜드무역관 지사화업체에 가입한 남선지티엘(주)은 한국산 포도를 뉴질랜드에 수출하기를 희망하였으나 뉴질랜드 검역당국의 수입기준 (IHS: Import Health Standard) 미비로 수출이 불가능하였다. 뉴질랜드는 까다로운 검역 기준을 적용하는 국가로 수입기준(IHS)이 없는 신선농산물은 유입 자체를 불허하며, IHS 신청은 기업이 아닌 양국의 관계당국이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많은 시일과 자원이 소요되는 상황이었다.

2007년부터 오클랜드무역관은 한국산 포도에 대한 수입기준(IHS) 마련을 위해 한국 및 뉴질랜드 현지 당국과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수입기준 마련을 촉구하였고, 2011년 12월 첫 IHS가 발효되어, 2012년부터 한국 포도가 뉴질랜드에 유입될 수 있게 되었다. 오클랜드 무역관은 한국산 포도의 첫 수출을 위해 오클랜드 식품전에 한국 농식품 홍보관을 설치할 것을 주 뉴질랜드 대사관 오클랜드분관에 건의하였으며, 2012년 8월 2일부터 5일까지 개최된 홍보관에서 한국산 포도를 비롯한 한국식품이 홍보되었다.

2012년 8월 마지막 주에 한국산 포도의 뉴질랜드 첫 정식 수출이 성사되어 40피트 컨테이너, 6만 달러 가량 선적 완료되었으며, 2014년에도 지속적인 성약이 이어지고 있다.

□ 현우정밀

경북에 위치한 현우정밀은 자동차 및 농기계용 정밀부품을 생산하는 회사로, 2011년 11월에 경북 대양주 무역사절단을 통하여 뉴질랜드 시장 진입을 시도했다. 당시 무역사절단 상담주선 건으로 현지 바이어를 물색하였으나 매칭 바이어 숫자가 2-3개에 불과한데다 그나마 A사는 무역관과 원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상담장까지 오기를 꺼려했다. 또한 현지에 정밀부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있어 해외 수입보다는 접근성이 좋은 현지 기업에서 조달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상담에 응한 A사는 제품에 관심을 보이는 수준이었으나 이후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현우정밀은 2011년의 부진한 성과에 실망하지 않고 2012년 3월 경북 농축산 특화 무역사절단을 통해 4개월만에 다시 뉴질랜드를 방문하여 A사와 만남을 가졌으며 이 방문을 통해 A사는 현우정밀 제품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인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두 대표간의 관계가 돈독해졌다.

한편 무역관은 A사의 벤더이자 현우정밀과 경쟁관계에 있는 P사와의 만남을 어렵게 주선하였으며 P사를 방문한 현우정밀은 현재는 경쟁관계이지만 앞으로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하였고 P사는 그 동안 생각해보지 않았던 한국 업체와의 협력에 새로운 관심을 가지는 수준에서 상담이 마무리 되었다. 처음에는 열리지 않을 것 같은 P사가 현우정밀의 제품에 관심을 갖는 수준까지 발전을 하게 된 것이다.

2013년 3월, 현우정밀은 3번째 뉴질랜드 방문하였으나 별 성과가 없는 상황이었어서 주재국 특성상 어려운 시장임을 실감하였다. 그러나 2013년 4월, P사에서 무역관으로 연락이 와 현우정밀과 비즈니스에 대해 얘기를 하고 싶으니 도와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다. P사는 호주에서 대규모 오더를 수주 받았는데 자체 능력으로 소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현우정밀과의 협력을 생각하고 무역관으로 연락을 했던 것이다. 이 소식을 바로 현우정밀에 전달하고 P사, 현우정밀, 오클랜드 무역관간 3자 구도로 P사에서 요청하는 신규제품 개발을 진행하여 수출오더를 따냈다.

2013년 6월 2만 8,000달러를 시작으로 2013년 한해 총 14만 달러 이상을 수출하는데 성공하였다. 현우정밀은 2013년뿐 아니라 2014년에도 지속적으로 수출을 예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양사간의 상호 협력관계가 유지 될 전망이다. P사와 비즈니스를 하면서 보여준 현우정밀의 성실한 태도에 P사는 매우 만족하고 있으며, 현우정밀은 중간에서 노력을 아끼지 않은 무역관에 수차례 감사를 표했다. 현우정밀은 2014년 3월에도 무역사절단으로 뉴질랜드에 방문하여 P사와의 만남을 통해 끈끈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나. 한국기업 수출 실패사례

□ 태양광 관련기업 A사

오클랜드무역관은 일조량이 풍부한 뉴질랜드에 태양광과 관련된 우리 기업의 진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2009년 말 A사에게 뉴질랜드로 진출할 것을 권유하였다. 때마침 ‘바이코리아’에 참석차 방한해 A사와 상담했던 뉴질랜드 B사가 A사의 프로다운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아, 태양광 발전 사업 분야에 A사와 협조하고 싶다는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태양광 발전분야를 신사업으로 검토 중인 B사에게서 신속한 성약을 끌어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뉴질랜드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충분하나 생산된 전기에 대한 단가 보전정책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나마 2009년부터 정부가 보조금 지급제도를 만든 태양열 온수기 방면으로 태양에너지 시장이 집중되어 있어, 관련업체인 C사와 접촉을 시도하였다.

C사는 A사와 수많은 이메일을 주고받은 후 주택 1개의 태양광 발전용 프로젝트 샘플을 조금의 망설임 없이 주문하였다. C사의 담당자도 태양광 발전용 모듈 쪽의 신뢰할만한 공급업자를 찾고 있었던 지라, A사와의 교신에서 신뢰를 얻자 바로 제품을 직접 설치하는 쪽으로 확신이 선 것이다.

C사는 이후 소규모 Solar Farm 프로젝트 입찰 기회가 생길 때마다 A사에 정보를 전달하고 해당 프로젝트에 입찰함으로써 A사와의 사업적 협력 관계를 돈독히 하여 왔다. 지금까지 입찰에 성공한 사례는 없었으나 조만간 뉴질랜드에 태양광발전 관련 정부 지원제도가 생길 때를 대비해서 양사는 꾸준한 협력채널을 구축하여 오고 있다.

초기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던 B사는 단기적 성과는 없었다. 뉴질랜드 태양광발전모듈 시장이 아직까지 기대와 달리 미성숙하여 빠른 성과는 거두지 못하였기 때문인데. 하지만 A사는 지사화 사업 1년을 통해 뉴질랜드의 든든한 파트너 두 개사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아직 시장이 미성숙한 상황이니,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 관계를 쌓아가다 보면 머지않아 좋은 소식이 전해질 것으로 보인다.

15. 수출 시 애로사항

가. 주요 애로사항

□ 다품종 소량 주문

뉴질랜드는 200여 인종이 분포하는 다민족 국가이나 인구가 450만 명에 불과하고 시장의 규모도 협소하다 보니 미국이나 유럽과 비교할 때 다품종 소량으로 주문하는 경우가 많다. 뉴질랜드 대형 유통업체 역시 해외 공급 업체들의 최소 주문량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종종 있어, 한국 업체 관계자들을 당황하게 하기도 한다.

□ 한-뉴 두 국가의 이해 부족으로 인한 불신

뉴질랜드 현지인 대부분은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 한국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도가 많이 떨어지는 편이다. 그런 관계로 접촉 초기에 한국 제품의 품질을 불신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한국업체 또한 뉴질랜드의 시장규모나 바이어의 주문량이 적다고 무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렇게 한국업체와 뉴질랜드 바이어간에 서로 무시하는 마음으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 뉴질랜드에 대한 오해

뉴질랜드가 지리적으로 아시아에 속해있기는 하나, 엄연히 유럽성향의 영어권 국가이다. 하지만, 한국업체 중 일부는 이점을 간과하고 아시아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한류가 없어 삼성, 현대 외에는 한국에 대한 인식조차 없는 뉴질랜드 바이어에게 지나치게 한국적인 제품을 소개할 경우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 정확한 납기 일자

뉴질랜드는 중소기업이 대부분으로 그만큼 자금이나 재고관리 규모가 작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에서 제품 납기는 상당히 중요하다. 종종 한국업체들이 예상 기일보다 빨리 생산해서 선적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이어의 경우 적절한 재고관리 및 자금의 흐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뉴질랜드 바이어는 빠른 선적보다는 기일을 맞추는 정확한 선적을 요구한다.

IV. 투자

1. 투자환경

가. 일반환경

□ 지리적 이점

다른 나라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뉴질랜드의 지리적 고립성은 결국 타 농목축국에서 자연 발생하는 각종 해충과 동물질병 등이 전염되지 못하게함으로써 안전성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작용을 한다. 또한 온화한 기후와 낮은 인구 밀도 등의 환경적 이점으로 농업 및 목축업, 어업의 진출이 유리하다.

□ 투자매력도

자국 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약하고 경제 및 정치활동 전반에 관한 부패도가 낮은 편이다. 2013년 12월 미국 경제 격주간지 포브스가 발표한 '기업하기 좋은 나라(The Best Countries For Business)' 순위에서 2012년 1위에서 한단계 하락한 2위를 기록하였으나 여전히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뉴질랜드는 경제활동의 자유가 매우 폭넓게 보장되는 국가로 국익보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임야, 수산 어획 및 농업용 토지에 대한 일부 투자제한을 하는 이외에는 규제가 없어 투자 매력도는 세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 사업여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 뉴질랜드는 2013년 전체 조사대상 59개 국 가운데 25위를 차지, 2012년 24위에 비해 1단계 하락했다.

뉴질랜드의 정부효율은 10위로 좋은 성적을 받았으나 기업효율에서는 27위를 기록, 기업효율이 정부효율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간소한 세금체계와 함께 창업 및 기업운영에 있어 장애요인이 거의 없으며 창업 소요기간, 행정 절차, 기업등록 비용, 고용과 해고, 투자자 보호에서 월등한 이점을 제공하고 있는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 정부의 투자정책 및 외국인우대 정책

뉴질랜드는 자국 내 투자에 있어 내외국인의 차별을 두지 않는 개방적인 정책으로 외국인 투자를 장려한다.

다만, 외국인 투자를 일반부문과 민감부문에 구분, 관리 중이며, 민감부문은 해안 인접토지와 호수, 도서, 농업용 토지 및 수산 어획 등이다. 일반 부문의 경우 1억 뉴질랜드달러 이하 규모의 토지에 대한 투자도 별도의 허가 없이 가능하며, 민감부문에 대해서만 최소한의 허가 및 감독을 하고 있다.

□ 정부의 외자기업에 대한 열의 및 지원

최근에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뉴질랜드 정부 및 국민의 인식이 매우 좋아 일자리가 창출되는 제조업 등에 대한 투자의 경우는 크게 환영 받고 있다. 경기침체 타개와 주종 산업인 임업 및 관광부문 개발촉진을 위하여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있고, 도로, 항만, 교통통신 등 사회 기간시설이 비교적 발달해 있는 것도 장점이다.

□ 세관, 세무, 노동관청의 행정투명도

자유 민주국가로 정치가 매우 안정되어 있고 공무원들의 청렴도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날 정도로 부패가 없는 것 역시 큰 장점이며, 사회제도가 영국의 영향을 받아 선진화되어 있는 것도 투자처로서의 매력을 더해 준다.

□ 국가투자위협도

2014년 6월 현재 3대 국제신용평가기관인 Standard & Poor's, Moody's, Fitch 는 뉴질랜드의 국가신용등급을 안정적(Stable)이라고 평가하면서 각 AA, Aaa, AA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Moody's는 2013년 10월 언론보도를 통해 뉴질랜드의 신용등급을 강등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며 크라이스트처치 지진이나 오염 유제품파동과 같은 위기가 발생했을 때 뉴질랜드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 의존도가 난관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나. 투자 유치 기관

뉴질랜드에 대한 투자업무는 인베스트먼트 뉴질랜드(www.investmentnz.govt.nz)가 담당하고 있다. 동 기관은 뉴질랜드 무역산업진흥청(NZTE)의 산하기관으로 KOTRA와 비슷한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다.

뉴질랜드 영주권 소지자 이외의 사람이 1억 뉴질랜드달러 이상을 투자해 사업을 설립하거나 뉴질랜드 회사의 25%이상의 주식을 매매하려 할 경우 그리고 5헥타르 이상의 부동산(땅, 섬, 해안이나 공원)을 구입하는 경우는 토지정보국 산하의 해외투자실(OIO; Overseas Investment Office)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서면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신청서류는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과 해외투자실 또는 중앙은행에서 입수가 가능하다. 신청서류에 기재하는 내용은 주로 신청회사의 경력, 사업계획 및 사업구조, 재정상태 및 자금조달 계획, 뉴질랜드에 대한 기여도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고용 창출, 수지 균형, 미개발 자원 개발, 특정 지역의 개발 및 환경 개선 등이 투자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포인트로 알려지고 있다. 승인기간은 약 2~3주 소요되며 재무부(The New Zealand Treasury)가 실시하는 투자허가에 대한 공고를 통해 승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 투자 장려 분야

2014년 뉴질랜드 무역산업진흥청은 청정기술, 식음료 산업, 펀드투자, 고부가가치 제조업, 정보통신 기술, 인프라 건설산업, 생활과학, 천연자원 개발, 원자재 가공 산업 등이 투자 유력 분야로 지목했다.

라. 제한 분야 및 금지 분야

특별한 유의 사항은 없으나 자국의 1차 산업의 보호를 위해 외부에서 반입되는 동식물(치어, 묘목, 발아가능 종자, 육류 등)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관리 및 규제하고 있으며, 자원관리법 등으로 환경에 대한 규제가 심하고 자원개발에 대한 제한이 많다.

이 때문에 외국인의 뉴질랜드 투자에 대해서는 Overseas Investment Act 2005에 의거, 해외 투자실 (OIO: Overseas Investment Office)의 허가 및 감독을 받아야 하며, OIO는 1억 뉴질랜드달러 이상의 일반 사업과 자국보호 산업인 어업 관련 외국인 투자를 허가 및 감독하고 있다.

마. 투자 유치 정책 및 전망

뉴질랜드 정부의 개방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국가 청렴도가 높고 사회 간접 자본이 잘 되어 있는 나라로 기업들의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으로서는 현재 진출해 있는 (주) 오투기 공장과 같이 목축업 및 농업을 기반으로 한 산업의 진출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2. 투자인센티브 제도

가. 개요

뉴질랜드는 1980년대 중반 이후, 경제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광범위한 경쟁관련 법규를 개혁해왔다. 그 결과로 2013년 현재, 상품 서비스 시장에서 뉴질랜드 사업자의 독점을 보장 또는 지원해 주는 법이나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일부 민감한 부문(일부 토지 및 환경 관련 등)을 제외하고는 다방면에 걸쳐 외국기업에 대한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며,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철저하게 내국인대우 원칙을 지키고 있다. 다만, 영화제작산업에 한해서는 내외국인 상관없이 투자자에게 보조금 지급 또는 규제완화 등의 조치를 통한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제공해주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 조세감면 / 보조금

2014년 4월부터 영화제작투자시 제공하던 보조금을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보조금제도인 ‘New Zealand Screen Production Grant(NZSPG)’가 시작되었다. 기존의 ‘The Large Budget Screen Production Grant The Post(LBSPG)’와 ‘Screen Production Incentive Fund(SPIF)’이 하나로 통합되었으며 뉴질랜드에서 제작되는 영화나 텔레비전 제작비용이 1,500만 뉴질랜드달러 이상이면 기존의 인센티브금액 (LBSPG-15%, SPIF-최대 40%)을 외국영화제작의 경우 20%(별도 기준 충족시 5% 추가), 국내영화 및 방송제작의 경우 40%까지로 변경됐다.

또한, 특수효과 및 후반작업시 제공되던 보조금 제도인 ‘Post, Digital and Visual Effects Grant(PDV Grant)’ 역시 변경되었으며 100만 뉴질랜드이상의 제작비용시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금액이 기존 15%에서 20%(별도 기준 충족시 5% 추가)로 인상되었다.

□ 법령개정

지난 2010년 10월 ‘반지의 제왕’ 후속작인 ‘호빗’이 영화 연기자들의 파업으로 뉴질랜드에서 촬영되는 것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뉴질랜드 정부는 관련 법을 개정했다. 이른바 ‘호빗 법(Hobbit Law)’이다. 호빗 법은 영화 산업 종사자들을 피고용인이 아닌 개인 사업자로 분류하기 위해 도입했다. 영화 산업 종사자가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면 파업 등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뉴질랜드 정부는 다국적 영화 제작사들이 영화 제작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노조 파업 등의 위험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자국을 최적의 영화 촬영지로 만들겠다는 전략에서 이 법을 만들었다.

나. 인센티브 지급기준

국내 제작사 보조금 지급 기준

형식	최소 제작비용
장편극영화	NZ\$ 2.5 million
단편 프로그램 (비다큐)	NZ\$ 1 million and 방송시간당 NZ\$ 800,000 이상
단편 다큐멘터리	NZ\$250,000
장편 시리즈 (비다큐)	NZ\$ 1 million and 방송시간당 NZ\$ 500,000 이상
장편 시리즈 다큐멘터리	방송시간당 NZ\$ 250,000 이상
단편 애니메이션	NZ\$ 250,000 and 방송시간당 NZ\$ 400,000 이상

자료: 뉴질랜드 영화 위원회(The New Zealand Film Commission)

해외 제작사 보조금 지급 기준

형식	최소 제작비용
장편극영화	NZ\$ 15 million
TV 프로그램 및 기타	NZ\$ 4 million
후반작업 및 특수효과	NZ\$ 1 million

주: 별도기준 충족 시 5% 추가 보조금

자료: 뉴질랜드 영화 위원회(The New Zealand Film Commission)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거나 지원 양식을 얻으려면 www.nzfilm.co.nz/international-productions/incentives_을 참고하거나 nzspg@nzfilm.co.nz 으로 문의하면 된다.

3. 외국인 투자동향

가. 외국인 투자 통계

뉴질랜드 통계청이 밝힌 외국인의 뉴질랜드 투자 누적액은 2013년 회계연도(3월말) 기준 3,155억 뉴질랜드달러로 1년 전의 3,066억 뉴질랜드달러보다 3.3% 증가했다. 외국인의 직접투자 누적총액은 1,014억 뉴질랜드달러, 포트폴리오투자 누적총액은 1,181억 뉴질랜드달러, 무역신용, 대출 등 기타 투자 누적총액은 792억 뉴질랜드달러, 파생상품 투자액은 169억 뉴질랜드달러로 집계됐다.

외국인의 對뉴 투자액(누적치)

(단위: NZ\$ 백만)

구분		2012	2013
직접 투자	Equity Capital	50,678	56,584
	Other Capital	48,169	47,801
포트폴리오 투자	Equity Securities	12,405	16,393
	Debt Securities	92,816	101,728
기타 투자	Trade Credits	2,153	2,972
	Loans	57,933	51,697
	Deposits	21,455	21,929
	Other Instruments	2,482	2,590
금융파생투자	Financial Derivatives	18,497	16,810
총계		306,587	315,503

주: 매년 3월말 회계연도 기준

자료: 뉴질랜드 통계청(2013년 9월 발표, 2014년 6월 기준 최신 통계)

통계청의 기업 대상 설문 결과로 집계된 업종별 외국인 투자 자산 가액 현황에 따르면, 금융 보험 분야의 투자 자산가액이 370억 뉴질랜드달러로 금융투자 형태의 자금 유입이 가장 일반적임을 알 수 있다. 제조업에 대한 투자 자산가액은 140억 뉴질랜드달러를 기록 중이다.

업종별 외국인 투자 자산가액 현황

(단위: NZ\$ 백만)

업종	2010	2011	2012	2013
농림수산업	4,763	3,736	4,484	4,794
광업	3,467	3,533	3,018	3,121
제조업	14,285	14,508	14,244	14,385
전력/가스/수도/폐기물처리	2,894	3,580	3,594	3,833
건설업	764	761	767	479
도매업	5,377	4,578	3,828	3,467
소매업	4,459	4,867	5,001	5,199
숙박/요식	896	911	710	595
교통/우편/창고	596	425	612	205
정보/통신	3,989	3,703	4,095	2,282
금융/보험	32,636	32,871	36,358	39,333
부동산 및 임대업	3,116	3,506	4,713	5,067
전문과학/기술업	3,397	3,187	3,592	3,842
사무 및 행정서비스	280	229	C	229
공공업무/보안	C	C	C	C
교육훈련	0	C	C	C
보건	1,150	846	1,491	1,228
예술/휴양서비스	C	C	C	C
기타서비스	C	C	C	C
산업구분없음	10,242	10,842	11,644	12,774
총 외국인투자액	93,306	92,579	98,847	101,385

주: C는 기밀, 매년 3월 말 기준

자료: 뉴질랜드 통계청(2013년 9월 발표, 2014년 6월 기준 최신 통계)

나. 지역별 투자동향

외국인 투자의 지역별 분포는 북섬과 남섬에 골고루 분산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뉴질랜드 최대 도시이자 상공업 중심지인 오클랜드 지역에 대한 투자가 가장 많고, 다음이 북섬의 동북부 지역인 베이 오브 플렌티로 알려져 있다. 남섬에서는 북단에 위치 한 넬슨과 크라이스트 처치를 포함하는 캔터베리 지역이 유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 각국별 투자동향

2013년 3월말 기준 국가별 누적 투자금액을 보면 호주가 투자한 금액은 1,101억 뉴질랜드달러로서 34.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영국과 미국이 각각 529억, 388억 뉴질랜드달러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이 세 국가의 비중이 전체 투자금액의 64.0%를 차지하고 있어 영미권 국가에 편중되어 있다. 아시아권에서는 일본(78억 뉴질랜드달러), 싱가포르(78억 뉴질랜드달러), 홍콩(40억 뉴질랜드달러)이 주요 투자국이다. 한국의 경우 2013년 누적 약 3억 뉴질랜드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집계, 활발한 무역에 비해 투자교류는 매우 저조하다.

주요국가의 뉴질랜드 외국인 투자 현황(누계)

(단위: NZ\$ 백만)

국가명	2010	2011	2012	2013
호주	109,723	113,801	112,160	110,080
영국	49,300	49,717	50,301	52,940
미국	51,122	46,871	45,519	38,845
싱가포르	3,113	4,312	5,952	7,845
일본	6,529	7,273	7,174	7,784
홍콩	4,047	3,754	3,433	3,959
네덜란드	3,797	3,520	4,160	3,582
대만	2,519	2,559	2,503	2,488
중국	1,906	1,914	2,029	2,380
독일	1,572	1,268	2,560	1,183
한국	125	130	187	267
전체	288,982	300,431	306,587	315,503

주1: 해당 연도 3월말 기준

주2: 전체 금액은 해당연도 총 투자금액을 합산한 것임

자료: 뉴질랜드 통계청 (2013년 9월 발표, 2014년 6월 기준 최신 통계)

라. 주요 외국 투자 기업 소개(2007년~2014년)

- 2007년
 - 미국계 Pepsi가 2억5,000만 뉴질랜드달러에 Bluebird Foods 인수(오클랜드).
 - 미국-호주기업 연합인 Sirius Finance가 1억7,000만 뉴질랜드달러에 Blue Star Print Group 인수(오클랜드).
 - 영국 Antipodean사가 1억 뉴질랜드달러에 쇼핑센터 매입(오클랜드).
 - 호주 Alico HIT사가 2억 2,000만 뉴질랜드달러에 Strategic Investment Group 인수(오클랜드).

- 2008년
 - 홍콩 Cheng Kong Infrastructure Holdings Limited사의 Vector Wellington Electricity Network지분 100% 인수, 인수금액 7억 8,000만 뉴질랜드달러.
 - 호주 Origin Energy의 Contact Energy 지분 일부 인수, 인수금액 52억 뉴질랜드달러.
- 2009년
 - Retirement Villages NZ (호주지분 뉴질랜드회사)의 오클랜드, 타우랑아 지역의 민간토지에 대한 지분 매입, 매입금액 13억 뉴질랜드달러.
 - 일본 Suntory 사의 뉴질랜드 Dandone Holdings NZ 지분 획득, 호주/뉴질랜드 지역의 음료 시장 진출을 노림, 인수 금액은 기밀.
- 2011년
 - 상하이 Pengxin Group社 뉴질랜드 초대형 목장(Crafar Farm)을 매입, 매입금액 2억 뉴질랜드달러.
 - 일본 주류회사 Asahi Groups Holdings는 뉴질랜드가 16%의 지분을 소유한 Flavoured Beverages Groups holdings를 15억3,000만 뉴질랜드달러에 인수하여 Asahi Beverages New Zealand를 창립하였고, 이를 토대로 뉴질랜드 오가닉 음료 회사인 Charlie's Group 또한 12억9,000만 뉴질랜드달러에 인수.
- 2012년
 - 중국 Haier社 뉴질랜드 유일의 백색 가전기업 Fisher & Paykel Appliances社 인수, 매입금액 6억9,000만 뉴질랜드달러
- 2013년
 - 미국 Golden State Foods社 뉴질랜드 식품 업체 Groenz Group 인수, 인수 금액 미발표
 - 미국 생명공학기업 Proliant社 뉴질랜드 Feilding지역에 2,400만 뉴질랜드달러 규모의 동물 의약품 공장 신설 결정
 - 상하이 Pengxin Group社 뉴질랜드 낙농업 목장(Synlait Farms)을 매입, 매입금액 8,570만 뉴질랜드달러
- 2014년
 - 미국 Discovery Communications and Liberty社 뉴질랜드 드라마제작사 South Pacific Picture 인수, 인수 금액 10억 8,000만 뉴질랜드달러

4. 한국기업 투자동향

가. 일반 현황 및 특징

우리나라의 뉴질랜드 투자는 80년대 이전의 기록을 갖고 있지만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초부터다. 2014년 3월 기준, 우리의 투자는 신고기준 543건에 4억 9,445만 달러이며 실제 투자는 3억 2,331만 달러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투자의 대부분은 엄밀한 의미에서 일반 기업의 해외투자라기보다는 이민 진출의 확대에 따른 이민형, 생활형 투자의 특징을 보인다. 따라서 건당 신고금액이 평균 91만 달러에 불과한 소규모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민투자는 2000년 초 뉴질랜드 정부가 이민 문호를 개방, 현지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일종의 의향서만 제시하면 영주권을 부여하는 장기 사업 비자 정책을 채택하면서 크게 증가했다. 이민형 투자는 도소매업, 숙박업, 요식업, 서비스업 등의 부문에 주로 집중되어 있다.

나. 우리 나라 기업 투자 통계현황

연도별 뉴질랜드 투자 현황

(단위: US\$ 천)

연도	신고건수	신고금액	투자금액
1980 ~ 99	55	96,708	18,922
2000	29	5,306	4,346
2001	73	14,780	7,893
2002	66	28,467	14,024
2003	48	33,456	33,853
2004	29	24,268	16,691
2005	32	24,169	24,973
2006	28	21,544	4,221
2007	34	38,213	32,202
2008	27	15,801	12,086
2009	13	13,480	12,462
2010	20	16,739	12,427
2011	22	48,835	11,854
2012	16	23,255	11,239
2013	28	16,945	41,547
2014 (3월)	6	63,807	41,547
Total	543	494,448	323,311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14년 6월 기준 최신통계)

다. 업종별 직접 투자 동향

뉴질랜드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의 직접투자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며, 임업, 식품 분야에의 투자가 두드러진다.

풍부한 산림자원을 이용하기 위해 조립사업에 투자한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일조량이 세계 어느 지역보다 많고 강수량 역시 풍부하여 나무가 비교적 빨리 자라는 환경을 활용하기 위한 투자로 평가된다. 또한 제조업에서는 오투기가 공장을 짓고 1997년부터 사업을 시작했다.

건설업에는 2005년 한국 중견 건설업체가 오클랜드 시내에 토지를 직접 구입, 단일동의 아파트를 건설하여 성공적으로 분양을 하였고, 2014년에도 새로운 아파트 건설을 준비 중이다. 또한, 한국의 동화기업이 2005년 8월에 뉴질랜드 남부 인버카길에 위치한 목재가공업체인 Patinna社의 지분 80%를 인수하여 지배권을 확립하였고 2013년 말경부터는 한국에서 직원을 파견하여 직접 경영에 나서고 있다.

2013년 9월 삼성전기가 특허 라이선싱 계약 및 공동 개발 추진을 위해 뉴질랜드 PowerbyProxi社에 400만 뉴질랜드달러를 투자하였다. PowerbyProxi社는 지난 2007년 뉴질랜드 오클랜드 대학에서 설립된 후 분사한 무선 전력 벤처기업으로 현재 무선충전 관련 원천기술 특허 120여개를 확보하고 있다. 삼성전기는 이번 투자로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대 적용되고 있는 무선 충전 시장을 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013년 11월 4일에는 한국의 KD미디어가 출자한 예스숍 홈쇼핑 채널이 공식 개국하였다. 위성방송과 지상파로 전국에 방송되는 예스숍 홈쇼핑은 한국 상품의 비율을 90% 정도로 구성해 뉴질랜드 시장을 개척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별 뉴질랜드 투자 현황

(단위: 건, US\$ 천)

분류	2011		2012		2013		2014 (3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22	48,835	16	23,255	28	16,975	6	6,380.7
농림어업	5	2,242	5	9,786	5	3,153	1	141
광업	1	44,248	-	-	-	-	1	6,264.1
제조업	3	103	1	89	9	8,702	-	-
건설업	-	-	-	-	2	260	-	-
도소매업	2	195	6	12,703	6	414	-	-
운수업	3	570	1	100	2	344	1	50
숙박 음식업	6	1,214	2	172	3	504	1	165
부동산업	-	-	-	-	-	-	2	810
금융 및 보험업	-	-	-	-	1	3,598	-	-
기타 및 서비스업	2	264	1	405	-	-	-	-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14년 6월 기준 최신통계)

라. 지역별 투자 동향

한편, 뉴질랜드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약 20개사에 이르며, 북섬에 삼성전자, LG전자, 오투기,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국민은행 등 12개사가 진출해 있고, 남섬 크라이스트처치와 티마루에 동남, 동원수산, 주암산업, GOM 등 4개 수산업체, 그 외 지역에 동화기업을 비롯한 일부 기업이 진출해 있다.

5. 한국기업 진출현황

가. 한국기업 진출현황

주요 한국기업 진출 현황

회사명	모기업	진출 시기	진출 형태	투자 형태	업종	제품명	직원수
DongNam Company Ltd, NZ Branch	(주)동남	1991	지점	단독	농림, 수산, 임업	수산업	8
Korean Air Regional Office, Auckland	(주)대한항공	1993	지점	단독	서비스업	항공운송	22
D.K. New Zealand Forestry Ltd	디케이코리아	1995	서비스 법인	단독	농림, 수산, 임업	원목	3
Ottogi New Zealand Ltd	(주)오뚜기	1996	생산법인	단독	농림, 수산, 임업	축육 가공품, 소스	20
Sanwon Ltd	(주)동원수산	1996	서비스 법인	합작	농림, 수산, 임업	수산물 저장	3
Kookmin Bank Auckland Branch	국민은행	1996	지점	단독	금융, 보험	금융	12
Hansol New Zealand Ltd	(주)한솔홈데코	1996	서비스 법인	단독	농림, 수산, 임업	원목	1
Juahn Industry Co. Ltd., Timaru Branch	(주)주암산업	2004	지점	합작	농림, 수산, 임업	수산업	1
Kia Motors New Zealand Ltd	기아자동차(주)	2004	판매법인	단독	제조업	자동차 및 부품	18
Donghwa New Zealand Ltd	동화기업	2005	생산법인	합자	제조업	목재가공	120
Samsung Electronics New Zealand Ltd	삼성전자	2006	법인	단독	도소매, 유통	전자제품	175
LG Electronics New Zealand Branch	LG전자	2007	지점	단독	제조업	전자제품	44

회사명	모기업	진출 시기	진출 형태	투자 형태	업종	제품명	직원수
GOM Co. Ltd.,	(주)지오엠	2009	연락 사무소	단독	농림, 수산, 임업	수산업	2
Hyundai Motor Company Pacific HQS Ltd	현대자동차	2009	연락 사무소	단독	제조업	자동차	2
Taihan New Zealand Ltd	대한전선(주)	2009	지점	단독	건설, 공사업	전선	11
Hyundai Rotem Company	현대로템	2010	연락 사무소	단독	제조업	철도차량	1
SCFNZ Ltd	선창산업	2012	생산법인	단독	농림, 수산, 임업	원목	2
Yes Network Ltd	KD미디어(주)	2013	판매법인	단독	도매 및 소매업	홈쇼핑	51
Plus Construction NZ Ltd	플러스건설	2013	생산법인	단독	건설, 공사업	건설	11
Hyundai Hysco Ltd	현대하이스코	2013	연락 사무소	단독	광업	석유채굴	1

자료: 오클랜드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2014년 6월 기준)

6. 투자진출 성공실패사례

가. 투자성공사례

□ 오푸기

(※)오푸기는 청정 지역과 축산업으로 이름난 뉴질랜드의 장점을 활용하여, 생산제품에 사용되는 식품 원자재를 가공할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뉴질랜드에 투자를 결정했다. 이 회사는 자본금 약 460만 달러로 1995년에 회사를 설립했고, 오클랜드 시내에서 30분거리인 Takanini 지역에 부지를 확보하여 1997년부터 공장 가동을 시작했다.

투자초기에는 자원동의 (Resource Consent)를 받는 과정에서 냄새, 소음 등으로 공장 인근 주민들을 이해시키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주민들과의 대화 및 전문 컨설팅 업체의 지원을 통해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여 투자를 정착시키는데 성공했다.

자동화된 설비를 이용하여 쇠고기 및 사골 등 엑기스 제품을 가공, 농축시켜 한국 및 해외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양질의 식품 원자재를 저가로 구입할 수 있고, 노사 분규가 거의 없기 때문에 당초 투자 목적인 원료의 원활한 공급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가동현지 교민 시장을 대상으로 한 본사 제품의 수입, 판매업무도 새롭게 시작하면서 사업범위를 넓혀 나가고 있으며, 2013년 1월부터는 소스류 생산라인을 신규로 가동시키고 있으며, 2014년 인접부지에 제2공장 증설을 계획하고 있다.

□ 플러스 건설

2011년 11월, 국내 중견 건설업체인 플러스 건설이 남태평양 섬나라인 통가의 주택건설사업 수주에 성공했다. 2009년 9월 통가에서 발생한 쓰나미 피해 복구 프로젝트의 하나인 이 사업은 총 공사비가 269만 US달러이며, 주택 70여채와 각종 기반시설을 건설하는 내용이다.

월드뱅크의 원조로 진행된 동 사업의 입찰에는 플러스건설 이외에도 뉴질랜드 최대 건설업체인 Fletcher의 통가 현지법인 등 남태평양 건설시장에서 활동 중인 8개의 주요 기업들이 참가했다.

동 사업 수주 과정에서 오클랜드무역관과 뉴질랜드 내 교포건설업체인 예일건축의 역할이 컸다. 오클랜드무역관은 통가 내 인맥구축을 통해 입찰정보를 입수해서 제공했고, 예일건축은 현지 건설 규범에 부합하는 기술적인 협력을 지원했다.

우리 기업의 진출이 거의 전무했던 남태평양 도서지역 건설 시장에 최초로 진출에 성공했다는 큰 의미가 있는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 Foley Family Wines

Foley Family Wines사는 1996년에 미국에서 설립된 와인제조/유통업체이고 매년 50만 case의 와인을 생산하고 있다. Foley Family Wines사는 프리미엄 와인 브랜드를 보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9년에 New Zealand Wine Fund사를 인수하였다.

New Zealand Wine Fund사는 Vavasour, Goldwater, Clifford Bay 등 다수의 뉴질랜드 프리미엄 와인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었고, 100헥타르의 포도농장에서 매년 28만 case의 와인을 생산하고 있었다.

Foley Family Wines사에 인수된 New Zealand Wine Fund사는 해외 수출을 위한 유통망을 확대하게 되었고, 국제 와인시장에서의 뉴질랜드산의 인지도를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다. 결과적으로 글로벌 대형 와인업체로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 사례는 해외 수출 유통망을 가진 외국 업체가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뉴질랜드 기업에 투자하여 해외로 수출하는 활로를 만들어주고 성공적인 브랜드 다각화를 이룬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 Sucrogen사

Sucrogen사는 호주 최대 규모의 설탕 정제생산업체이고 세계 8번째 규모의 설탕 제조업체이다. 동사는 2010년 2억1,400만 뉴질랜드달러를 투자하여 뉴질랜드 최대 설탕정제업체인 Chelsea사를 매입하는 데 성공했다.

Chelsea사는 1884년 뉴질랜드에서 설립된 회사로서 연간 20만 톤의 설탕을 생산하는 업체이고 뉴질랜드 소비자들로부터 가장 사랑 받는 설탕 브랜드였다.

Sucrogen사는 Chelsea사 매입에 성공하면서 세계 설탕생산업체 규모 순위를 8위까지 높였으며, Chelsea사 제품의 주요 수출국인 피지, 뉴칼레도니아 등 남태평양지역 설탕 시장과 일본 및 아시아지역 설탕 시장에서의 점유율 증가를 시도 중이다.

Sucrogen사의 투자는 내실이 있는 뉴질랜드 기업을 인수하며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한 성공적인 투자로 평가된다.

나. 투자실패사례: A사

우리나라 굴지의 A사는 뉴질랜드 건설 시장 진출을 위해 5,000만 뉴질랜드달러 규모의 상업빌딩 (25층 호텔)을 전략적으로 수주, 2009년 초 현지법인을 세웠다.

그러나 현지 건설 프로젝트 진행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현지 프로젝트 매니저 없이 단독으로 진행 중에 뉴질랜드 현지 은행의 지급보증 심사에서 탈락하며 수주가 취소되었다.

대부분 한국기업의 실패사례에서 보면 현지 정보의 부재와 한국식 업무방식을 현지에 무리하게 적용하면서 실패하는 경우가 있다. 뉴질랜드는 작지만 영어권 서방 선진국 시스템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7. 주요 투자법 내용

가. 투자법 개요

외국인 투자는 일반적인 사업 투자(Business Investment)와 토지 투자(Land Investment) 부문으로 구분되며 각각 규정을 달리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특히 토지 투자에 대해서는 민감 토지(Sensitive Land)인 해안 인접 토지와 호수, 도서, 농업용 토지 등과 수산 어획 쿼터 매입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나. 투자 유치 관련 법규

1) 해외투자법(Overseas Investment Act 2005)

외국인의 뉴질랜드 내에서의 투자에 관한 관할 법으로서 이 법에 의해 해외투자실 (Overseas Investment Office, OIO)이 개별투자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해외투자법의 세부 내용은 해외투자실 홈페이지(www.oio.linz.govt.nz) 내 Publication 항목에서 상세히 열람할 수 있다.

2) 해외투자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한 투자

□ 토지 관련 투자 시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로운 투자가 가능하다.

- 토지 총 면적 5헥타르 초과 시
- 토지 총 면적 4,000평방미터를 초과하고 이름이 있는 섬의 일부일 때
- 토지의 크기와 상관 없이 이름이 없는 섬의 일부일 때
- 토지의 총 면적이 4,000평방미터를 초과하고 용도가 자연보존의 목적을 가진 경우
- 공공위락 목적의 경우 또는 문화 유산이나 역사 보존 지역인 경우
- 해안선을 포함한 대지와 인접 토지의 총 면적이 2,000평방미터를 초과할 경우

□ 주식 투자 시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로운 투자가 가능하다.

- 총 주식의 25% 이상을 취득할 경우
- 주식 매입 금액이 1억 뉴질랜드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 회사 발행 주식 감정가 총액이 1억 뉴질랜드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 투자 대상 회사 주식 발행인의 자산 액이 1억 뉴질랜드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 자산 및 사업체 투자 시

투자 규모가 1억 뉴질랜드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는 해외 투자법에 의한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3) 토지 투자 승인 절차(승인 필요 시)

별도의 승인신청 양식은 없으나 모든 신청서는 편지 형식으로 작성해야 하며 OIO주소로 송부해야 한다.

- OIO 주소: Overseas Investment Office, Land Information New Zealand, Private Box 5501, Wellington, Fax: + 64 4 460 0111, Email: oio@linz.govt.nz)

모든 신청서는 다음과 같은 형식을 따라 작성해야 한다.

신청인(Applicant)	- 이름, 생년월일, 국적, 여권번호 및 주소지 - 신청인의 뉴질랜드 비자 사항 - 신청인의 사업경력 또는 해외투자 경력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신청인의 자산 상태
매각인 또는 회사 (Vendor/Target Company)	- 매각인 또는 회사의 이름, 국적 및 주소지 - 매각인의 뉴질랜드 시민권 또는 영주권에 대한 사항
투자(Investment)	- 매입하고자 하는 대상물에 대한 정확한 설명 - 허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 - 투자 예상가액에 대한 세부 설명 - 투자금액 조달 방법
토지(Land)	- 토지의 면적(헥터 또는 평방미터) - 법적 명세서 - 1개월 이내 등기부 - 주소 및 지역을 포함한 위치 - 주변 지도 - 토지 소유권의 종류 - 매입 후 분할 예정인 경우 그에 대한 계획서

투자 이유 (Rationale for the Investment)	- 민감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유 및 근거
제안서 근거 (Investment Criteria)	- 사업 경험, 재정적 능력, 인품, 영주권 취득 여부 및 영주 의사 등에 대한 설명

신청 수수료는 건당 최소1만2,300뉴질랜드달러이며 최고 2만2,000뉴질랜드달러까지 건당 정해져 있다. 신청서 접수 후 통상 10~12주 정도의 심사 기간이 소요된다.

4) 토지를 제외한 사업체에 대한 투자

별도의 승인 신청 양식은 없으나 모든 신청서는 편지 형식으로 작성해야 하며 OIO로 송부해야 한다. 모든 신청서는 다음과 같은 형식 및 내용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신청인(Applicant)	- 이름, 생년월일, 국적, 여권번호 및 주소지 - 신청인의 뉴질랜드 비자 사항 - 신청인의 사업 경력 또는 해외 투자 경력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신청인의 자산 상태
매각인 또는 회사 (Vendor/Target Company)	- 매각인 또는 회사의 이름, 국적 및 주소지 - 매각인의 뉴질랜드 시민권 또는 영주권에 대한 사항
투자(Investment)	- 매입하고자 하는 대상물에 대한 정확한 설명 - 허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 - 투자 예상가액에 대한 세부 설명 - 투자금액 조달에 대한 설명
투자 이유 (Rationale for the Investment)	- 민감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유 및 근거
제안서 근거 (Investment Criteria)	- 사업 경험, 재정적 능력, 인품, 영주권 취득 여부 및 영주 의사 등에 대한 설명

신청 수수료는 건당 최소1만 900뉴질랜드달러이며 최고 1만 2,900뉴질랜드달러까지 명기 되어있다. 신청서 접수 후 통상 10~12주 정도의 심사 기간이 소요된다.

단, 토지 관련 이외 사업체에서 외국인 소유권이 제한 되는 분야가 있는데, 여객사업, 어업, 통신사업 분야이다. 뉴질랜드 정부는 이들 사업체에서 외국 지분이 총 지분의 49%가 넘지 않는 선에서 투자를 허가하고 있다.

8. 투자방식

가. 사업자 구분

뉴질랜드에서는 사업자가 Sole-Trader, Partnership, Company 의 세 가지의 형태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으며 외국투자기업의 현지법인, 지사, 지점, 연락사무소의 별도개념은 없다.

1) Sole-Trader

1인 사업자가 대부분 취하는 형태이다. 개인 사업자는 세금 및 관련 모든 비용에 대한 무한책임을 진다. 별도의 회사 등록 절차가 없으나, 세금등록번호 (IRD 번호)가 있어야 한다. 연 소득이 6만 뉴질랜드달러 이상일 경우 GST 사업자 등록을 하고 GST 번호를 부여 받는다. GST는 뉴질랜드의 부가가치세 개념인 Goods and Services Tax를 말한다.

2) Partnership

2인 이상의 사업자가 동업을 하는 형태이다. 각 파트너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채무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진다. 별도의 회사 등록 절차를 요하지 않는다.

Limited Partnership은 무한책임을 지는 General Partner와 투자한 금액에 한하여 책임을 지는 Limited Partner로 구성이 되며, 이 경우에는 Companies Office에 등록 절차를 거쳐 회사의 형태를 띠게 된다.

3) 회사 (Company, 대부분 Limited-유한책임회사를 말함)

뉴질랜드 회사법(Companies Act 1993)상 설립되는 회사를 말한다. 아래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Companies Office에 등록해야 한다.

- 회사명
- 주식 (1주 이상)
- 1인 이상의 주주
- 1인 이상의 이사 (Director)

9. 투자진출형태

가. 외국기업 (Overseas Company)의 정의

회사등기소는 외국기업에 대한 정의를 ‘최초에 외국에서 설립되었으며, 뉴질랜드에서 영업을 영위하는 모든 주체’라고 규정하고 있다. 외국기업은 뉴질랜드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였거나 법인 설립 절차를 거치지 않았어도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자국의 채권자 보호를 위한 회사 등록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회사 설립 시 주식의 25% 이상을 외국인이나 외국의 모기업이 소유한 경우 외국기업으로 정의한다. 이 경우 해당 회사는 회사등기소에 외국기업으로 등록하고 관련 재무제표 및 보고서 제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나. 현지법인의 설립

뉴질랜드의 회사 설립절차는 매우 간단하다. 외국기업이나 외국인이 자본을 이루는 모든 현지 법인의 설립 절차는 뉴질랜드 법인 설립 절차와 동일하게 간소하다.

외국기업으로 정의된 회사는 Financial Reporting Act 1993에 따라 회계 감사를 받은 후 재무제표를 포함한 연간신고서(Annual Return)을 등록 첫해를 제외하고, 결산일로부터 5개월 20일 이내에 회사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Annual Return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지사의 등록된 사무실 주소 및 서류 송달 주소, 주식자본금 요약, 이사들의 인적 사항, 과거/현재의 이사 명단, 최종 연차 총회일.

외국기업은 Financial Reporting Act 1993에 따라 연간신고서(Annual Return) 외에도 연차 보고서(Annual Report)를 작성해야 하며, 수신을 원하는 모든 주주들에게 발송해야 한다. 연차보고서는 회계 마감일 5개월 이내에 작성되어야 하며 총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송되어야 하는데 연차보고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재무제표 사본, 이사 보고서, 감사 보고서(필요 시), 이사들의 인적 사항, 연간 수입이 10만 뉴질랜드달러를 초과하는 임직원의 수)

다. 지사 및 연락사무소 설립

□ 지사

지사라 함은 외국에서 설립된 외국기업(Overseas Company)의 뉴질랜드 내 영업소로서, 현지법인 설립은 하지 않았으나 현지에서 영업을 진행하는 존재를 말하며, 현지법인과 동일하게 Overseas Company로 회사 등기소에 등록해야 한다.

이 영업소도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회사 등기소장에 현지법인과 동일한 절차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반드시 본사의 영문 재무제표(한국 재무제표일 경우 공증 번역된 재무제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현지법인과 동일하게 연간신고서와 연차보고서를 회사 등기소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나머지 절차들은 현지법인과 동일하다.

□ 연락사무소

뉴질랜드는 상법상 지사와 개념이 다른 단순 사무소 (연락사무소 등)에 대한 개념이 없으나 부득이하게 연락사무소를 유지해야 할 경우, 정보수집이나 연락업무 등은 가능하나 영업 활동은 할 수 없다.

연락사무소의 경우 모기업이 송금하는 비용을 사용하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나, 다만 이 경우 주재원의 장기 비자 획득이 어려울 뿐 아니라 현지 직원 채용이 불가능하여 현지 직원 채용 시 고용에 따른 경비 지출이나 환급 등 세무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기능상 연락 사무소라고 하더라도 현지법인이나 지사의 형태로 설립되어야 한다.

라. 인수합병 (M&A)

□ 합작투자 / 전략적 협력 (Joint Venture / Strategic Alliance)

두 개 이상의 기업이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재정적, 또는 재정적 이외의 영역의 각자의 무형적 자원을 모아 함께 협업하는 모든 형태를 칭한다.

합작투자/전략적 협력은 정해져 있는 규정이나 절차가 있는 것이 아니며 참여 주체들 간의 상호 협의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역할 또는 책임 소재에 관련한 분쟁이나, 이후 이익의 배분에 대한 상세 내용을 미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지분 참여

투자자가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뉴질랜드 현지 법인에 지분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외 투자사무소(OIO)의 제한 규정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다. 해외 기업이 25% 이상으로 현지 기업에 지분 참여할 경우 상기한 외국기업의 등록 및 관련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아래 경우에 대해서는 해외투자사무소 (OIO)의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 전체 기업 설립 자본이 1억 뉴질랜드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 기존 기업 지분 또는 자산을 매입하는데 드는 금액이 1억 뉴질랜드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 주식 매입한 기업 전체 자산가액이 1억 뉴질랜드달러를 초과하거나, 25% 이상의 주식을 매입하면서 해당 매입가액이 1억 뉴질랜드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10. 진출형태별 절차

가. 회사설립절차

□ 현지법인 설립절차

No	구분	준비사항	유의사항	담당부서	소요기간 / 비용
1	설립 요건	최소 1명 이상 필요, 자본금 결정(최소 자본금 규정 없음)	자본금예치 필요 없음	회사등기소	
2	법인등록 신청	회사명, 이사 명부 및 연락처, 총 주식 수 및 주주 별 보유비율, 회사 연락처	주식 액면가격에 대한 기재 사항은 없음, 실주소, 우편 주소, 접촉의 망 주소	회사등기소	등록비용: NZ\$ 150 (회사명 중복여부 검토비용: NZ\$ 10)
3	예비등록증 수령 및 주요 인사 동의서 제출		예비등록증은 온라인 접수 후 2~3일 내로 우편 수령 되며 이때 동봉된 동의서 양식에 이사 및 주주가 서명 하여 회송 할 것	회사등기소	온라인 접수 후 2~3일
4	회사등록증 발급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이사의 주소지로 송부	회사등기소	
5	사업자 납세자등록	국세청 신청서를 작성 하고 회사 등록증을 첨부 하여 국세청 에 제출하면 IRD&GST 번호를 부여 받음	현지에 체류할 주재원 (법인 장 포함)은 개인 자격으로 납 세자 번호를 별도로 신청 해야 함	국세청	5일
6	회사명의 은행구좌 개설	회사등록증 사본, IRD & GST 번호, Director 신분증 2종 (여권, 운전면허증 또는 신용카드), Authority Letter from Shareholders	회사등록 및 사업자 납세자 등록 이 완료 후 은행구좌 신청서를 작성 하면 대부분 당일 법인명의 구좌 개설 가능 대리인 활용이 불가하며, Director 가 은행을 필히 방문 해야 함.	은행	1일

No	구분	준비사항	유의사항	담당부서	소요기간 / 비용
7	파견인력 최대한도 승인 (AIP; Approval In Principal	신청서, 사업계획서, 파견 인력 숫자 및 지위와 업무 내용, 파견인력에 대한 임금지불 방법 (예: 본사 지불 서약서 등), 파견인력에 대한 주택, 차량 등 보조 관련 서류(예: 주택 임대차 계약서 등), 이외에도 이민 성은 다양한 자료제시를 요구할 수 있음	법인 설립 후 해외 모기업으로부터 파견될 인력의 최대 숫자에 대한 협약이 선행되어야 이에 근거한 주재원 Work Visa 신청이 가능함. 이민성은 외국투자기업이 주재원 파견을 최소화 하고 가급적 자국인 고용확대를 요구하기 때문에 심사가 까다로움	이민성	파견인력 4인 미만 (1~2개월) 파견인력 5인 이상 (1년 이상)이 요구 되기도 함
8	파견인력 별 Work Visa 발급	Work Visa 신청서 "INZ 1015"	AIP에 근거하여 주재원 파견 시 마다 개별적으로 Work Visa를 신청해야 함 비자 신청서는 이민성 홈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이민성	-

□ 지사설립절차

No.	구분	준비사항	유의사항	담당부서	비용
1	회사명 승인신청	회사명 회사 홈페이지 아이디	회사등기소 홈페이지접속 후 온라인상으로 신청	회사등기소	NZ\$ 10.22
2.	회사 등록신청	모기업 명칭, 주주들의 이름과 자택주소 뉴질랜드내 사무소의 주소, 모기업의 권한 수입자 1명 이상의 이름과 주소 상호명 승인서 뉴질랜드가 아닌 제3국 에서 회사가 설립 되었다는 증명 모기업의 외국에서의 등록서류, 정관이나 정관이 없음을 입증 하는 서류	상호명 승인을 받으면 영업일 10일 내에 회사 등기소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회사 등기소장은 모든 요건이 충족되었을 경우 지사 설립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급하며, 이때부터 지사명의로 영업이 가능함	회사등기소	

No.	구분	준비사항	유의사항	담당부서	비용
3	사업자 납세자등록	국세청 신청서를 작성 하고 회사등록증을 첨부하여 국세청에 제출하면 IRD& GST 번호를 발급받음	현지에 체류할 주재원 (법인장 포함)은 개인 자격으로 납세자 번호를 별도로 신청 해야 함.	국세청	

나. 관련기관 및 추천 법무법인/ 회계 법인

- 회사등기소(Companies Office)
 - 주소: Northern Business Centre, Victoria Street West, Auckland
 - 전화: 64-3)962-2602 (국제전화), 0508-266-726 (국내 무료전화)
 - 팩스: 64-9)912-7787
 - 홈페이지: www.companies.govt.nz
 - E-메일: 홈페이지 Q&A 이용
- 국세청(IRD)
 - 주소: PO Box 761, Waikato Mail Centre, Hamilton 3240
 - 전화: 64-4)472-0030
 - 팩스: 64-4)890-4510
 - 홈페이지: www.ird.govt.nz
 - E-메일: nonres@ird.govt.nz
- 이민성 기업이민부(Immigration New Zealand Business Migration Branch)
 - 주소: Level 3, Kordia House, Willis Street, Wellington
 - 전화: 64-9)914-4100
 - 팩스: 64-4)801-2928
 - 홈페이지: www.immigration.govt.nz
- KPMG 회계법인
 - 주소: KPMG Centre 18 Viaduct Harbour Ave PO Box 1584 Auckland 1140
 - 전화: 64-9)367 5800
 - 홈페이지: www.kpmg.com/nz
 - 이메일: jundo@kpmg.co.nz (한국 담당자)
 - 규모 관련정보: 전국 5개 도시에 사무실 위치함 (오클랜드, 웰링턴, 크라이스트처치, 해밀턴, 타우랑아)

- Deloitte 회계법인
 - 주소: Level 18, Deloitte Centre 80 Queen Street Private Bag 115-033 Shortland Street Auckland 1140 New Zealand
 - 전화: 64-9)303 0700
 - 홈페이지: www.deloitte.co.nz
 - 이메일: brelee@deloitte.co.nz (한국 담당자)

- ANZ 은행 상업 & 농업 투자부
 - 주소: Level 22, ANZ Centre, 23-29 Albert Street, Auckland, New Zealand
 - 전화: 64-9)252-4542
 - 홈페이지: www.anz.co.nz
 - 이메일: brian.soh@anz.com (한국 담당자)

- Chapman Tripp 법무법인
 - 주소: 23 Albert St. PO Box 2206, Auckland, New Zealand 1140
 - 전화: 64-9)357-9000
 - 홈페이지: www.chapmantripp.com
 - 이메일: info@chapmantripp.com
 - 규모 관련정보: 175명의 변호사, 세계적인 기업의 자문 역할 (20th Century Fox Film Corp), 전국 3곳에 사무소 (오클랜드, 웰링턴, 크라이스트처치)

- Russell Mcveagh 법무법인
 - 주소: Vero Centre 48 Shortland St. PO Box 8 Auckland 1140, New Zealand
 - 전화: 64-9)367-8000
 - 홈페이지: www.russellmcveagh.com
 - 이메일: andrew.peterson@russellmcveagh.com
 - 규모 관련정보: 250명의 변호사, 고객 (Qantas 항공, New Zealand Oil and Gas)

- Bell Gully 법무법인
 - 주소: Vero Centre 48 Shortland St. PO Box 4199 Auckland, New Zealand 1140
 - 전화: 64-9)916-8800
 - 홈페이지: www.bellgully.com
 - 이메일: info@bellgully.com
 - 규모 관련정보: 1840 설립. 뉴질랜드에서 가장 오래된 법무법인 중 하나임. 2010년 포함 연속 3년 동안 New Zealand Top Law Firm으로 선정됨. International Financial Law Review가 선정한 2010년 New Zealand Top Law Firm of the Year.

11. 투자법인 철수 및 청산

가. 개요

뉴질랜드 내의 투자 법인이 사업을 청산하고자 할 때는 20여 일의 사업철회 고지 및 검토 기간이 걸리지만, 해외 투자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철회 고지에서 신청서 작성까지만 최소한 3달이 넘는 긴 시간이 요구된다. 또한 회사에 부채가 있거나, 법인 철회 신청 후에도 계속 거래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 검토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법인 철수를 하고자 할 때는 수달 전부터 미리 계획을 세워 회사를 청산하고 절차를 밟아 가는 것이 좋다.

나. 법인 철수 및 청산 절차

해외 투자 법인이 뉴질랜드에서 사업을 청산, 혹은 철수하고자 할 때는, 두 가지 절차에 따라야 한다. 먼저 내무부에서 발간하는 주간신문 New Zealand Gazette나 주요지역신문에 최소한 3개월 전에 광고를 해서 뉴질랜드 시민들에 회사를 철수함을 알려야 한다. 두 번째로, 광고가 나간 세 달 후, 뉴질랜드 경제 혁신 고용부가 지정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뉴질랜드 법인 등기부에서 회사 정보를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모든 절차가 끝나고, 기업혁신고용부 산하 기업등기소(Companies Office)에서 회사를 철수하겠다는 의사를 받아들이면 등기부에서 회사 기록이 삭제되면서 철수 절차가 끝나며, 회사를 철수기로 한 날짜 이전에 반드시 사업을 청산해야 한다.

다. 법인 철수 및 청산 관련 법령

Companies Act 1993의 321절의 여섯 항목이 법인 철수와 연관된다. 이 법령에서는 회사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청산해야 하며, 어떠한 이유에서도 회사의 창립자, 혹은 투자자는 법인 등기부에서 자발적으로 회사를 삭제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12. 투자입지여건

가. 특별 경제구역 소개

뉴질랜드는 1차 산업인 농축산 산업이 국가 전반에 걸쳐 유리하게 발달되었으며, 이에 따라 특별히 지정된 경제구역이 없다.

나. 지역별 입지 및 투자여건

뉴질랜드는 제조업 발달이 미약해서 지역별로 산업 특성이 확연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제조업은 주로 인구가 제일 많은 오클랜드를 중심으로 발달되어 있고, 그 외 지역은 낙농업이나 수산업이 발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 오클랜드 지역(Auckland Region)

뉴질랜드 최대 상업도시 도시인 오클랜드가 속해 있는 지역으로, 전체 450만 명의 인구 중 150만 명이 거주하며, 도매 판매업의 48%, 교통·통신사업의 46%, 금융·보험·비즈니스 산업의 44%가 오클랜드에 자리하고 있다. 아시아 이민자들의 주요 경제활동 장소인 오클랜드는 아시아인의 비중이 21.6%로 나머지 지역의 5.5%에 비해 16.1%나 높다. 세계 50위권의 오클랜드 대학 및 다수의 사립 중고등학교가 위치해 있어 교육 산업 역시 크게 발달하였다. 2014년 뉴질랜드 수출증가로 인한 경기호황과 순이민자수 증가에 따른 내수경기 진작에 힘입어 주택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투자 시장이 다시 활성화되고 있으며, 오클랜드 근교를 중심으로 한 아파트 건축 계획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 와이카토 지역(Waikato Region)

낙농, 목축업의 중심지로서 목장 및 관련 산업이 크게 발달해 세계 최대의 낙농 유통 기업이라 할 수 있는 폰테라의 유가공 공장 등이 위치해 있다. 폰테라는 세계 유가공품 시장의 40%를 공급하고 있다.

□ 웰링턴 지역(Wellington Region)

행정 수도인 웰링턴시가 위치해 있으며 시를 중심으로 관광 및 와인 산업이 발달하였다. <반지의 제왕>을 제작한 웨타 스튜디오가 위치해 있어 이를 중심으로 영화 산업 역시 각광받고 있다. 2013년 7월과 8월에 두 차례 지진이 웰링턴을 강타하여 일부 건물 및 도로, 항구가 유실되기도 하였으나, 큰 피해는 없었다.

□ 캔터베리 지역(Canterbury Region)

2011년 2월 지진이 발생했던 남섬의 크라이스트처치가 중심도시이며 양을 중심으로 한 목축업이 발달해 있다. 인근에 퀸즈타운 등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위치해 관광 산업 역시 크게 발달해 있다.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진 재건 사업으로 인해 인프라를 비롯한 건설 투자와 관련하여 관심이 깊어지고 있는 지역이다.

다. 투자 입지 선정을 위한 고려사항 및 특이사항

적은 인구로 규모의 경제를 누리기가 힘든 뉴질랜드 특성상 제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극히 드물며 포트폴리오 투자와 토지를 포함한 자산 투자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풍부한 농축산품과 뉴질랜드의 청정이미지를 활용할 수 있는 식품 분야에서만큼은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 그 외 한국의 목재 가공업체들이 뉴질랜드에서의 조림사업을 위해 진출 했으며 남태평양 대구, 오징어 잡이를 위해 일부 수산업체들이 남섬 지역에 진출해 있기도 하다.

이처럼 뉴질랜드에 대한 투자는 시장을 겨냥한 투자라기 보다는 뉴질랜드가 보유한 자원 확보 혹은 활용을 목적으로 한 투자가 대부분이다.

13. 투자진출 시 애로사항

가. 일반적인 애로사항

□ 소규모 시장의 한계

뉴질랜드와의 비즈니스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작은 시장이 지닌 한계에서 발생한다. 기본적으로 다품종 소량의 통용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큰 물량을 판매하겠다는 욕심은 금물이다.

따라서 뉴질랜드 시장이 지닌 한계만 볼 것이 아니라 시장 내 경쟁자들과의 경쟁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유사성이 많은 호주를 함께 공략해야 하는 동일 시장으로 삼는 전략이 필요하며, 품목이나 분야에 따라서는 남태평양 도서국 시장을 함께 고려하는 전략도 유효한 경우가 많다.

□ 보수적 거래 관행

뉴질랜드 시장은 유럽, 미국, 일본의 진출이 강했던 시장이며 아직도 이들 나라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고 일단 좋은 거래 관계를 유지하면 거래처를 잘 바꾸지 않으려는 보수적 성향 때문에 초기 시장 진입에 애로가 존재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 상담 시 우리 상품의 우월성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사전 준비가 매우 중요하며, 장기간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업체라는 신뢰를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최근 중국 상품이 대거 유입되면서 기존 가격 질서가 재편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추후 중국 제품에 실망하는 바이어들이 대거 발생할 수 있는 점은 오히려 우리기업에게는 호기가 될 수도 있다.

현지 바이어들은 한국상품이 유럽이나 일본 제품보다는 품질은 떨어지지만 가격 면에서 경쟁력이 있고 중국 제품보다 가격은 높지만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격보다는 품질에 초점을 맞춰 제품을 홍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까다롭고 느린 일 처리

합리성과 매뉴얼에 따른 청렴한 일처리 방식이 뉴질랜드 사람들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천천히 흘러가듯 처리하는 업무처리 방식은 한국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인내를 요하는 단점임에 분명하다.

정부가 처리하는 심사 또는 소송 등 뉴질랜드 공공기관에서 처리되는 모든 일들이 적은 인력을 이유로 매우 느리게 진행되며, 수시로 데드라인을 넘기는 경우도 많다. 사기업 또한 의사결정에 있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과의 비즈니스에는 많은 인내심이 요구된다.

나. 분쟁해결 절차

개인적인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법원의 소액재판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지만, 기업의 경우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비용에 다소 부담이 있더라도 변호사, 세무사 그리고 전문 컨설팅회사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환경평가 및 주민 동의를 받아야하는 Resource Consent에 있어서는 이들 전문가 그룹의 도움이 크게 작용한다.

다. 유형별 분쟁사례

□ 식품제조업의 환경관련 분쟁사례

뉴질랜드에서 식품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사는 설립초기부터 환경과 관련한 민원에 시달려야 했다. 초창기에는 자원동의(Resource Consent)를 받는 과정에서 악취, 소음 등으로 공장 인근 주민들을 이해시키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어, 주민들과의 대화 및 전문 컨설팅 업체의 지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여 공장을 설립하여 생산을 시작하였으나, 설립 15년이 지난 2014년 현재까지 악취관련 민원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이에 A사는 관할 시청과 협의하여 악취제거를 위한 설비보완 및 공정 개선작업을 실시하였고, 시청 또한 공청회를 통한 다양한 주민의견수렴 및 분쟁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4년 현재도 A사는 관할 시청 및 전문 컨설팅 업체로부터 지원을 받아 문제해결을 위해 계속해서 힘쓰고 있다.

라. 인력 확보의 어려움

현지진출 기업들이 뉴질랜드에서 겪는 큰 애로 중의 하나가 인력을 확보하는 일이다. 뉴질랜드 직장인들은 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하기 보다는 여러 곳에서 경력을 쌓는 것을 중요하고 여기는 경향이 있고, 고용의 유연성이 높아 이직률이 높은 편이다. 이에 따라 고용된 직원들의 일에 대한 열의도 낮은 편이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이민 2세를 대안으로 삼는 한국 기업들이 많은데, 이들 2세들이 한국어를 쓰는 한국인이긴 하지만 뉴질랜드에서 자라고 교육을 받은 관계로 한국의 직장인과 같이 비교하는 것은 무리이다.

또한 업무처리에 있어서 인맥이 작용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환경이나 도시 계획과 관련하여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거나 지역사회와의 있을 수 있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지의 영향력 있는 현지인과의 네트워크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대형 프로젝트일수록 이런 현상이 더 심하게 나타나며, 임업, 수산업, 부동산 개발 등에 있어서는 현지 마오리 원주민을 설득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현지 네트워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14. 노무관리제도

가. 연도별, 직종별, 지역별 평균임금

연도별 / 지역별 평균임금

(주급기준, NZ\$)

지역	2009	2010	2011	2012	2013
Northland	700	698	660	693	758
Auckland	786	800	840	863	882
Waikato	720	736	750	783	788
Bay of Plenty	672	716	693	740	774
Gisborne/Hawke's Bay	720	718	698	720	756
Taranaki	750	725	767	800	800
Manawatu-Wanganui	700	710	713	715	756
Wellington	806	834	863	850	921
Nelson/Tasman/Marlborough/West Coast	700	719	705	720	750
Canterbury	729	750	776	767	833
Otago	729	763	731	737	810
Southland	695	740	760	720	806
뉴질랜드 전체	756	767	767	800	834

주: 2013년 6월기준 (2014년 6월 기준 최신통계)

자료: 뉴질랜드 통계청

직종별 평균임금

(단위: NZ\$)

직종	주급
Managers (관리자급)	1,035
Professionals (전문직)	1,207
Technicians and trade workers (기술직)	868
Community and personal service workers (서비스직)	680
Clerical and administration workers (사무직, 행정직)	863
Sales workers (영업직)	640
Machinery operators and drivers (설비 및 차량 운전직)	774
Laborers (일반 노동직)	641
Residual occupations (기타)	648

주: 2013년 6월기준 (2014년 6월 기준 최신통계)

자료: 뉴질랜드 통계청

나. 노무관리

□ 고용계약

피고용인은 누구나 서면고용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고용계약은 개별계약이거나 단체계약(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의 형태를 취한다. 고용계약에는 법이 정한 일정한 내용이 반드시 들어 있어야 한다. 계약서는 원본 2부를 작성, 쌍방이 각자 서명한 후, 서명된 원본을 한 부씩 보관해야 한다

한편,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고용주에 대해 500뉴질랜드달러의 벌금이나 4,000뉴질랜드달러의 배상금 지급을 명령한 판례가 있었으며, 고용관계법을 어기는 고용주 개인에 대해 1만 뉴질랜드달러의 벌금, 법인에 대해 2만 뉴질랜드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임금

2014년 4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최저임금은 시간당 14.25뉴질랜드달러이며, 최저임금법(Minimum Wage Act, 6조)에 따라 모든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최저임금을 지불하여야 하며, 임금이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 계약서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다. 또한, 남녀평등임금법(Equal Pay Act 1972)에 따라 성별, 인종별, 국가별, 종교별로 임금을 차등하는 것을 금지한다.

□ 근로시간

최저임금법(Minimum Wage Act, 11B조)에서 규정한 정규 근무는 주당 40시간 근무이며, 이를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는 시간 외 근무(overtime)로 규정된다. 일반적으로 고용주는 피고용인에게 시간외 근무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나, 피고용인에게는 시간외 근무를 승인 또는 거부할 권리가 있다. 고용주는 시간외 수당 근무 거부를 이유로 피고용인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다.

전통적으로 시간외 수당은 시간외 근무 처음 3시간은 통상 임금의 1.5배, 그 이후부터는 2배였으나, 현재는 다양한 시간외 수당 계산법이 사용되고 있으며 고용주에게 통상 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을 시간외 수당으로 지급할 법적인 의무는 없다. 그러나 시간외 근무를 하는 피고용인이 시간외 근무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낄 경우에는 가장 먼저 고용주에게 문제제기를 해야 하며, 문제 제기를 한 이후에도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시간외 수당 문제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는, 기업혁신고용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중재(mediation) 서비스(전화 0800-209-020)를 이용할 수 있다.

□ 휴일과 휴가

뉴질랜드 휴가법(Holidays Act)은 피고용인이 공휴일 근무할 경우 고용주가 통상 임금의 최소 1.5배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50조)하고 있으며, 공휴일이 평일(월-금)인데 그날 근무를 한 경우 고용주는 피고용인에게 대체휴일을 제공해야 한다. 피고용인이 대체휴일을 사용할 경우 하루치 임금을 지급받게 되며, 피고용인이 대체휴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고용관계 종료 시 하루치 임금을 지급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휴가는 1년에 4주이며, 출산 휴가는 출산 예정일 기준으로 동일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여성 노동자에 게 14주까지의 유급 휴가를 보장, 주당 372.12뉴질랜드달러의 출산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2014년 5월에 발표한 정부예산안에 의하면 2015년 4월 1일부터 출산휴가가 16주로 늘어나며 2016년에서 18주로 확대될 전망이다.

자세한 사항은 기업혁신고용부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www.mbie.govt.nz)

□ 병가 및 사별 휴가

근무 6개월 후부터 피고용인은 5일간의 유급병가를 받을 수 있다. 그 후부터는 매 12개월에 5일씩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병가는 피고용인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 또는 피고용인의 보살핌을 받는 사람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사용할 수 있다. 고용주는 병가에 대해서 해당 일급 또는 평균일급을 지불해야 하며 의사 진단서 등 질병 입증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사별 휴가의 경우도 병가와 마찬가지로, 근무 6개월 후부터 받을 수 있다.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손녀손자,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3일이 주어지며, 그 외의 친인척 사망 시 고용주가 인정할 경우 1일이 주어진다.

□ 해고

Equal Pay Act 1972는 성별, 인종별, 국가별, 종교별, 임금차등의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최저임금에 준하여 임금을 책정하지만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 계약서에 따라 임금이 지급된다. 해고 조건은 고용 계약에 명시하고 있는데, 고용주가 직원을 해고할 경우에는 경고를 3번 이상 한 후 정당한 해고 사유에 따라 해고를 하여야 하며, 대개 4주 전에 해고 사실을 피고용자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다.

또한, 90일 수습기간(90-day trial) 제도에 따라 고용주가 최고 90일까지의 기간을 수습기간으로 정하고, 수습기간 동안 직원을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는 제도이다. 만약 수습기간 외에 고용주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이유로 직원을 해고할 경우, 직원은 고용주를 상대로 손해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 퇴직급여

퇴직을 할 시에는 따로 명시된 퇴직급여는 없으나, 일을 하면서 누적된 휴가비 (Holiday pay)를 퇴직 시 일괄적으로 받을 수 있다. 휴가비는 1년에 4주의 휴가를 쓰는 것에 비례해서 책정된다.

□ 노사협의회

기업혁신고용부는 'Employment Relation Act 2000'에 의거 고용관계를 법령화하고 있다. 이 법률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일자리를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노동쟁의는 단체협약이 만료되었을 때, 그리고 양측이 최소 40일 동안 협상을 진행한 후에만 합법이다.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이 끝나기 60일 전부터 노동조건에 대한 협상을 진행할 수 있고, 고용주는 협약 만료 40일 전부터 이에 대한 협상을 개시할 수 있다.

□ 사회보험제도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제도는 없으나 사회개발부 산하 'Work and Income'에서 저소득층, 장애인, 실업자 등과 관련된 수당 지급을 담당하며, 국세청 (IRD)에서는 중산층 이하의 세금환급 및 소득공제를 통한 간접적인 지원을 담당한다. 또한 Kiwi Saver로 이름 붙여진 연금제도가 있다.

또한, 산재발생시 사고보험공사(ACC)를 통해 재활비용을 포함한 치료비 전액 지원 및 치료기간 동안 근무를 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급여 손실분의 80%까지 보전해준다.

다. 노무관리 유의사항

뉴질랜드는 대부분 중소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10인 이하 회사 비율이 96%를 넘는다. 제조업은 취약한 반면 서비스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있는데, 신문광고나 취업 알선 전문 회사를 통해 채용하거나 일부 대기업은 대학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채용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직원 1~2명 정도의 채용이 대부분이어서 특별한 자격 조건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사내 문건(사내 이메일, 사내 공지사항 등)을 통해 직원들로부터 추천을 받아 채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들은 직원 채용 후에 통상 3개월의 수습 기간을 설정하고 있다. 고용 계약 체결은 반드시 노동관계법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며 노동자의 권리를 중시하는 제도와 관행이 지배적임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다국적 리크루트 서비스업체인 Kelly Service社가 2013년 10월에 발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뉴질랜드의 이직률이 세계 5위인 55%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직의사가 없다는 답변이 14%에 불과해 뉴질랜드에서 이직이 매우 일상적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높은 이직률은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현지인력 채용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15. 조세제도

가. 현지 조세 제도

뉴질랜드의 조세 제도를 총괄하는 기관은 뉴질랜드 국세청(IRD, Inland Revenue Department)이며, 주요 세금으로는 법인 및 개인 소득세와 부가가치세(GST: Goods and Services Tax)를 들 수 있다. 매년 4월 1일에서 익년 3월 31일을 기본 세무 회계 연도(이하, 세무연도)로 하여 경상 비용을 제외한 순수 기업 이윤 및 부동산 거래 등에 따른 이윤 등을 과세 대상으로 한다.

세무연도의 제 4월, 제 8월 및 제 13월에 추정 세액(Provisional Tax)을 선납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세무연도의 제 13월까지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이는 IRD 승인 아래 기업별로 세무연도를 조정할 수 있다. 세무연도 13월은 차 세무 연도 1월을 의미한다.

□ 개인소득세

뉴질랜드 정부의 세수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개인소득세이다. 급여와 이자소득은 원천 징수되며, 연금, 건강보험 등에는 별개로 세금이 매겨진다. 세액공제는 정부의 보조를 받지 않는 개별 소득자에게 가족 소득 단위로 제공된다.

2012/2013 회계연도 가족 세액공제 기준

(단위: NZ\$)

만13세 이하 기준 자녀 수	연간소득 상한 금액(세전)
1 명	74,000
2 명	90,500
3 명	105,500
4 명 이상	120,500

자료: 뉴질랜드 국세청(2014년 6월 기준 최신정보)

부가급부세(Fringe Benefit)가 종업원에 대하여 급여 이외의 부가급부 제공 시(예를 들면 업무 목적 외의 차량 제공 시, 원가 이하 금액으로 자사 제품 제공 시 등) 피고용인 한 명당 분기별 200뉴질랜드달러 또는 전체 피고용인에 대해 연간 1만 5,000 뉴질랜드달러를 넘기는 금액에 대해 64%의 세율을 적용한다.

세율은 2010년 10월부터 연소득 1만 4,000뉴질랜드달러까지 10.5%, 4만 8,000 뉴질랜드달러까지 17.5%, 7만 뉴질랜드달러까지 30%, 그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33%를 부과하는 누진제도를 시행 중이다.

□ 부가가치세

상품과 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소비활동에는 부가가치세(GST) 라고 불리는 간접세가 포함된다. 2013년 현재 세율은 15%이고 구매 종류 및 가치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아주 간편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사업주의 경우 그들이 지불한 GST를 회계정산 시 환급 받을 수 있다.

□ 특별소비세

자동차연료 (휘발류, 디젤 등), 담배, 주류의 경우 위에 언급한 부가가치세(GST)에 특별소비세가 추가된다. 세율은 품목마다 다르게 적용되며, 담배의 경우 2025년 금연국가로 목표로 매해 인상하고 있다.

□ 법인소득세

법인소득세는 2011년 4월에 28%로 하향조정 되었으며, 외국 투자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기타 조세

뉴질랜드는 상속세와 증여세는 폐지되어 적용되지 않고 양도소득세의 개념이 없다.

주식 등의 배당금에는 33%의 세율이 적용되며 예금 이자 소득은 개인의 연간 총소득 금액 과 합산되어 개인 소득 세율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세금신고번호(IRD 번호)가 없는 경우 무조건 39%가 적용됨을 유의해야 한다.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비 거주 과세 보류자일 경우 뉴질랜드와 이중과세 협정이 체결된 국가의 시민은 10%, 그렇지 않으면 15%가 징수되며, 비거주 과세 보류자가 아닐 경우 2%가 징수된다. 비거주자가 배당금을 받는 경우도 비거주 과세 보류자로 분류된다.

뉴질랜드의 주요 세제 현황

(단위: NZ\$, %)

구분		변경전 세율	변경후 세율
법인소득세		30.0	28.0
Trustee 소득세		33.0	33.0
개인소득세 (소득구간별 할증)	~ 14,000	12.5	10.5
	~ 48,000	21.0	17.5
	~ 70,000	33.0	30.0
	70,001~	38.0	33.0
부가가치세(GST)		12.5	15.0

자료: 뉴질랜드 국세청(2014년 6월 기준 최신정보)

나. 외국투자 기업을 위한 적용 조세제도

뉴질랜드 정부는 외국기업 투자에 대해서 내국인과 차별을 두지 않아, 별도의 외국투자기업을 위한 조세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 한국과 체결된 조세관련 협정

- 이중과세방지협정 (Double Taxation Relief (Republic of Korea) Order 1983)
- 한국과 뉴질랜드는 1981년 11월에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 1983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1997년 10월에 한차례 개정된 바 있다.
- 기업이 경제활동을 하는 뉴질랜드와 한국에서 세금을 이중적으로 내는 것을 막고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협정으로, 한국 기업이 뉴질랜드에서 영업활동을 하면서 발생한 이익금에 대해 서로 세금을 중복 부과하지 않는 것이다. 한국 기업이 뉴질랜드에서 사업을 할 경우 원천지국은 뉴질랜드가 되고 거주지국은 한국이 된다.

16. 금융제도

가. 금융 제도 개요

뉴질랜드 중앙은행(RBNZ: The Reserve Bank of New Zealand)이 통화의 발행과 금융 및 통화 정책을 담당하고 있고 재무 관리 및 재정 정책은 재무부(The Treasury)가 관장하고 있다

한편 뉴질랜드의 5대 시중 은행은 모두 호주 등 외국계이며, 주요 상업은행은 BNZ(Bank of New Zealand), ASB Bank, ANZ Banking Corp., National Bank, Westpac Banking Corp. 등이 있다.

뉴질랜드 자본으로 운영되는 은행은 2001년에 설립된 Kiwi Bank가 유일한데, 비교적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 은행으로는 국민은행이 96년 5월 사무소를 개소하고 1997년 9월부터 영업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외의 금융기관으로는 Private Savings Bank, Building Society, Merchant Bank, Finance Companies 및 Stock and Station Agent 등이 있다.

나. 금융서비스

뉴질랜드 은행은 Reserve Bank Act 1998에 따라 허가 받은 상업은행이 중심이 되며 이들 은행은 registered banks로 중앙은행 지급준비율 엄수는 물론, 외환 신고 및 업무 감사 등의 금융서비스를 이행한다.

뉴질랜드 금융 산업은 1980년대 중반에 대폭적인 규제 완화 조치가 단행된 바 있다. 그 후 자본 시장이 급속히 활성화 되었으며 증권 시장 규모가 확대되었다. 또한 선물 옵션이 도입되었고 이자율과 환리스크 방지에 기여하게 되었다. 리먼 브러더스 등 미국 투자은행들의 몰락에 따라 뉴질랜드 은행들도 위기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 과실송금

2014년 6월 기준, 외환거래 및 과실송금에 대한 통제는 없으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예외는 있을 수 있다.

17.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가. 외환제도

뉴질랜드는 1985년까지 고정 환율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이후 외환 시장의 외환 수급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바스켓 방식의 변동 환율 제도로 변경했다. 그러나 뉴질랜드 달러화 가치의 변동이 심하여 2004년부터는 중앙은행이 일정 수준 외환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정책을 도입했다. 또한 외환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여 2014년 6월 기준 외환 관리상의 제약이나 국내 기업의 활동에 지장을 주는 어려움은 없다.

나. 현지 자금 조달 개요

□ 주식 시장(NZX)을 통한 자금 조달

- NZSX(New Zealand Stock Market)
 - 뉴질랜드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상장되어 있으며 2014년 6월 25일 기준 155개의 기업이 상장되어 있고, 시가총액은 873억 뉴질랜드달러이다. (출처: www.nzx.com)
- NZAX(New Zealand Alternative Market)
 - 중소 규모 회사의 상장을 통해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한 시장으로서 NZSX의 상장 요건을 갖추기 어려운 회사 등을 상대로 한다. 2014년 6월 25일 기준 21개의 회사가 상장되어 있고, 시가총액은 6억 7,735만 뉴질랜드달러이다.
- NZDX(New Zealand Debt Market)
 - 채권 시장으로 2014년 6월 25일 기준 총 85개 사의 135억 뉴질랜드달러 규모의 채권이 등록되어 있다.

□ 은행권 및 제2금융권을 통한 자금 조달

전국의 은행 및 제2금융권을 통한 다양한 자금 조달이 가능하며 중앙은행의 저금리 정책으로 은행권 담보 대출 금리가 6~8%로 상당히 내린 상태이나 기업 신용 대출은 여전히 14~15% 대를 유지하고 있다.

다. 현지금융조달 방법

현지 은행권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을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국민은행이 1997년부터 오클랜드에 지점을 설치하고 교민 및 한인사업체를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또한, 주요 현지은행 역시 한국인전담지점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 대출상담이 크게 어렵지 않으며, 교민이 운영하는 금융브로커업체도 주로 이용하는 편이다.

- 국민은행 오클랜드 지점
 - 주소: Level 19 ASB Bank Centre, 135 Albert Street, Auckland
 - 전화: (+64-9)366-1000
 - 이메일: auckland@kbstar.co.kr
 - 홈페이지: www.kbstar.co.kr
- ASB Bank 한국인 금융사업 본부
 - 주소: Level 1, 138-142 Queen Street, Auckland
 - 전화: (+64-9) 337-2249
 - 이메일: koreanbanking@asb.co.nz
 - 홈페이지: www.asb.co.nz
- Westpac 한국인 지점
 - 주소: 60 Constellation Drive, North Harbour, Auckland
 - 전화: (+64- 9)348 9321
 - 이메일: koreanbanking@westpac.co.nz
 - 홈페이지: www.westpac.co.nz
- 용킴 컨설팅 (교민운영 금융서비스업체)
 - 주소: 112 Bush Road, Albany, Auckland
 - 전화: (+64- 9)448 1124
 - 이메일: yongkim@yongkim.co.nz
 - 홈페이지: www.yongkim.co.nz

V. Business 참고정보

1. 물가정보

(NZ\$ 1.00 = US\$ 0.87 / 2014년 6월 25일 기준)

구분	항목	가격 (NZ\$)
식품류	쌀 1kg (Sunrice Medium Grain Rice)	2.65
	계란 12개 (Size 7)	3.90
	소고기 등심 1kg	28.99
	돼지고기 등심 1kg	19.99
	우유 1 L (Anchor Standard Milk)	2.75
	식용유 1L (Simply Cooking Canola Oil)	5.58
	생수 1L (Pure Dew Water)	1.75
	맥주 (Heineken 330ml, 6pk)	14.99
	담배 1갑 (Marlborough)	17.50
	햄버거 (McDonald BigMac)	5.90
	김치찌개 1인분	12.00
의료비	의료보험료(4인 가족, 치과제외 Full Cover, 1년)	4000.00
	병원진료비 (의료보험 x, 몸살감기 내과초진)	75.00
	병원진료비 (의료보험 o, 몸살감기 내과초진)	30.00
차량관련	중형승용차 (현대 i45, 신차, 오토, 에어컨포함 기본사양)	42,990.00
	무연휘발유 1L (91 Octane)	2.21
	자동차 등록비	388.06
	자동차보험료 (2000cc신차, 운전경력 10년, 대인/대물커버 1년)	900.00 (의무보험 없음)
교통비	도심 1시간 주차료	12.00
	지하철 기본요금 (성인, 1구간)	1.90 (통근열차)
	시내버스기본요금	1.90
	택시 기본요금	3.0
통신비	시내전화 요금 (3분)	0.78
	국제전화 요금 (3분, 한국으로 걸 때)	1.35
	휴대전화 요금 (월 표준 1분)	1.39
	인터넷 월 사용료 (메가텔) 60GB	75.0
주택	아파트 월 임차료 (150sm, semi-furnished, 시내, 중상급)	3,300.00

구분	항목	가격 (NZ\$)
교육	초등 1년 수업료 (중상급)	없음(기부금200.00)
	중등 1년 수업료 (중상급)	없음(기부금300.00)
	고등 1년 수업료 (중상급)	없음(기부금600.00)
숙박	특급호텔 (5성급) 1박 정상요금 (싱글)	250.00
	중급호텔 (3성급) 1박 정상요금 (싱글)	120.00
임금/노무	대졸 초임 (대졸, 영어구사, 외국인회사 초임 월급여)	3,300.00
	생산직 초임 (학력무관 월 급여 초임)	2,800.00
	매니저급 급여 (인사담당 5년 경력 과장급 월 급여)	5,000.00
	주당 법정근무시간 (법적으로 지정되지 않음, 개인이 고용주와 협상)	-
	출산휴가일수	70일 (14주)
	연간 국경일수	11 일
	주5일 근무 여부	5일 근무
기타	드라이 크리닝 (정장 1벌)	33.50 (당일서비스)

주1: 식품류 가격은 오클랜드 시내에 위치한 대형 할인점 Countdown을 기준으로 함

주2: 호텔 요금은 성수기, 비수기에 따라 큰 차이가 있으며, 성수기요율은 정상요율과 할인요율의 중간 수준이라고 보면 무난함.

주3: 의료보험금은 개인별 건강상태, 나이, 흡연 유무에 따라 편차가 큼.

2. 취업유망분야 및 유의사항

가. 주재국의 인력수요 현황

2013년 이민성 통계발표에 의하면 외국인 취업 통계의 척도인 취업비자 승인 수치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민성 회계연도 기준 (매년 6월말) 2008/09년 17,500명이던 취업비자 승인전수는 2012/13년 15,700명 수준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다.

외국인 채용을 위해서는 영주권/시민권자가 아닌 외국인을 고용해야 하는 당위성을 증명하는 절차가 수반되며 뉴질랜드 부족 직업군이 아닐 경우, 자국민을 우선 채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외국인의 취업이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이다.

반면, 영국이나 인도 등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의 경우 취업이 기타 아시아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월한 편이다. 특히, IT 계통으로 인도인들의 취업률이 높은 편이고 영연방국인 영국과 호주 국민의 경우 뉴질랜드 취업에 대한 아무런 제약이 없다.

나. 한국인 취업 수요

뉴질랜드에는 약 3만명 이상의 한국교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대부분 소규모 자영업 또는 영세교민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형편이다. 뉴질랜드 산업의 특성상, 농목축의 1차 산업과 관광산업 위주로 기업이 분포되어 있어, 제조산업국가인 한국에서 온 인력이 제대로 취업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하다 보니, 많은 수의 한국인들이 현지인들이 꺼려하고 힘들어하는 식당 주방이나 어린이집 보모와 같은 직종에 많이 종사하고 있다.

다. 취업가능 유망분야

2014년 뉴질랜드 이민성에서 발표한 유망한 취업분야는 아래와 같다.

- 의료분야
 - 의사, 간호사, 조산사를 비롯한 의료인력은 만성인력부족으로, 특히나 한국 간호 인력의 현지취업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다.
 - 의료분야 취업을 위해서는 현지인수준의 영어실력 및 해당자격에 대한 경력이 필요하다.

- 의료기술 연구분야
 - 첨단 의료기기를 비롯한 뉴질랜드 건강관리 분야는 지속적으로 성장 중에 있어 이에 대한 인력충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 정보통신기술 분야
 - 뉴질랜드 전역에서 초고속 인터넷 구축사업을 비롯해 많은 IT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어 IT 고급인력의 수요가 높은 편이다. 특히, 시스템 통합, 비즈니스 분석, 보안 및 프로젝트관리자의 부족은 심각한 상황이다.

이외에도 농목축업, 건설, 교육, 엔지니어링, 과학, 천연자원개발, 관광, 금융 등의 분야에서 인력수요가 높은 편이다.

라. 취업환경

현지에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민성으로부터 워크비자를 취득해야만 합법적으로 근무가 가능하다.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의 경력 및 학력과 관련한 분야에서 고용제의를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 현 노동시장에서 그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뉴질랜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고용이 어렵다는 이민성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 복잡한 절차가 수반된다.

워크비자를 얻었을 경우 자녀의 학비는 영주권자와 똑같은 혜택을 받으며, 고용된 곳에서 1년 이상 일을 한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 시 유리하게 적용된다.

3. 비즈니스 에티켓

가. 복장

공식행사가 아니면 정장을 요구하지 않으며 초대를 받았을 때에는 공식 또는 비공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인사

상대방을 만났을 때는 악수를 하며, 친밀한 사이거나 현지인인 마오리족들이 아니고는 뺨에 키스하는 경우는 드물다. Mr, Mrs등은 공식적인 경우에 사용하며, 일반적으로는 First Name만 부른다. 면적에 비해 인구가 적은 관계로 처음 보는 사람끼리도 인사를 나누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외국인에게 초면에도 불구하고 반갑게 대하여 호감을 갖게 한 후 사기 범죄나 강도를 하는 사례도 드물기는 하지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다. 선물

뉴질랜드는 공공 기관 및 일반 기업 모두 규정 및 규칙에 따라 담당자의 판단 하에 일을 처리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수준의 청렴도를 자랑한다. 2013년 12월에 국제투명성기구 (Transparency International Secretariat, TIS)가 발표한 '2013년 부패인식지수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에 따르면 뉴질랜드는 100점만점에 91점을 받아 덴마크와 더불어 조사대상 177개국 중 1위를 차지하였다.

그래서 업무상으로 뇌물을 주는 것은 금물이며, 뇌물을 줄 경우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한 첫 상담에서는 부담스런 선물은 준비하지 않는 것이 좋다. 보통 선물을 하여도 회사에 반납하는 경우가 많고 잘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선물 받는 것에도 익숙하지 않다. 선물을 하고 싶을 경우에는 친숙해진 이후나 안면이 트인 이후에 한국 전통문양의 책갈피, 한복 입은 인형, 태극부채와 같이 한국 전통을 보여줄 수 있는 비싸지 않은 제품, 혹은 한국을 소개할 수 있는 영어 책자, 비디오테이프, 한국 노래 CD 등이 색다르면서 받는 사람도 부담이 없는 좋은 선물이 될 수 있다.

라. 약속

영국인의 국민성을 이어 받아 보수적인 성품을 지니고 있으며, 성격이 느긋하고 친절하나 자존심이 강하다. 개인주의 의식이 생활화되어 있으며, 질서 의식이 강하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몸에 배어 있다. 그러므로 약속은 최소한 1~2주 전에 미리 잡아 상대방이 스케줄을 조율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좋으며, 정해진 약속에 대해서는 시간을 엄수하고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 식사

서구인들은 가족 중심적 생활에 익숙하기 때문에, 퇴근 시간(주로 오후5시) 이후나 주말에 약속을 잡는 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삼가야 한다. 평일 저녁식사를 접대할 경우에도 당일 제안하는 것보다는 며칠 전에 초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 문화적 금기사항

영국 이주민에 의해 형성된 사회로 종교나 관습에 기초한 특별한 금기 사항은 없다. 영국 등 서구사회의 기본적 문화 예절과 상거래 관행이 통용되고 있어 상거래나 출장 시에 조심해야 할 특이사항은 없다.

다만, 뉴질랜드는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종교를 가진 이민 사회이므로 잘 알지 못하는 바이어와 대화할 때는 민감한 주제는 피하는 것이 좋으며, 미국식 발음에 익숙한 한국사람은 뉴질랜드식 영어를 알아 듣기 어려울 때가 있으므로 양해를 구하고 천천히 말해 달라고 부탁해도 실례가 되지 않는다

또, 손가락으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은 큰 실례이며, 상대방 이야기를 진지하게 경청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예의이다. 어른을 공경하는 관습은 없으나 무례하게 대해서는 안되며 특히 여성에 대해서는 대화나 행동에 조심해야 한다. 심지어 귀엽다고 여자 아이의 얼굴이나 신체를 만지는 등의 행위는 성희롱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4. 이주정착 가이드

가. 전화신청

1) 일반전화

각 지역의 Telecom 회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즉시 번호를 부여 받고 대부분 당일 사용이 가능하다. 요금은 전화선 임차료로 일정액이 부과되고 사용량에 따라 이용료가 정해지는데, Auckland 지역 내에서 일반 전화를 이용해 일반 전화 라인으로 통화할 경우 사용료가 무료이다. 그러나 일반 전화로 시외 전화, 국제 전화 또는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 경우 각각 정해진 사용료가 부과된다. 일반 전화로 국제 전화를 이용할 경우 비싼 요금이 부과되는데, 한국 식품점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국제전화카드를 이용할 경우 저렴하게 통화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한국 070 인터넷전화 보급이 교민사회를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다.

2) 휴대폰

주 통신사로 텔레콤(Telecom), 보다폰(Vodafone), 투디그리(2 Degree) 가 있는데, 각 회사별로 약정이나 계약조건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 요금제는 크게 선불제와 월 지불제로 나뉘지고 상세조건은 각 통신사 영업점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2013년 2월, 보다폰이 뉴질랜드 최초로 4G LTE 서비스를 개시하였고, 텔레콤이 10월에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투디그리 역시 2014년 7월에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3) 인터넷

텔레콤을 비롯 각 통신사별로 다양한 인터넷 상품을 구비하고 있다. 한국과 달리 사용용량에 따라 비용이 다른 종량제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무제한 요금제를 구비한 통신업체도 일부 있다. 2013년 현재까지 ADSL 방식이 주로 사용되나 최근 초고속 광케이블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고, 일부 완료된 지역도 있어서 UFB 라고 불리는 광랜인터넷 연결도 가능하다.

4) 주요 통신업체 리스트

- Telecom
 - 전화: 64-3) 374-0253
 - 홈페이지: www.telecom.co.nz
- Vodafone
 - 전화: 64-9) 355-2007
 - 홈페이지: www.vodafone.co.nz

- 2 Degree mobile
- 전화: 64-22) 200-2000
- 홈페이지: www.2degreesmobile.co.nz

- Megatel (교민업체)
- 전화: 64-9) 912-1200
- 홈페이지: www.megatel.co.nz

나. 정부등록

비자문제를 제외하고는 특별하게 정부에 등록하는 내용은 없다. 다만, 개인소득세신고와 관련하여 뉴질랜드 국세청(IRD)에 등록해서 IRD 번호를 받는 과정이 있다.

다. 자동차 구입

뉴질랜드에서는 대부분 수입된 중고차를 구입하여 이용한다. 중고차는 직접 주말 오전에 열리는 Turners Auction(www.turners.co.nz)에 참가하여 구입하거나 중고차 딜러 가게를 통해서 구입, 혹은 뉴질랜드 온라인장터(www.trademe.co.nz)에서 구입하는 법이 있다.

라. 운전면허 취득

1) 한국 운전면허의 뉴질랜드 운전면허 교환

2013년 5월 뉴질랜드 교통국은 한국을 뉴질랜드 운전면허시험 면제국가로 추가하는 육상교통규칙(Land Transport Amendment Rule) 개정안에 서명함으로써 뉴질랜드에 체류 또는 방문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2013년 7월 1일부터 한국 운전면허증을 뉴질랜드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여 현지에서 운전할 수 있게 되었다.

운전면허 교환내역

교환대상 한국면허증	교환가능 뉴질랜드 면허증	비고
1종: 상용, 보통, 특수 2종: 보통	Class 1 (적재 중량 6톤 이하 차량) Class 6 (원동기장치자전거)	1년 이상 체류 예정이며, 우리 운전면허 2년이상 보유자만, 뉴질랜드 FULL 면허로 교환 가능 (한국 면허 2년 미만 보유자는 이론시험만 면제되고 실기 시험 필요)
1종: 소형 2종: 소형, 원동기	Class 6 (원동기장치자전거)	

자료: 뉴질랜드 교통국(2013년 7월 발표)

또한, 뉴질랜드 체류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유효한 한국 면허증과 영사관에서 발급받은 면허증 공증 번역본을 가지고 있으면 뉴질랜드에서 운전이 가능하다.

2) 현지에서 뉴질랜드 운전면허 취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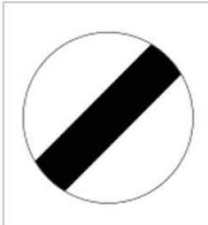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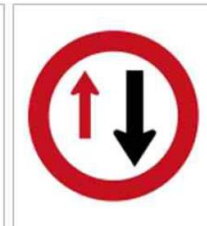
현지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면, 가까운 AA에 필기시험을 등록하여 시험을 쳐서 합격한 후, 제한면허(Learners Drive License)를 취득하고, 그 후 도로주행을 합격하면 최종적으로 운전면허(Full Drive License)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3) 운전시 유의사항

우측핸들에 좌측통행으로 한국과 정반대 방향이라 자칫하면 역주행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실제로 한국 유학생이 운전중에 역주행으로 사고가 난 경우가 있다.

제한 속도 위반시 위반속도에 따라 벌금이 차등 부과되며 벌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운전 중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과 영유아 카시트 장착은 필수다. 최근에는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이 금지되어 적발 시 벌금이 부과되니 조심해야 한다.

알아두면 유용한 뉴질랜드의 도로 표지판

				
Speed Limit Derestriction : 제한속도 규제 해제, 하지만 법적 최고 속도 100km/h 준수	Temporary Sign : 일시적 속도제한 표시	Stop Sign : 무조건 다른 차량에게 양보 Stop Sign를 적용	Give Way Sign : 오른쪽에서 오는 차량에게 양보, Give Way를 적용	Give Way at Roundabout : 라운드어바웃에서 Give Way 적용, 오른쪽 차량에 양보
				
No Stopping : 정차 금지	Keep Left : 좌측 유지	Pedestrians Only : 보행자 전용	Give Priority to Oncoming Vehicles: 상대 차량이 우선	Priority Over Oncoming Vehicles: 상대 차량이 양보



Keep Left Unless Passing:
추월하지 않는 경우 좌측 유지

No Stopping at times
prescribed: 표기 시간 중
정차 금지

Clear Way
: 표기 시간 중 주정차 금지
(보통 출퇴근 시간)

Clear Way Begins
: 클리어웨이 시작 시점

No Parking, Bus Stop
: 버스 정류소 주차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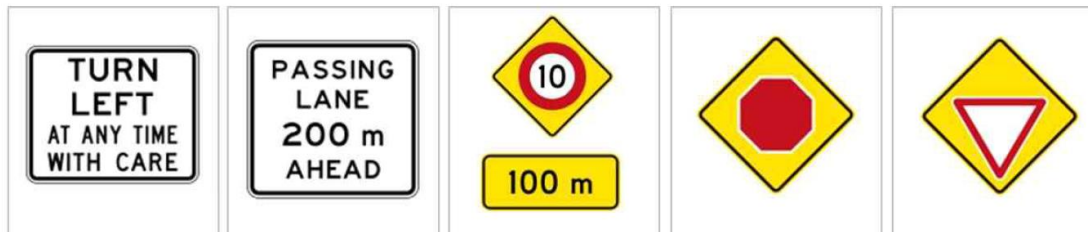
Parking Permitted 30mins
: 30분 주차 가능 (on
both sides)

Loading Zone Parking
5mins: 화물 적하장, 5분
주차 가능

Pay and Display Parking:
주차미터기에서 주차티켓
구매 후 대시보드에 진열

Parking for Authorised
Vehicles Only: 허가차량만
주차 가능

No Exit
: 출구 없음 (막다른 골목)



Turn Left at Any Time
With Care: 안전 확인 후
언제든지 좌회전 가능

Passing Lane Ahead
: 200m 전방에 추월선 있음

10km/h speed limit
: 100m 전방부터 10km/h로
운행

Stop Sign Ahead
: 전방에 Stop Sign 있음

Give Way Sign Ahead
: 전방에 Give Way 있음



Roundabout Ahead
: 전방에 라운드어바웃
있음

Watch for pedestrians
crossing
: 보행자 주의

Watch for children
crossing
: 어린이 보행자 주의

School Zone
: 스쿨존

Cross Walk Ahead
: 전방에 횡단보도 있음



자료: 주뉴질랜드 대한민국대사관 오클랜드분관

마. 은행구좌, 병원 등

1) 계좌 개설

은행 계좌 개설은 은행의 영업 시간에 언제라도 가능하며 임대 주택의 임대료, 전화, 전기, 가스 등의 사용료를 자동 이체할 수도 있다. 국민은행 오클랜드 지점(전화: 64-9-366-1000)을 이용하면 외국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으며, 그 외 ASB, BNZ, Westpac, The National Bank 및 ANZ 등의 은행에도 교민들이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2) 병원 이용

뉴질랜드에서는 GP(General Practitioner)에 등록을 하여 일차적인 의료행위를 받는 것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리하여 건강에 이상이 있을 시는 등록된 GP에 가서 진찰을 받은 다음, 의사의 진단 결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전문의 (Specialist)를 방문해야 할 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의약품의 처방전도 GP를 방문하여 받을 수 있으며, 보통 한 번 방문할 시 금액은 병원에 따라 대개 40달러에서 70달러 사이이다.

바. 주요 쇼핑센터, 특산물 등

뉴질랜드에서는 호주계 자본인 Westfield Shopping Mall이 각 지역마다 있어 쇼핑에 편리하다. 쇼핑몰 개장시간은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으나, 목, 금요일을 제외한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운영하며, 목, 금요일은 오후 9시까지 운영한다. 또한 주말에는 대개 오후 5시에 문을 닫는다. 특산품으로는 유제품인 버터, 분유 등과 벌꿀제품이 유명하며, 초록잎 홍합 등의 건강 보조 제품도 인기 있는 편이다.

5. 생활여건

가. 주거 여건

1) 주거 구입

주거 희망 지역의 부동산 업자를 접촉하여 매물을 찾는 것이 일반적이며 교민들이 부동산 회사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아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뉴질랜드의 대표적인 온라인 거래 사이트인 Trade Me(www.trademe.co.nz)를 방문해서 매물을 사전에 찾아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구입의 경우는 구매를 원하는 주택의 등기 상황이나 건축물 허가 상황 등에 대해서 미리 조사를 해야 한다. 등기소와 시청에서 주택에 대한 정보가 담긴 자료(LIM Report)를 구입 할 수 있으며 그 자료에 무허가 증축 또는 미등기 상태, 금융권의 저당권 설정 등 상세한 내용을 볼 수 있으므로 구입 전에 열람 하는 것이 안전하다.

주택 구매에는 수수료가 없으나 판매에는 주택가의 약 4~5% 정도의 수수료를 부담한다. 주택 구매 시에 등기는 직접 해도 무방하나 대부분의 경우 변호사를 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변호사는 사전 조사, 조건부 구매 및 쌍방간 대금 지불, 권리 등을 정리 하므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고려해 볼 만하다. 변호사 수입료는 비싸지 않으며, 일반 주택의 경우 800~1,300뉴질랜드달러 수준임. 구매 후 등기 이전 또는 조건 이행 등의 정리는 본인이 직접 해도 되지만 변호사에게 대행 의뢰도 가능하다.

2) 주거 임대

임대의 경우는 일반 단독 주택과 시내 아파트 등 선택의 여지가 다양하다. 통상 임대료는 주간 단위로 결정되어 2주마다 지불하는 것이 통례이지만 집주인과 협의해서 매월 지불할 수도 있다. 중개 수수료는 1주 임차료에 해당되는 금액에 상당하며, 보증금(Bond Fee)은 2~4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부 기관에 예치하여 일방(대부분 임차인)이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비용을 변제하는 데 사용한다. 집기와 가구를 구비한 임대 주택을 구할 수도 있으나 임대료가 더 비싸며, 입주와 전출할 때 가구와 집기의 상태를 점검해야 하고 손실이 있을 경우 변상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른다.

통상 입주 시 부동산 업자나 집주인에게 입주 전 주택 하자에 대해 미리 서면이나 사진으로 통보하여 이사 나올 때 부당한 수리 비용을 지불(원상복구)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것이 현명하다. 주택의 구매 때도 하자에 대해서는 미리 수리를 요청하거나 그에 상당한 비용을 거래 가격에서 할인 받는 것이 좋다.

2014년 6월 현재, 오클랜드를 중심으로 유입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주택보급이 부족하여 부동산가격이 급상승 중에 있어 집을 구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사전에 인식할 필요가 있다.

3) 주요 부동산 업체 리스트

- Barfoot and Thompson
- 전화: (+64-9) 307-6300
- Website: www.barfoot.co.nz

- Harcourts
- 전화: (+64-9) 300-3070
- Website: www.harcourts.co.nz

나. 교육 여건

1) 기본적인 여건

한국은 조기 영어 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관심이 높아 뉴질랜드로 이민 또는 유학을 오는 사례가 많다. 이민자의 경우는 초등, 중등 및 고등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키기 위해서는 학군제에 따라야 한다. 유학생의 경우 높은 수업료를 부담하므로 학군과 상관없이 본인이 원하는 학교에 입학이 가능하다. 이민 문호 개방 후, 자녀 교육에 관심이 높은 아시아계 이민이 늘면서 학군이 좋은 지역의 주택 가격이 기타 여건이 동등한 주변 지역에 비해 10% 이상 높게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

초, 중, 고등학교의 경우 공립학교는 의무교육으로 입학금과 수업료가 없지만(Work Visa 소유 주재원 자녀 포함, 일반 자비 유학생은 제외) 의무적으로 기부금(초등학교 약 200뉴질랜드달러, 고등학교의 약 350뉴질랜드달러 내외)을 내야 한다. 사립 학교의 경우에는 입학 시 입학허가 심사를 받아야 하며 상당한 학비(약 1만5,000~3만 뉴질랜드달러 내외)와 기부금을 지불해야 한다.

2) 뉴질랜드 교육의 개요

뉴질랜드는 수준 높은 교육을 실시하는 나라로 국제적인 평판을 얻고 있으며 해외 유학생들에게 훌륭한 교육 정보와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교육 제도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로 나뉘나 학년제와 학기제는 우리나라와 다르다.

초등학교의 경우, 단체입학이 없고 만 5세 생일이 지나면 개별적으로 입학한다. 고등학교까지는 4학기제로 운영이 되며 대학교는 3월 학기와 7월 학기가 있다. 유치원은 만 4세까지이며 만 5세에는 6년제 초등학교에 입학한다. 중학교는 2년, 고등학교는 5년이며 의무 교육이고, 대학교는 종합대학교와 교육대학, 기술 단과대학인 전문대학(Polytechnics) 등 세 종류로 나뉜다. 종합 대학교는 뉴질랜드 전국에 8 개가 있다.

전문 대학은 직업 교육과 기술 훈련을 가르치는데 전국에 약 25개가 있다.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으며 초보적인 교육에서부터 전문적 학위 과정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교육 과정은 1년 미만도 있고 4년에 걸친 학사 과정도 있으며 석사 학위를 수여하는 전문 대학도 있다. 교육 대학은 전국에 4개가 있으며 유치원 및 초등 및 중등교사를 모두 양성하며, 2~4년 과정으로 구분되어 있다.

뉴질랜드 학제와 한국 학제 비교

나이	한국	뉴질랜드		
		현재 학제	구학제	학제비교
5세 미만	유치원	유치원		유치원
5세	유치원	Year 1	Junior 1	Primary School (6년)
6세	유치원	Year 2	Junior 2	
7세	초등학교 1년	Year 3	Standard 1	
8세	초등학교 2년	Year 4	Standard 2	
9세	초등학교 3년	Year 5	Standard 3	
10세	초등학교 4년	Year 6	Standard 4	Intermediate (2년)
11세	초등학교 5년	Year 7	Form 1	
12세	초등학교 6년	Year 8	Form 2	High School (5년)
13세	중학교 1년	Year 9	Form 3	
14세	중학교 2년	Year 10	Form 4	
15세	중학교 3년	Year 11	Form 5	
16세	고등학교 1년	Year 12	Form 6	
17세	고등학교 2년	Year 13	Form 7	
18세	고등학교 3년	-	-	
	총 12년	총 13년		

자료: 뉴질랜드 교육부, 한국 교육부

3) 유아원/유치원

생후 만 3개월부터 탁아소(Day Care Centre)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정형화된 교과 과정은 없고 주로 놀이를 통하여 또래의 아이들과 어울리도록 지도한다. 만 3세부터는 유치원(Kindergarten)에서 교육 받을 수 있다.

4) 초·중등학교

어린이들은 만 5세부터 초등 교육을 시작하여 11세쯤 중학교에 입학한다. 고등학교는 만 13세부터 시작하며 다양한 교과목을 제공하는 400여 개의 공립 및 사립 학교(하이스쿨 혹은 칼리지)가 있다.

5) 대학 교육

종합 대학교는 모두 국립 혹은 공립으로 아래와 같다. 전공과 학위 등급에 따라 2년부터 6년까지의 과정이 있다. 17-18세의 고등학교 과정인 Year 13을 마치고 대학 입학 자격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거나 이와 동등 한 자격을 갖추었을 경우 원하는 학교의 학과에 입학 신청서를 제출, 서류 전형과 인터뷰를 거쳐 입학하게 된다.

뉴질랜드 국립대학교

학교명	특징
 The University of Auckland	○ 1883 년 설립 ○ 오클랜드 소재 ○ 뉴질랜드 최고대학 ○ 법률, 정치, 상대 우수
 Auckland University of Technology	○ 1895 년 기술학교로 설립 ○ 오클랜드 소재 ○ 2000 년 종합대학으로 승격 ○ 디자인, 스포츠매니지먼트 우수
 The University of Waikato	○ 1964 년 설립 ○ 해밀턴 소재 ○ 과학, 기술, 경영학 우수
 Massey University	○ 1927 년 설립 ○ 오클랜드와 팔머스턴 노스 두군데 캠퍼스 운영 ○ 농업, 원예, 수의학 우수

학교명	특징
 Victoria University	○ 1897 년 설립 ○ 수도인 웰링턴 소재 ○ 행정학, 법학, 정치학, 사회학 우수
 Lincoln University	○ 1878 년 설립 ○ 크라이스트처치 소재 ○ 원예와 농업 우수
 University of Otago	○ 1869 년 설립 ○ 더니든 소재 ○ 의학, 치의학 등 건강과학 우수
 The University of Canterbury	○ 1873 년 설립 ○ 크라이스트처치 소재 ○ 화학, 물리학, 공학 부문 우수

다. 의료 여건

자국의 영주권, 시민권자에는 전면 무상으로 공공의료이 제공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뉴질랜드의 의료여건은 좋은 편이 아니다. 장기적인 의사와 병원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의료 장비 또한 부족하다. 그리하여 공공 의료시설에서 혜택을 받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비싼 금액을 내서 사설 전문의(Specialist)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다. 특히 내시경, 치과 치료 등의 경우는 한국에 비해 터무니 없이 비싼 수준이어서 국민 대부분은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해 도움을 받고 있다.

라. 교통 및 통신 여건

1) 교통 여건

뉴질랜드의 대중교통으로는 버스와 철도를 들 수 있다. 하지만 넓은 나라에 비해 인구가 적어, 비용 문제로 대중교통이 크게 발달하지 못하고 있다. 시내 주변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버스나 철도를 이용해 출퇴근하기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어서 뉴질랜드 사람들은 자가용을 많이 이용한다.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는 교통체증은 미미한 편이다.

2) 통신 여건

뉴질랜드에는 Telecom과 Vodafone의 두 개의 큰 통신회사가 통신 서비스업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 광랜 케이블이 도입되고 있는 단계로, 인터넷 사용 여건은 한국에 비해 많이 미력하다.

마. 여가 여건

지역별로 럭비 경기장, 스포츠 센터, 수영장, 테니스장 등 사회체육 시설을 갖추고 있어 스포츠 활동을 하기에 좋으며, 동네 별로 골프장 있어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가까운 숲이나 공원, 해변 등지에서 산책, 피크닉, 자전거 타기 및 요트, 윈드서핑, 제트스키, 낚시 등 다양한 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다. 캠프 장소도 많아 레저 활동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바. 기타 여건

1) 기후

남반구에 위치하고 있어 계절이 한국과 반대이다. 온화한 해양성 기후이고 4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여름과 겨울의 기온 차가 크지 않다. 그러나 하루에도 4계절이 있다고 할 정도로 날씨가 변덕스럽고, 겨울(6~8월)이 우기라서 체감 온도가 실제 온도보다 낮다.

일반 주택은 한국처럼 난방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평균 최저 기온이 영상 5도 안팎인데도 불구하고 집안 내부에서는 뼈 속까지 시리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전기 히터나 가스히터를 사용해야 할 정도이며 한국인의 경우 전기장판 이용이 보편화 되어 있다.

9월 하순 이후 점차 날씨가 온화해지고 쾌적해져 아침 저녁 체감 온도가 약간 떨어지는 것을 제외하고는 생활 및 현지 출장 등에 아주 쾌적하다. 또한 매년 9월 말부터 익년 4월 초까지는 일광 절약제가 시행되어 낮 시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오후 5시 퇴근 시간 후에도 여가활동 및 취미활동이 활발하다.

뉴질랜드는 서안 해양성 기후로 서풍이 불고 북동에서 남서의 방향으로 산맥이 위치해 있어 동서의 강수량 차이가 매우 크다. 최대 상업 도시인 오클랜드는 겨울에도 기후가 온화한 편에 속하며 북섬 하단에 위치한 수도 웰링턴은 바람이 몹시 강하다. 넬슨 지역은 일조 시간이 가장 길고, 남섬의 중심도시인 크라이스트처치는 연간 강수량이 가장 적은 특성을 보여 준다.

주요 도시의 기후

구분	여름(1월)		겨울(7월)	
	최저	최고	최저	최고
WHANGAREI	15.4	24.4	7.2	15.1
AUCKLAND	15.3	23.3	7.1	14.5
HAMILTON	12.8	23.8	3.9	13.6
ROTORUA	12.7	23	3.1	12.1
GISBORNE	13.6	24.9	4.6	14.1
NEW PLYMOUTH	13.6	21.8	5.6	13.3
PALMERSTON	13.4	22.4	4.7	12.5
WELLINGTON	13.4	20.3	6.3	11.4
NELSON	13	22.4	1.6	12.4
CHRISTCHURCH	12.2	22.5	1.9	11.3
TIMARU	11.3	21.1	1.2	10.1
MILFORD SOUND	10.4	18.9	1.3	9.1
QUEENSTOWN	10.7	22.6	0.1	8.2
DUNEDIN	11.5	18.9	3.2	9.8
INVERCARGILL	9.4	18.6	0.9	9.5

자료: NIWA (National Institute Of Water & Atmospheric Research)

2) 시차 및 근무 시간

한국과의 시차는 KST+3(또는 4)시간이며 한국 시각 12:00가 뉴질랜드 시간으로 15:00 (또는 16:00)이다. 이는 매년 9월 마지막 일요일부터 익년 4월 첫째 주 일요일까지 일광 절약제(Daylight Savings)를 실시하기 때문인데, 이 기간에는 한국과의 시차가 4시간이 된다.

사기업은 물론 관공서의 근무 시간은 09:00~17:00가 일반적이고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한다. 은행의 경우 근무 시간은 업무 특성상 09:00~16:30이다. 상가는 10:00~18:00까지 영업하는 곳이 대부분이었으나 아시아계 이민자들의 유입이 증가하고 이들이 영업 시간을 연장하는 경우가 많아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대형 슈퍼마켓 체인점 등은 통상 밤10시까지 운영을 하나 소재 지역에 따라 24시간 운영 하는 곳이 생겨나는 등 다양한 업태가 등장하는 추세이다. 정부 회계 연도는 7월 1일부터 익년 6월 30일까지이며 기업의 회계연도는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이다. 예외적으로 일부 기업은 1월 1일 ~ 12월 31일 혹은 7월 1일 ~ 6월 30일을 택하기도 한다.

근무 시간

관청	월-금	08:30 - 16:30
은행	월-금	09:00 - 16:30
상업권	월-금	09:00 - 17:00
대형쇼핑몰 (Westfields)	월-수/토	09:00 - 18:00
	목/금	09:00 - 21:00
	일	10:00 - 17:30

3) 공휴일

2014년도 뉴질랜드의 휴일은 아래 표와 같으며 신정연휴, Waitangi Day와 Anzac Day 및 크리스마스, Boxing Day는 요일에 관계 없이 그날이 휴일이다. 신정연휴, 크리스마스, Boxing Day가 토요일 혹은 일요일일 경우 다음주 월요일 또는 화요일까지 이월된다. 나머지 공휴일은 금요일 또는 월요일로 지정된다.

역사가 짧아서 전반적으로 공휴일은 많지 않은 편이며 특히 하반기에는 휴일이 3일에 불과해 10월 말 노동절과 12월 크리스마스 시즌이 전부이다.

2014년 뉴질랜드 공휴일

공휴일 명	공휴일	공휴일 내용
New Year's Day	1월1일-1월2일	신정 연휴 (2일)
Auckland Ann. Day*	1월 27일	오uckland 기념일(오uckland만 휴일임)
Waitangi Day	2월 6일	영국-마오리 원주민간 평화조약 체결일
Good Friday-Easter Monday	4월 18일~4월21일	부활절연휴
ANZAC Day	4월 25일	현충일
Queen's Birthday	6월 2일(6월첫째 월요일)	영국 여왕 탄신일
Labour Day	10월 27일 (10월넷째 월요일)	노동절
Christmas Day	12월25일	크리스마스
Boxing Day	12월26일	크리스마스 익일이나 토요일인 경우 다음 월요일로 이월

주: 이외에 도시별로 기념일이 다름 (오uckland는 1월27일)

전반적으로 공휴일이 많지 않아 특별한 출장 지양 기간은 없으나 12월 중순부터 1월 중순 까지 한 달 동안은 성탄절을 포함한 연말연시인 관계로 대부분의 기업, 관공서가 휴무에 돌입하고, 의사결정권자들의 접촉은 물론 정상적인 업무추진도 어렵다. 이외에 지역별로 해당 지역만 휴일인 경우도 있다.

4) 생필품, 한국식품 조달

식품이나 생활 용품은 각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대형 슈퍼마켓 (Pak'n Save, Count Down, New World)이나 잡화점 (The Warehouse, K-Mart 등)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다. 대부분의 매장이 저녁 7시에서 10시까지 매일 영업을 하고 있다.

한국인이 필요로 하는 채소, 양념 및 기타 국산 제품은 한국인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나 가격은 국내보다 약간 비싼 편이다. 한국으로부터 다양한 포장 김치가 수입되고 있으며, 오uckland에는 교민이 운영하는 김치 제조업체도 있다.

오uckland에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슈퍼마켓(매점)이 수십여 개 존재하며 라면을 비롯하여 고추장, 된장 등 대부분의 한국 식품을 구입할 수 있다. 해밀턴, 웰링턴, 크라이스트처치, 로토루아 지역에는 각각 3~5 곳의 한국 식품점이 있고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오uckland 보다 불편하기는 하지만 조달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

식당의 경우도 지역별로 많이 산재해 있는 데 오uckland 시내에만 약 50여 개 이상의 한국 식당이 있어 원하는 종류의 음식을 맛볼 수 있다. 시내 일부 지역(Queen Street)에는 밀집 된 한국 식당가도 있다.

5) 특사 운송 회사 가격 및 사용 방법

가장 손쉽게 특사 운송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전국에 지점망을 가지고 있는 NZ Post를 이용하는 것이며 TNT Express 등도 이용할 수 있다

□ NZ Post 연락처

- 웹사이트: www.nzpost.co.nz
- 국제 특사운송 문의 무료 전화번호: 0800 736 353

□ 가격

Weight	Australia (Zone A)	South Pacific (Zone B)	East Asia & North America (Zone C)	UK & Europe (Zone D)	Rest of World (Zone E)
0.5kg	\$20.40	\$36.40	\$41.70	\$42.60	\$52.10
1kg	\$26.20	\$38.00	\$52.80	\$52.30	\$70.40
Over 1kg	Documents over 1kg are charged the same as merchandise pricing. Prices are available on the Rate Finder.				

주: 1kg 내외의 서류 발송 시 (1~5일 이내 도착), 한국은 Zone C에 해당

자료: New Zealand Post

6. 취항정보

가. 직항 및 3국 경유

인천과 오클랜드를 연결하는 노선에 대한항공이 1993년부터 취항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 아시아나항공이 인천-오클랜드 노선에 취항하였으나 2005년 3월로 운항을 중단하였다. 2014년 6월, 한국-뉴질랜드간 직항노선을 운항중인 항공사는 대한항공이 유일하다.

대한항공 운항스케줄 (2014년 6월 기준)

비수기 운항스케줄

• 서울 (서울/인천) → 오클랜드 항공편 스케줄 목록

편명	출발일자 : 2014년 06월							출발시간	도착시간	경유	기종
	23일 (월)	24일 (화)	25일 (수)	26일 (목)	27일 (금)	28일 (토)	29일 (일)				
대한항공 (KE129)	✈		✈		✈	✈		16:50	07:10+1	-	BOEING 777-200

*출발시간, 도착시간의 +1, -1은 날짜 변경을 의미합니다.

• 오클랜드 → 서울 (서울/인천) 항공편 스케줄 목록

편명	출발일자 : 2014년 06월							출발시간	도착시간	경유	기종
	23일 (월)	24일 (화)	25일 (수)	26일 (목)	27일 (금)	28일 (토)	29일 (일)				
대한항공 (KE130)		✈		✈		✈	✈	08:45	17:45	-	BOEING 777-200

*출발시간, 도착시간의 +1, -1은 날짜 변경을 의미합니다.

성수기 운항스케줄

• 서울 (서울/인천) → 오클랜드 항공편 스케줄 목록

편명	출발일자 : 2014년 12월							출발시간	도착시간	경유	기종
	22일 (월)	23일 (화)	24일 (수)	25일 (목)	26일 (금)	27일 (토)	28일 (일)				
대한항공 (KE129)	✈	✈	✈	✈	✈	✈	✈	17:00	08:10+1	-	BOEING 747-400

*출발시간, 도착시간의 +1, -1은 날짜 변경을 의미합니다.

• 오클랜드 → 서울 (서울/인천) 항공편 스케줄 목록

편명	출발일자 : 2014년 12월							출발시간	도착시간	경유	기종
	22일 (월)	23일 (화)	24일 (수)	25일 (목)	26일 (금)	27일 (토)	28일 (일)				
대한항공 (KE130)	✈	✈	✈	✈	✈	✈	✈	08:55	17:50	-	BOEING 747-400

*출발시간, 도착시간의 +1, -1은 날짜 변경을 의미합니다.

자료: 대한항공

3국을 경유하는 항공사로는 일본 및 중국을 경유하는 에어뉴질랜드, 호주를 경유하는 아시아나항공이 있으며, 그 외에 말레이시아항공, 일본항공, 중화항공, 중국남방항공, 콰타스항공, 싱가포르항공, 케세이퍼시픽이 오클랜드공항에 취항한다.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공항에는 싱가포르항공이 취항하고 있다.

나. 취항 항공사 리스트

한국 왕복 현지 취항 주요 항공사

항공사	홈페이지	전화번호
Korean Air	www.koreanair.com	(+64-9) 914 2000
Asiana Airlines	www.flyasiana.com	(+64-9) 308 3359
Air New Zealand	www.airnz.co.nz	(+64-9) 336 2400
Singapore Airlines	www.singaporeair.com	(+64-9) 303 3209
Qantas Airways	www.qantas.com.au	(+64-9) 357 8900
Cathay Pacific Airways	www.cathaypacific.com	(+64-9) 379 0861
Malaysia Airlines	www.malaysiaairlines.com	(+64-9) 373 2741
China Southern Airlines	www.flychinasouthern.com	(+64-9) 302 0666
China Airlines	www.china-airlines.com/en/	(+64-9) 256 8088

자료: Auckland Airport(www.auckland-airport.co.nz)

다. 공항에서 시내까지 가는 방법

1) 공항 버스 이용

뉴질랜드의 모든 공항에는 공항버스가 운행된다. 따라서 숙소 또는 여행지의 중심 상가 지역에서 공항 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오클랜드의 경우, 공항을 왕복하는 에어버스는 시간대 별로 10에서 15분 마다 한 대씩 24시간 운행하여, 기착지에 상관없이 편도 요금은 16뉴질랜드달러이다. 시내 중심지까지는 40분에서 1시간 가량 소요된다. 크라이스트처치의 경우, 기착지 별로 요금은 5뉴질랜드달러 내외이며, 시내 중심지까지 25분 가량이 소요된다.

2) 택시 이용

공항에서 시내 중심지까지 택시로 이동할 경우, 도로 상황 및 이용 택시 회사에 따라 시간과 요금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오클랜드 국제공항에서 시내까지는 약 80뉴질랜드달러이며 시간은 교통 상황에 따라 약 35-60분이 소요된다. 크라이스트의 경우, 시간은 15분에서 20분, 요금은 50뉴질랜드달러 내외이다. 클랜드 대표 택시회사는 번호는 300-3000이며, www.cooptaxi.co.nz 에서 자세한 정보를 찾아 볼 수 있다.

3) 셔틀 이용

뉴질랜드 공항에서 Super Shuttle 미니밴이 운행된다. 사전에 온라인으로 출발 공항과 도착지역을 예약해서 이용할 수 있어 버스보다 편리하며 택시보다 저렴하다. 오클랜드공항에서 오클랜드 시내중심지까지 1인 요금은 35뉴질랜드달러이며 2인이상일 경우 가격이 할인된다. 같은 방향의 승객들이 합승하여 운행하기 때문에 시간은 택시보다 시간이 더 소요되나 목적지에 바로 하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외곽지역에 거주하는 승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편이다. www.supershuttle.co.nz에서 자세한 정보확인 및 예약이 가능하다.

7. 출입국 및 비자제도

가. 출입국

뉴질랜드 여행에는 입국 후 출국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상 사용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 양국간 무비자 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3개월 미만 체류희망 시에는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무비자 협정이 체결되었다고 해서 사전 준비 없이 입국하려다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무비자 입국 시에는 귀국 항공권을 필히 소지해야 하며, 입국 신고서 작성 시 여행 목적을 명확히 기재하고 일정의 현금이나 카드 등을 제시하여 관광객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뉴질랜드 이민국은 테러 분자의 입국을 봉쇄하는 등 자국 안보를 위해 입국 심사를 강화하고 있는데,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고 여행 경비가 충분치 못해 불법 취업이나 불법 체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무비자 협정 국가의 국민이라 하더라도 입국을 거부하고 있다. 왕복 항공권이 없는 경우나 카드나 충분한 현금을 소지하지 않은 채 화려한 복장을 하는 경우 등도 오해를 살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이나 이민성(www.immigration.govt.nz)를 통해 보다 상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서울시 중구 정동 정동빌딩 8층 / 전화: (02) 3701-7700)

나. 비자(사증)

□ 입국방법

뉴질랜드 입국심사 시에 체류목적, 기간, 체류지주소등이 기입된 입국카드를 작성하며 입국 심사관에 따라 귀국항공편 또는 소지금액이나 신용카드 등을 제시할 것을 요구 받을 수 있다. 한편, 뉴질랜드에서의 공무, 회의참석, 사업상의 협상이나 계약 같은 일시적인 활동은 3개월간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다.

□ 사증발급 및 체류절차

비자 종류로는 방문비자 외에 학생비자, 취업비자, 영주권비자 등이 있으며 뉴질랜드로의 입국 목적에 따라 발급받아야 하는 비자의 종류가 달라진다. 이민을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에는 기술이민이나 투자이민의 카테고리에 맞는 입국 절차를 밟아야 하며, 현지 주재원으로 파견될 경우에는 워크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해야 한다.

뉴질랜드 비자는 호주 비자와 마찬가지로 매우 까다로운 편이며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도 매우 긴 편이다. 따라서 뉴질랜드로의 입국이 결정되면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을 접촉, 비자발급 절차를 빨리 밟는 것이 좋다.

자세한 사항은 뉴질랜드 이민성 웹사이트 (www.immigration.govt.nz)를 참조하면 되지만 이미 동일한 비자를 발급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 투자이민 또는 사업비자

뉴질랜드 투자이민비자의 경우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150만 뉴질랜드달러를 투자하고 영어점수 등 몇 가지 조건이 붙는 비자와 1,000만 뉴질랜드달러를 투자하고 기타조건 없이 획득할 수 있는 투자비자가 있다.

사업비자의 경우 기존의 장기사업비자가 재도가 폐지되고 2014년 3월부터 사업 취업 비자(Entrepreneur Work Visa)제도가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기존 비자와 달리 점수제로 비자를 발급하며 경력과 고용창출여부, 투자금액, 나이 등을 심사하여 일정기간 뉴질랜드에서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주어지는 비자다.

자세한 사항은 뉴질랜드 이민성 웹사이트(www.immigration.govt.nz)를 참조하면 되고, 한국인 이민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면 편리하다.

□ 동반비자

워크비자나 투자이민비자, 사업비자의 경우 동반가족 모두 체류가 가능한 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자녀의 초 중 고 공립학교학비가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다. 체류

□ 개요

3개월을 초과하는 장기 체류(취업 및 유학)의 경우에는 한국 또는 제3국에서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하며 취업 비자 없이 취업할 수는 없다. 무비자(방문 비자)로 3개월 입국 시에는 3개월이 만료되기 전에 연장할 수 있으며 방문비자로는 최대 9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다.

□ 체류자격변경허가

체류기간이나 체류자격의 변경을 원할 경우 뉴질랜드 이민성을 통해 기간연장 또는 변경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일정 수수료 및 기간이 소요된다. 특히, 이민성에서 심사를 위해 상당한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으니 미리 준비해두는 게 유리하다.

□ 재입국허가

2011년 11월이후, 모든 비자에는 재입국허가 내용이 기입되어있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나, 일부 비자의 경우 해당내용이 누락될 수 있으니 출국 전에 미리 확인하도록 한다.

□ 체류지 변경신고

2014년 6월 기준, 뉴질랜드에서는 체류지 변경과 관련한 어떠한 신고 및 허가조항이 없다.

□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2014년 6월 기준, 뉴질랜드에서는 외국인등록조항이 없다.

□ 자격 외 활동허가

획득한 비자의 체류자격 이외의 활동이 필요한 경우 이민성에 조건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 워크비자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나, 학생비자인 경우에는 2014년부터 바뀐 규정에 의해 뉴질랜드 교육청(NZQA, New Zealand Qualifications Authority) 1등급 학교를 14주 이상 등록하게 되면 주당 20시간의 파트타임 근무가 가능하다. 2등급 이하의 학교 등록자의 경우 6개월이상 등록에 IELTS 영어성적표 5.0 이상을 제출하면 주당 20시간 취업허가서가 발급된다.

□ 근무처의 변경 및 추가신고

워크비자소지자의 근무지 또는 고용주가 변경될 경우 한달 이내에 이민성에 조건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라. 출입국 수속 및 세관 검사

뉴질랜드는 농업과 목축업 등 1차 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환경보존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농산물에 영향을 미칠 만한 병원이나 해충 등의 전염을 방지하고 유해한 물질을 반입하지 못하도록 엄격한 조사를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비즈니스 출장자나 여행객들이 소지한 식품과 동식물 관련 제품에 대해 세관 검사를 지나칠 정도로 까다롭게 진행하고 있으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골프화의 경우 사전에 물로 세척해서 흙이 묻어 있지 않아야 한다.

식품이나 목공예 제품, 골프화 등은 도착 전 기내에서 신고 대상 물품이 있다고 신고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고 입국하려다가 X-레이 검사에서 적발되면 미신고에 따른 불이익(정밀 심사 및 벌금 부과)까지 당하게 된다.

반입 물품 허용 한도는 담배 200개피(10갑), 위스키 1,125ml 등으로 제한되는데, 보다 자세한 정보는 뉴질랜드 관세청(www.customs.govt.nz)이나 1차산업부 산하 동식물 검역기관(www.biosecurity.govt.nz)에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출국시 공항세는 별도 납부하지 않는다.

한편, 뉴질랜드 정부는 2014년 10월부터 면세 담배 반입 허용한도를 2갑으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뉴질랜드로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들의 면세 담배 반입 허용 한도가 200개피(10갑)에서 50개피(2갑)로 줄어들고 그 이상의 경우 관세와 GST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8. 관광, 호텔, 식당, 통역

가. 추천 관광 명소 안내

뉴질랜드는 아름다운 자연 조건과 기후 그리고 관광 자원을 바탕으로 한 천혜의 관광 국가로서, 2012년 256만 명의 외국 관광객이 방문했으며 2013년 272만 명이 방문하여 전년동기대비 6% 증가하였다. 우리나라 관광객은 4만 명 이상으로 전체 국가 중 7위를 차지했다. 한국에서도 많은 여행 상품이 있고 현지에도 많은 정보가 무료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관광 명소나 여행에 필요한 정보는 쉽게 입수할 수 있다.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북섬의 오클랜드와 로토루아에서 1박 정도를 하고 남섬까지 관광을 하고 있다.

1) 북섬

□ 노스랜드/ 베이오브 아일랜드 (Northland/Bay of Islands)

- 파이히아(Paihia)
- 품격 높은 숙박 시설과 특유의 고급 해산물 음식점이 즐비한 Paihia는 베이오브 아일랜드의 자랑이다.
- 베이오브아일랜드의 거점으로 사용되는 파이히아에서는 유람선 이나 보트, 선박 등을 이용한 여행이 유명하다.



- 와이탕이(Waitangi)
- 와이탕이 조약으로 유명한 와이탕이는 뉴질랜드의 역사에 깊은 관련이 있다. 1840년 이곳에서 원주민인 마오리족과 영국 왕실이 평화협정조약을 체결했으며 이로 인해 뉴질랜드는 영국의 식민지가 된 바 있다. 조약의 체결 장소였던 트리티 하우스(Treaty House)는 이 지역의 명소이다. 여러 마오리 부족을 대표하는 조각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전통 마오리 공회당(마라이: Marae)도 있다.
- 러셀 (Russell)
- 뉴질랜드 최초의 수도이며 파이히아에서 배편으로 20분 정도 소요된다. 19세기 초 선원들과 상인들의 특이한 행동으로 한때 남태평양의 지옥이라고 불리기도 했던 러셀은 정착 초기의 건축 양식을 지닌 건물들과 전경으로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
- 케리케리 (Kerikeri)
- 파이히아에서 북쪽으로 약 23킬로미터 떨어져 있다. 감귤 및 키위 농장과 공예품의 중심지로 도자기나 직물과 같은 특산품으로 유명하다.

베이오브아일랜드는 낚시, 다이빙, 요트, 카약, 돌고래와의 수영 등 바다에서 여러 가지 레저와 스포츠를 즐길 수 있으며 금빛 모래 사장은 휴식을 취하며 선텐하기 좋다. 대부분의 유람선 크루즈는 파이히아 항에서 출발하며 아름다운 섬들과 여러 종류의 바다 새들, 바다표범, 돌고래를 볼 수 있는데 유람선 크루즈는 종류에 따라 1시간에서 종일 코스가 있다.

□ 오클랜드(Auckland)



뉴질랜드 최대 도시로 다양한 관광 소재가 있는 상업 도시이며 주로 다음과 같은 관광 대상이 있다. 아래와 같은 관광 코스를 총괄하여 반나절 혹은 하루 관광이 가능한 다양한 상품들이 있다.

(아래 표기된 가격은 시기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음.)

○ 오클랜드 주변의 관광지

- Auckland Domain
- 전쟁기념 박물관
- 식물원(Botanic Garden)
- 동물원(Auckland Zoo)
- Western Springs Lakeside
- One Tree Hill
- 콘월 공원(Cornwall Park)
- 오클랜드 천문대 (Auckland Observatory)
- 에덴 동산(Mt. Eden)
- 켈리탈튼 수족관(Kelly Tarton's Underwater World & Antarctic Encounter)
- 해양 박물관 (Maritime Museum)
- 아트 갤러리 (Auckland City Art Gallery)
- 파넬 스트리트 (Parnell St)
- 레인보우 엔드 어드벤처 공원(Rainbow's End Adventure Park)
- 데본 포트 (Devon Port)
- 타마키 드라이브(Tamaki Drive)
- 해상페리(Ferry)
- 반나절 관광
 - 하버 브릿지(Harbour Bridge) → 에덴동산 → 전쟁박물관(마오리쇼 매일 11:00, 13:30)
 - 로즈가든(Rose Garden) → 켈리탈튼 수족관 → 미션베이 해변도로(총 3시간 소요)
- 버스 투어: 매일 09:00 - 16:00 1시간 간격으로 출발
- 예약 전화: Downtown Air Terminal (전화 525-8088) 또는 한국인 여행사

□ 로토루아

원주민인 마오리족의 문화가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로토루아 (마오리 언어로 Roto-호수, Rua- 2번째의 합성어임)는 화산 지대 중심으로 온천, 간헐천 등이 유명하다.



○ 당일 투어:

매일 08:00 오uckland Downtown Terminal Air Terminal 출발하여 저녁 7시에 돌아오는 당일 일정이 있다.

(약 135뉴질랜드달러)

- 예약 전화: Downtown Air Terminal (전화 525-8088) 또는 한국인 여행사

□ 와이토모 동굴

동굴 속 천장에 가득 찬 수만 마리의 반딧불이 빛을 발산하고 있어 한밤의 은하수를 보는 것과 같은 감동을 안겨 준다.

○ 당일 투어: 매일 08:00에 오uckland Downtown Air Terminal에서 출발하여 저녁 7시에 돌아온다. (와이토모 동굴과 로토루아 동시 관광 145뉴질랜드달러)

- 예약 전화: Downtown Air Terminal (전화 525-8088) 또는 한국인 여행사

추천 당일 코스

로토루아	아그로돔 양쇼 - 와카레와레와 마오리 민속촌 및 간헐천 - 진흙열탕 - 로토루아 호수- 유황 온천욕	어른 105뉴질랜드달러 어린이 89뉴질랜드달러
베이오브 아일랜드	카우리 조림지 - 왕가레이 폭포 - 돌고래 크루즈 - 와이탕이 전망대 - 카우리 시계 박물관	어른 129뉴질랜드달러 어린이 109뉴질랜드달러
코로만델해안	템즈금광체험 투어 - 와카테테베이 - 엘가리무 베이 - 스론톤베이 - 타푸 - 코로만델 - 워터웍스	어른 129뉴질랜드달러 어린이 109뉴질랜드달러

추천 1박2일코스

로토루아/ 타우포 타조농장	타우포후카폭포 - 번지점프장 - 타우포호수 - 지열발전소 타조농장 - 아그로돔양쇼 - 와카마오리민속쇼 - 레드우드삼림욕 - 거버먼트가든 - 로토루아 호수- 유황 온천욕	어른 249뉴질랜드달러 어린이 199뉴질랜드달러
-------------------------------	--	-------------------------------

베이오브 아일랜드	카우리조림지 - 왕가레이폭포 - 돌고래크루즈 - 와이탕이 전망대 - 90 마일 비치	어른 259뉴질랜드달러 어린이 229뉴질랜드달러
코로만델	타이루아 - 조개잡이-Hot water Beach - 위티항아 - 쿡스비치 - 크루즈탑승 -기암절벽의 머큐리섬 투어 - 코로만델 - 워터웍스- 타푸- 와이오무- 와카타베이- 스론톤베이 - 앵거리무베이 - 템즈	어른 259뉴질랜드달러 어린이 229뉴질랜드달러

□ 기타

타우포 호수, 뉴플리머스, 코로만델 반도, Bay of Island 등이 빼어난 자연 경관을 자랑한다. 예약 및 문의 전화는 Downtown Air Terminal(전화: 64-9-525-8088) 또는 한국인 여행사로 하면 된다.

2) 남섬

□ 크라이스트처치



크라이스트처치는 남섬 동해안 캔터베리 평야 중앙에 위치한 뉴질랜드 3대 도시이자 남섬 최대 도시로 인구는 약 36만 명이다. 고딕 양식의 대성당을 포함한 웅장한 유럽풍의 건축물을 보유하고 있는 일명 정원 도시(Garden City)이다.

2011년 캔터베리 대지진으로 인해 도시 곳곳에 복구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 마운트쿡 (Mt. Cook)

남섬의 알프스라고 불리는 마운트쿡 산(3,767m)과 3,000m 급의 수 많은 봉우리 및 태즈먼, 마티슨, 프란츠조셉, 폭스 등의 빙하(헬기 관광 가능), 푸카키 호수, 테카포 호수, 퀸스타운, 밀포드 사운드 등 수려한 경관을 관광하고 스키를 즐길 수 있다.

□ 퀸스타운 (Queenstown)

19세기 초 금광이 발견되기 시작하여 개발되었다. 근처에는 수준 높은 설비와 규모를 자랑 하는 밀부룩 골프 리조트가 있으며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라운딩한 것으로 명성이 높다. 뉴질랜드 관광의 메카로 불리며 아름다운 와카티푸 호수를 끼고 있으며 리마커블스 산맥을 마주하고 있다.



어드벤처 스포츠의 중심지로 급류타기, 제트보팅과 글라이딩은 물론 낙하산 타기 등을 즐길 수 있다. 또 4군데의 번지 점프 장소가 있으며 Kawarau Bungy Centre가 원조를 이루고 있는데 높이는 43미터에서 102미터까지 다양하다. 겨울에는 스키를 즐길 수 있으며 대표적인 스키장으로는 코로넛 피크, 리마커블 스키장 등이 있다.

□ 기타

전통적인 스코틀랜드 풍의 건축물을 자랑하는 교육 도시 더니든과 최남단의 도시 인버카길 등의 관광지가 있다.

○ 한국인 여행사

- 뉴질랜드 호주투어: 64-9)307-1234
- 좋은 여행사: 64-9)300-3720
- 레인보우 관광: 64-9)377-1061
- 하나투어: 64-9)300-3040

이외 약 10개 이상의 여행사가 있으며 이들 여행사를 통하면 호텔 및 다른 예약들을 기준 가격보다 저렴하게 예약이 가능하다.

나. 호텔 소개

뉴질랜드는 관광 국가로 호텔이나 모텔이 많아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으며 가격도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다. 관광 성수기인 12월-2월에는 호텔예약이 힘들 때도 있다.

호텔예약은 통상 현지 여행사를 통해 예약하는 것이 관행이며 개인이 예약하는 것보다 할인 요금을 받을 수 있다. 무역관도 현지 출장자나 업무 유관 방문객들에 게는 여행사에 예약을 의뢰하고 카드로 직접 이용 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한국에서 직접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거나 모텔 등 숙박시설을 직접 접촉하는 경우도 많다.

관광 시즌(12~2월)이나 주요 행사가 있을 때에는 호텔 예약이 곤란하거나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비수기(계절 요인)를 감안하여 숙박 시설을 크게 확충하지 않는 데 원인이 있다.

한국인이 운영하는 여행사가 많아 이들을 통해 예약 가능하며 인터넷을 통한 예약도 일반화되어 있다. 많은 기관들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호텔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예약도 처리하고 있다. 여행 정보 및 호텔 정보를 제공하는 곳인 AA센터 (www.nz-accommodation.co.nz)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요금은 여행사마다 다르고 관광 성수기인 11~3월이 비싼 편이다. 구체적인 요금은 상황에 따라 10-20% 내외에서 변동 가능하다.

주요 호텔 및 연락처

호텔명	주소
	연락처
The Stamford Plaza	Lower Albert St., Auckland TEL : (64 9) 309 8888, FAX : (64 9) 379 6445
Crowne Plaza Auckland	128 Albert St, Auckland, 1010 TEL : (64 9) 302 1111, FAX : (64 9) 302 3111
Rendezvous Hotel	Cnr. Mayoral Dr. & Vincent St. Auckland TEL : (64 9) 366 3000 FAX : (64 9) 366 0121
Sky City Hotel	Cnr Victoria St., & Federal St., Auckland TEL : (64 9) 363 6000 FAX : (64 9) 363 6010
Pullman Auckland Hotel (Old Hyatt Regency)	Cnr. Waterloo Qdt. & Princess St., Auckland TEL : (64 9) 355 1234 FAX : (64 9) 303 2932
Langham	Cnr. Symonds St. & City Rd., Auckland Tel : (64 9) 379 5132 Fax : (64 9) 377 9367
Plaza International	148-176 Wakefield St., Wellington Tel : (64 4) 473 3900 Fax : (64 4) 473 3929
Parkroyal Hotel	Cnr Grey & Featherston St. Wellington Tel : (64 4) 472 2722 Fax : (64 4) 472 4724
Copthorne Plimmer	Cnr Boulcott St & Gilmer, Wellington Tel : (64 4) 473 3750 Fax : (64 4) 473 6329
Millennium Hotel	14 Cathedral Square, Christchurch Tel : (64 3) 365 1111 Fax : (64 3) 365 7676
Holiday Inn City Centre	Cnr Cashel & High St, Christchurch Tel : (64 3) 365 8888 Fax : (64 3) 364 5143
Millennium Hotel	Cnr Frankton Rd. & Stanley St. Queenstown Tel : (64 3) 441 8888 Fax : (64 3) 441 8889
Gardens Parkroyal	Cnr Earl St & Marine Parade, Queenstown Tel : (64 3) 442 7750 Fax : (64 3) 442 7469
Novotel Queenstown	Cnr Earl St and Marine Parade, Queenstown Tel : (64 3) 442 7750 Fax : (64 3) 442 7469
Millennium Hotel	Cnr Eruera & Hinemoa St., Rotorua Tel : (64 7) 347 1234 Fax : (64 7) 348 1234
Novotel Rotorua	Lake End Tutanekai St. Rotorua Tel : (64 7) 346 3888 Fax : (64 7) 347 1888
Rydges Hotel	272 Fenton St., Rotorua Tel : (64 7) 349 0099 Fax : (64 7) 349 0900

뉴질랜드 여행객들은 호텔 외에 모텔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뉴질랜드 모텔은 주방시설이 완비되어 있어, 가족 단위 여행 시 많이 찾고 있다. 성수기에는 빈 방을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미리 예약을 해야 한다.

모텔 연락처

Rock Field	100 Rockfield Rd. Greenlen. Auckland Tel: (64 9) 579 4525 Fax: (64 9) 579 7403
Aristotles	Corner Link Dr & Sunnynook Rd. Auckland Tel: (64 9) 444 1177
Takapuna Golf Lodge	27 Ocean View Rd. Northcote Tel: (64 9) 419 8080
Northland Motel	232 Main North Rd. Papanui .Christchurch Tel: (64 3) 352 8478
Rotorua Gate Motel	1322 Hinemoa St.Rotorua Tel: (64 7) 348 1623
Tauranga GardenCourt	44 Sixteenth Avenue. Tauranga Tel: (64 7) 578 5858

다. 주요 식당 소개

현지 식당은 10뉴질랜드달러 내외의 패스트푸드식당부터 최고급 레스토랑에 이르기까지 종류가 다양하다. 영업 시간은 보통 11:30-15:00(점심) 및 18:00-21:00(저녁) 이나 영업 시간이 연장되고 있는 추세이다. 교포 및 한국 여행객이 많아짐에 따라 한국 음식점이 Auckland에 80여 개, 시외 지역에 20개 이상 있으며, 오클랜드 중심지역인 Queen Street 끝에 한국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어 교포 및 비즈니스 출장자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다.

한식은 다양하게 이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으로부터의 이민자가 늘어나던 지난 2000년 중반과 달리 유학생 및 이민자의 수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어 영업 환경이 악화되고 있고 오클랜드 시내는 물론 외곽 지역에도 한식 및 중식 식당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어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 식당

식당명	전화	소재지 및 특징
화 로	09-379-4040	시내에 위치하고 있어 이용이 편리 (최고급)
큐 빅	09-377-1851	시내에 위치하고 있어 이용이 편리
본가네	09-368-7420	시내에 위치하고 있어 이용이 편리
왕릉갈비	09-444-0092	43-51Downing St. Glenfield. 갈비, 영양탕, 감자탕, 굴밥

중국 식당

식당명	전화	소재지
Grand Harbour	09-357-6889	Viaduct Harbour 18-28
Dragon Boat	09-379-6996	7-37 Elliot St. City
New Orient	09-379-7793	20 Elliot St. City
취선루	09-444-9987	20 Link Dr. Glenfield ,한국인 경영
태화루	09-488-0166	25 Shakespear Rd. Millford, 한국인 경영

일본 식당

식당명	전화	소재지
Dailkoku	09-302-2432	48 Quay St
Narita	09-309-0033	492 Queen St., 재일교포 경영
Genji	09-360-5050	26 Ponsonby Rd., 한국인 경영
Katsura	09-366-3000	Cnr Mayoral Drive & Vincent Street
Soto Japanese Garden Restaurant	09-360-0021	17 St.Mary's Rd. Ponsonby 10 NZ Restaruants 순위에 오름
Zipangu	09-376-4565	45 Ponsonby Road. Auckland
Wagamama	09-359-9266	1 Courthouse Lane.CBD

European 식당

식당명	전화	소재지
Sails	09-378-9890	WestHaven Marina. Westhaven Drive
Soul	09-356-7249	Viaduct
Aquamatta	09-302-0478	2A/48 Courthouse Lane
Toto	09-302-2665	53 Nelson Street
Orbits	09-363-3000	Skycity Hotel
Mecca	09-358-1093	85 Customs Street West
Harbourside	09-307-0556	1 st Floor. Ferry Bldg. Quay St
Pompino	09-309-3559	Cnr Quay & Queen St.
Prego	09- 376-3095	226 Ponsonby Rd.Ponsonby

라. 통역정보

성명	성별	생년	세부사항	
박인협 (오클랜드)	남	1983	휴대폰	+64-21-778-787
			이메일	thomas.park@auckland.ac.nz
			최종학력	오클랜드 대학교 의과 Ph.D (박사)
			현재직업	오클랜드 대학교 의대 뇌의학연구소 연구원
이승우 (오클랜드)	남	1985	휴대폰	+64-21-374-407
			이메일	lee.brendon@hotmail.com
			최종학력	AUT 대학교 학사 회계학
			현재직업	회계법인 근무
임성훈 (오클랜드)	남	1982	휴대폰	+64-21-475-858
			이메일	sunghoon.im@gmail.com
			최종학력	오클랜드 대학교 박사 (물리학, 광통신)
			현재직업	광통신 회사 근무
서정혁 (오클랜드)	남	1992	휴대폰	+64-21-042-5453
			이메일	jhsmic@gmail.com
			최종학력	오클랜드 대학교 재학 (법학, 경제)
			현재직업	오클랜드 대학교 학생
이진용 (오클랜드)	남	1987	휴대폰	+64-21-585-188
			이메일	smart_tiger_guy@hotmail.com
			최종학력	오클랜드 대학교 석사 (법학)
			현재직업	변호사
정선하 (오클랜드)	여	1970	휴대폰	+64-21-258-0456
			이메일	sunnaj@gmail.com
			최종학력	고려대 석사, AUT 대학교 병원 통역과정 수료
			현재직업	오클랜드 대학교 의대 웹매니저
허수정 (오클랜드)	여	1991	휴대폰	+64-22-128-9309
			이메일	thur029@gmail.com
			최종학력	오클랜드 대학교 재학 (법학, 정치, 경제)
			현재직업	오클랜드 대학교 학생

주1: 2014년 6월 기준

주2: 일일통역비 350뉴질랜드달러, 외부지역 출장 시 별도 협의

9. 출장 시 유의 및 참고사항

가. 시내교통편, 대중교통 및 택시, 렌트

1) 택시이용

오클랜드는 많은 택시 회사가 영업하는 곳으로 택시 이용이 편리하다. 그러나 일부 대형 호텔 등을 제외하면 대기 중인 택시가 없다. 모두 콜택시 형태로 움직이기 때문인데, 요금은 택시 회사별로 차량에 따라 상이하나 2014년 6월 기준 기본 요금은 3.00뉴질랜드달러 + KM 당 2.75뉴질랜드달러 정도이다. 대표적인 콜택시 호출 전화번호(오클랜드)는 300-3000 이며 별도의 팁은 주지 않아도 된다.

2) 버스 이용

버스는 출퇴근시의 러시아워를 제외하고는 배차 간격이 보통 30~60분으로 운행 횟수가 적고 운행 시간도 제한되어 있어 지리에 익숙하지 못한 외국인 여행자의 경우에는 이용이 쉽지 않다. 오후 9시 이후에는 대부분 버스운행이 중단된다.

나. 주의사항

뉴질랜드에서 음주 법적 허용 연령은 18세이며 오클랜드 시내중심가의 경우 알코올 금지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길에서 술을 마실 수 없다. 또한, 공공장소, 바, 레스토랑, 커피숍, 극장, 영화관, 대중교통, 직장 내에서 금연이며 18세 미만에게 담배 판매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도박의 경우 합법이지만 20세 미만 카지노 출입은 불법이므로 유의해야 한다.

운전을 해야 하는 경우 뉴질랜드는 좌측통행인점을 주의해야 하며 운전 중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은 필수며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은 금지. 유아 및 어린이 탑승 시 카시트 장착은 필수이다.

다. 여행경보 단계 정보 등 주의사항

2011년 크라이스트처치 지역이 지진으로 인해 여행이 제한되었으나, 2014년 6월 기준으로 특별한 여행 제한 정보는 발령되지 않고 있다.

라. 위험지역

뉴질랜드의 치안 상태는 대체로 양호하다. 그러나 주말 저녁 오클랜드 시내 중심 상가 밀집 지역에는 술과 유흥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많아, 최근 이 지역을 밤에 돌아다니는 것이 위험하다는 인식이 대두되고 있다. 평상시에도 일몰 후에는 차량이 없이 단독으로 외출하는 것은 삼가는 것이 좋다. 또한, 빈 집이나 차를 터는 줌도둑은 항상 경계해야 한다.

마. 도량형

미터법을 사용하고 있어 한국과의 차이는 없으며 전기 규격은 한국과는 다른 230V~240V, 50Hz, 3 PIN 플러그를 표준 규격으로 하고 있다.

뉴질랜드 플러그용 어댑터



대부분의 호텔이나 모텔에 비치된 전기 플러그는 모양이 달라 한국의 제품은 직접 사용이 불가능하며, 별도의 플러그를 구입하여 부착해야 사용할 수 있다. 별도의 플러그는 공항 입국장의 매점이나 한국식품점 등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바. 환율/환전/신용카드 사용

뉴질랜드 통화는 뉴질랜드달러(NZ\$)로서 1뉴질랜드달러는 100센트이고, 주화는 10, 20, 50센트와 1, 2달러 등이 있으며 지폐로는 5, 10, 20, 50, 100달러가 있다.

2014년 6월 20일 기준, 1뉴질랜드달러는 미화 0.8658달러, 원화 886원의 기준환율을 기록하고 있다.

환전은 평일 영업 시간에 일반 은행과 공항 환전소 및 주요 변화가의 사설 환전소 등에서 가능하고 공항이나 호텔에서는 항상 가능하다. 뉴질랜드 사람들은 20뉴질랜드달러 정도 이상만 되면 대부분 직불카드나 신용카드를 사용해 현금을 많이 소지하지 않는다.

다만, 일부 식품점이나 식당 등에서는 신용카드를 받지 않는 곳이 있으므로 일정 수준의 현금을 지닐 필요가 있다. 환전 환율은 은행, 공항 환전소, 번화가의 사설 환전소 중에서 은행의 환율이 가장 유리하나(크게는 10% 정도의 차이가 있음), 은행 소재지를 잘 모르는 비즈니스 출장자의 경우 100달러 정도의 소액은 공항에서 환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뉴질랜드에서는 거의 모든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에 개인 비밀번호(PIN number)가 부여되었다면 전국의 은행이나 쇼핑센터에 있는 자동 현금 출납기(ATM)에서 현금 인출도 가능하다. 여행자 수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사. 출장에 필요한 추천 복장

6~8월은 뉴질랜드의 겨울로 비가 자주 내리고 날씨가 쌀쌀하여 여행이나 외부 활동에 제한을 받는다. 낮에는 해가 있어 따뜻하나, 출장 시 추동복을 준비해 오는 것이 필수적이다.

12~3월은 여름으로 낮에는 기온이 높고 자외선이 매우 강하나 밤에는 선선하므로 출장 복장으로는 춘추복이 무난하다. 자외선이 강해서 선글라스도 필요하다. 일조 시간이 가장 긴 12월 말에는 저녁 9시까지도 여가 및 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으며 미션베이 등 시내 인근의 주요 지역은 인파로 붐빈다.

아. 국제 통화

□ 뉴질랜드에서 한국으로 통화

00(국제 전화번호)+82(한국 국가번호)+2(0을 제외한 서울 지역번호)+ 해당 전화번호
(예: 코트라 본사: 00+82+2+3460-7114)

□ 한국에서 뉴질랜드로 통화

001 또는 해외접속번호+64(뉴질랜드 국가번호)+9(0을 제외한 오클랜드 지역번호)+해당 전화번호 (예: 오클랜드무역관: 001 + 64 + 9 + 373-5792)

뉴질랜드에서 한국으로의 수신자부담 전화(콜렉트 콜)는 DACOM과 한국통신을 이용할 수 있으며 DACOM은 0009-080-상대방 전화번호를 순차적으로 누르면 되고 한국통신은 자동 Collect Call(000-982-4번을 누르고 지역번호와 전화번호)과 고국 교환원 전화번호(000-982-0)을 누른 후 교환원을 통해 전화하는 방식이 있다. 직통 전화는 000-984-지역번호와 전화 번호를 누르면 된다.

한국인 유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저렴한 국제전화 방법은 국제 전화카드를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스카이프를 비롯한 인터넷 무료전화이다. 최근 들어 한국에서 070 인터넷전화를 직접 가져와 사용하는 교민이나 유학생이 크게 늘고 있다.

자. 국내 통화

비즈니스 출장 시에는 오클랜드 공항도착 시 공항에서 휴대폰을 임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중전화는 주로 전화카드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전화 카드를 미리 구입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설치된 부스가 적어 상대적으로 전화 이용이 아주 불편하며, 일부는 신용카드 사용도 가능하다. 전화카드는 Pharmacy, Chemist 또는 Phone Card라는 간판을 걸고 있는 소매점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공항이나 시내 중심가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전화기와 동전 전화기도 설치되어 있으며 요금은 통화당 70센트이다.

차. 인터넷 사용 환경

한국에서 노트북을 가져갈 경우 뉴질랜드 방식에 맞는 콘센트를 사용하면 대부분 바로 사용할 수 있다. 5성급 호텔의 대부분 객실 내에는 인터넷 라인이 연결되어 있다. 노트북을 가져가지 않더라도 시내에 산재한 인터넷 카페(주로 한국인이 운영하며 한국어 버전도 공급)가 많이 있으며 가격도 저렴하다(1시간 1~2뉴질랜드달러). 다만, 느린 인터넷 속도는 감내해야 한다.

최근에는 텔레콤에서 공중전화부스 주변으로 무료 와이파이(시간 및 용량 제한)를 제공하고 있다.

카. 유용한 연락처

주 뉴질랜드 대한민국 대사관은 행정 수도인 웰링턴(Wellington)에 소재하고 있으며 뉴질랜드 최대 도시인 오클랜드(Auckland)에는 대한민국 대사관 오클랜드 분관이 소재해 교민 및 여행객들을 위한 영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KOTRA를 비롯한 여타 주요 기관들도 오클랜드에 위치하고 있다.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3만여 명의 교민 대부분도 오클랜드에 체류하고 있고 웰링턴과 크라이스트처치 등 3대 도시에 집중하여 거주하고 있다.

유용한 연락처는 다음과 같으며 한인 사회와 관련해서는 현지에서 발행되는 교민 신문(인터넷 서비스 동시 제공)을 활용하면 주요 기관 연락처는 물론 필요한 생활 정보 다수를 입수할 수 있어 편리하다.

□ 공공 기관

기관 명	소재지	전화번호
대한민국 대사관(Embassy of R.O.K.)	Wellington	+64-4)473-9073
대사관 분관(Consular Agency)	Auckland	+64-9)379-0818
KOTRA 오uckland무역관	Auckland	+64-9)373-5792
대한항공(Korean Air)	Auckland	+64-9)914-2000
국민은행(Kookmin Bank)	Auckland	+64-9)366-1000
재 오uckland 한인회	Auckland	+64-9)489-5700
크라이스트처치 한인회	Christchurch	+64-3)348-2766

□ 긴급 연락처(현지기관)

- 화재, 경찰, 구급: 111
- 교통 정보: 0900-33-222(Transit NZ)
- 전화번호 문의: 018 (건당 사용료 50센트 부과)

10. 유관기관 웹 사이트

가. 정부단체 및 기관

- 경제개발부(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 주소: 33 Brown Street, Wellington
 - 전화: 64-4)472-0030
 - 팩스: 64-4)473-4643
 - 이메일: info@med.govt.nz
 - 홈페이지: www.med.govt.nz
- 해외투자실(Overseas Investment Office, OIO)
 - 주소: 160 Lambton Quay, Wellington
 - 전화: 64-4)462-4490
 - 팩스: 64-4)460-0111
 - 이메일: oio@linz.govt.nz
 - 홈페이지: www.oio.linz.govt.nz
- 기업등기소(Companies Office)
 - 주소: Northern Business Centre, Victoria Street West, Auckland
 - 전화: 64-3)962-2602 (국제전화), 0508-266-726 (국내 무료전화)
 - 팩스: 64-9)912-7787
 - 이메일: 홈페이지 Q&A 이용
 - 홈페이지: www.companies.govt.nz
- 무역진흥청(New Zealand Trade & Enterprise)
 - 주소: Level 11, ANZ Centre, 23-29 Albert Street, Symonds Street, Auckland
 - 전화: 64-9)366-4768
 - 팩스: 64-9)366-4767
 - 이메일: 홈페이지 Q&A 이용
 - 홈페이지: www.nzte.govt.nz
- 투자진흥청(Investment New Zealand)
 - 주소: Level 11, ANZ Centre, 23-29 Albert Street, Symonds Street, Auckland
 - 전화: 64-9)366-4768
 - 팩스: 64-9)914-9896
 - 이메일: info@investmentnz.govt.nz
 - 홈페이지: www.investmentnz.govt.nz

- 통합 오클랜드 시청(Auckland Council)
 - 주소: 35 Graham Street, Auckland Central
 - 전화: 64-9)301-0101
 - 팩스: 64-9)301-0100
 - 이메일: info@investmentnz.govt.nz
 - 홈페이지: www.aucklandcouncil.govt.nz
- 웰링턴 시청(Wellington City Council)
 - 주소: 101 Wakefield Street, Wellington
 - 전화: 64-4)499-4444
 - 팩스: 64-4)801-3138
 - 이메일: info@wcc.govt.nz
 - 홈페이지: www.wellington.govt.nz
- 크라이스트처치 시청(Christchurch City Council)
 - 주소: Civic Offices. 53 Hereford Street, Christchurch Central
 - 전화: 64-3)941-8999
 - 팩스: 64-3)941-8786
 - 이메일: info@ccc.govt.nz
 - 홈페이지: www.ccc.govt.nz

나. 언론단체

- 뉴질랜드 헤럴드(New Zealand Herald)
 - 주소: 46 Albert St Auckland City Auckland
 - 전화: 64-9) 373-6400
 - 팩스: 64-9) 373-6575
 - 이메일: yournews@nzherald.co.nz
 - 홈페이지: www.nzherald.co.nz
- 뉴질랜드 국영방송(TVNZ)
 - 주소: 100 Victoria St West Auckland Central
 - 전화: 64-9) 916-7000
 - 팩스: 64-9) 916-7934
 - 이메일: yournews@nzherald.co.nz
 - 홈페이지: www.tvnz.co.nz

- 더 도미니언 포스트(The Dominion Post)
- 주소: 40 Boulcott Street, Wellington
- 전화: 64-4) 474-0000
- 팩스: 64-4) 474-0350;
- 이메일: yournews@nzherald.co.nz
- 홈페이지: www.dompost.co.nz

다. 한국기관 및 한인단체

- 주 뉴질랜드 대한민국 대사관
- 주소: 11th Floor, ASB Bank Tower, 2 Hunter Street, Wellington
- 전화: 64-4) 474-0000
- 팩스: 64-4) 474-0350
- 이메일: info-nz@mofa.go.kr
- 홈페이지: nzl-wellington.mofa.go.kr

- 주 오클랜드 대한민국 분관
- 주소: Level 12, Tower 1, 250 Queen Street, Auckland CBD 1010, New Zealand
- 전화: 64-9) 379-0818
- 팩스: 64-9) 373-3340
- 이메일: auckland@mofa.go.kr
- 홈페이지: nzl-auckland.mofa.go.kr

- KOTRA 오클랜드 무역관
- 주소: Level 16, BDO Tower, 120 Albert St, Auckland
- 전화: 64-9) 373-5792
- 팩스: 64-9) 373-2952
- 이메일: kotra@kotra.co.nz
- 홈페이지: www.kotra.or.kr/auckland

- 오클랜드 한인회
- 주소: 5 Argus Pl, Hillcrest, Auckland
- 전화: 64-9) 443-7000
- 팩스: 64-9) 489-5701
- 이메일: nz@nzkorea.org
- 홈페이지: www.nzkorea.org

라. 비즈니스 관련 현지기관

1) 뉴질랜드 전체 법규

- 국회사무국(Parliamentary Counsel Office)
- 주소: Level 12, Reserve Bank Building, 2 The Terrace, Wellington
- 전화: 64-4)472-9639
- 팩스: 64-4)499-1724
- 이메일: contact.pco@parliament.govt.nz
- 홈페이지: www.legislation.govt.nz

2) 노무 관련 법규

- 기업혁신고용부(Ministry of Business, Innovation and Employment)
- 주소: P.O. Box 3705, Wellington, New Zealand
- 전화: 64-4)915-4400
- 팩스: 64-4)915-4015
- 이메일: workplacecontactcentre@mbie.govt.nz
- 홈페이지: www.dol.govt.nz

3) 조세 관련 법규

- 국세청(Inland Revenue Department)
- 주소: PO Box 761, Waikato Mail Centre, Hamilton 3240
- 전화: 64-4)472-0030
- 팩스: 64-4)890-4510
- 이메일: nonres@ird.govt.nz
- 홈페이지: www.ird.govt.nz

4) 각종 정부 통계

- 통계청(Statistics New Zealand)
- 주소: Statistics House, The Boulevard, Harbour Quays, Wellington
- 전화: 64-4)931-4600
- 팩스: 64-4)931-4049
- 이메일: info@stats.govt.nz
- 홈페이지: www.stats.govt.nz

11. KOTRA 무역관 안내

가. 무역관 개설에서 현재까지

1973년 KOTRA 오클랜드 사무소로 개설되어 1976년 오클랜드 무역관으로 명칭이 변경된 이래, 2014년 현재까지 우리나라 수출 주력품목의 현지진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역동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다.

- 관할지역: 뉴질랜드, 타히티, 통가, 서사모아, 케르마텍, 쿡, 마르케사 및 이에 속한 도서국

나. 오클랜드 무역관 위치 및 연락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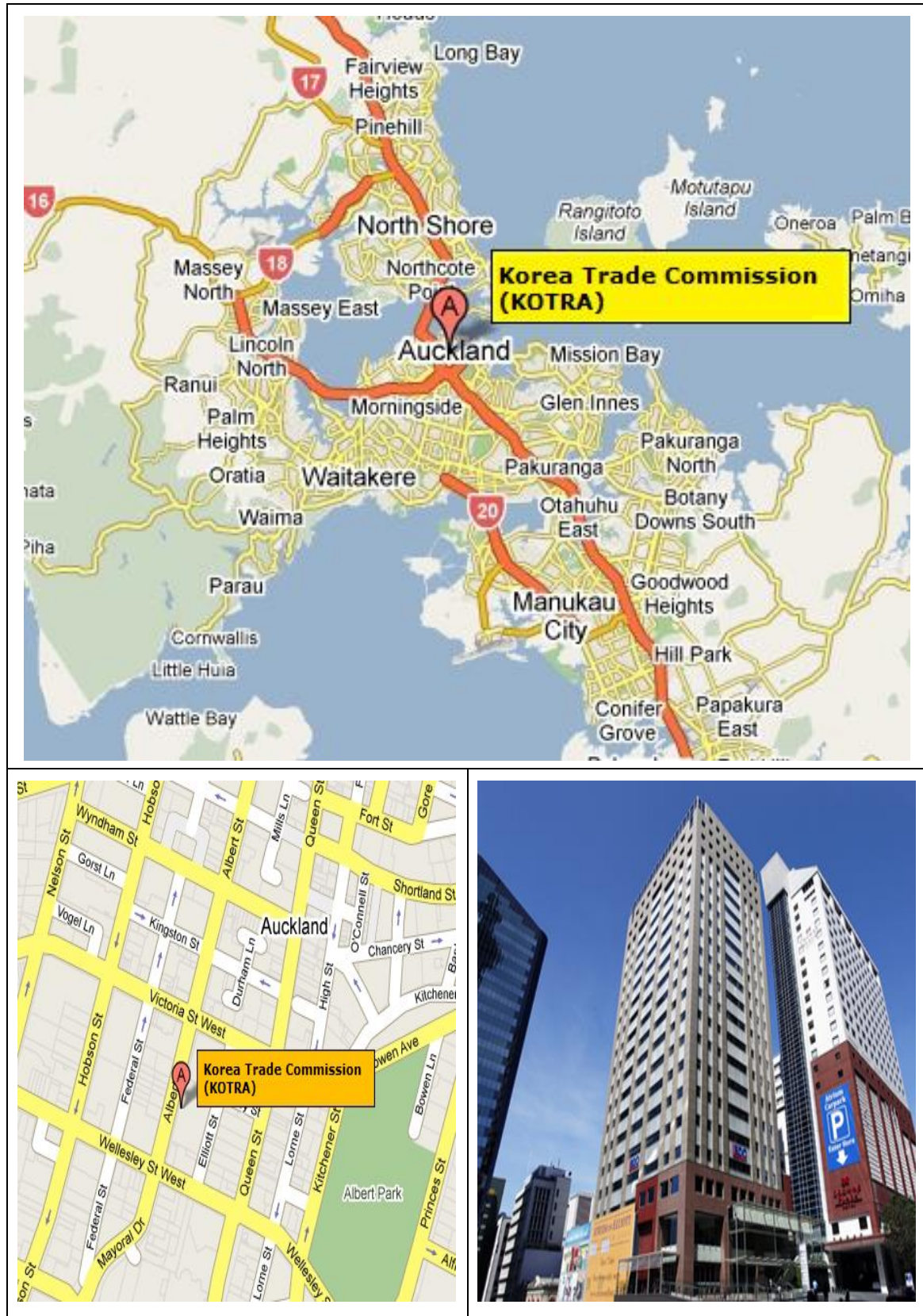
1) 공항에서 무역관까지 찾아오는 길

- 공항 버스
 - 버스운임: 16뉴질랜드달러(10분간격, 24시간 운행) Queen Street (Auckland Central Backpacker 앞) 하차
 - 하차지점에서 무역관까지: 도보 5분 (무역관 주소 이용)
- 택시
 - 택시운임: 약 75뉴질랜드달러
 - 무역관 건물 주소를 기사에게 알려주고 무역관 입주 건물 앞에서 하차
- 셔틀 미니밴
 - 셔틀운임: 약 35뉴질랜드달러
 - 무역관 인접 크라운플라자호텔을 기사에게 알려주고 호텔 앞에서 하차. 호텔과 무역관 입주건물로비가 연결되어있음.
 - 사전 예약 필수(www.supershuttle.co.nz)

2)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Level 16, BDO Tower, 120 Albert St. Auckland, New Zealand
- 전 화: (+64-9) 373-5792
- 팩 스: (+64-9) 373-2952
- 이메일: kotra@kotra.co.nz
- 홈페이지: www.kotra.or.kr/auckland(국문), www.kotra.co.nz(영문)

무역관 위치 지도와 입주건물 전경



다. 인원현황

성명	직위	연락처	업무
김락곤	관장	(+64-9) 373-5792	무역관업무 총괄
김미경	현지	(+64-9) 373-5792	무역사절단, 전시회, 바잉오퍼, 프로젝트, 세일즈출장
이주연	현지	070-8623-3652	지사화사업 전담
최종진	현지	(+64-9) 373-5792	조사업무, 조사대행, CSR

라. 사업안내

1) 시장개척사업

□ 해외세일즈지원(지원신청)

중소기업의 해외시장개척을 위해 직원의 해외출장 시 호텔예약, 통역알선, 상담장 제공 등의 기본적인 서비스는 물론 현지 유관 바이어 발굴 및 상담주선, 바이어리스트 제공 및 추가적인 Follow-up 등을 통해 출장이 최대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해외시장 조사대행 (지원신청)

국내업체가 필요로 하는 현지 바이어리스트 및 각종 시장동향 정보를 대신 수집하는 유료정보조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관심바이어 발굴조사, (원자재) 공급업체 조사,
- 시장동향 (수요·수출·수입·생산·경쟁 및 가격동향, 수입관리제도, 거래 유의사항 등)
- 기타 조사 (투자환경, 국제입찰, 프로젝트, 신용조사 및 수출대금 미결제 조사 등)

□ 구매상담회 및 방한바이어 유치활동

한국상품 수입을 희망하는 개별바이어의 방한을 유도하거나 구매사절단을 구성 방한토록 하여 국내업체와의 수출상담회를 개최함으로써, 국내업체들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국내에서 바이어와 수출상담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무역사절단 지원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및 본사 무역사절단의 수출상담 주선, 통역 지원, 현지 방문 활동 지원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수행한다.

□ 수출인콰이어리 발굴

바이어의 한국상품 수입 인콰이어리등을 발굴하여 무역관 홈페이지와 Buy Korea 사이트 (www.buykorea.org) 등을 통해 국내 업체에 전파하고 Follow-up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거래선 발굴 및 지원하고 있다.

2) 중소, 벤처기업 지사화사업

해외 무역관을 해외시장 정보수집 및 마케팅능력이 취약한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지사로서 활용하도록 하여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소정의 참가비를 납부하고 서비스 신청 시 해외판로 개척에 필요한 제반 활동을 바이어 발굴부터 거래성사단계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 지원내용

- 시장정보 제공(품목별 수요/수출입/가격/경쟁/신제품 동향 등)
- 품목별 바이어정보 제공 및 바이어 신용조사
- 관심바이어 발굴, C/L발송, 카타로그 배포
- 관심바이어 FOLLOW-UP 지원
- 현지 세일즈 출장지원(호텔예약/상담주선/상담장제공/통역지원 등)
- 국제입찰 참가지원
- 무역관 내도 수출 인콰이어리 제공
- 기타 수출계약시까지의 제반사항등

3) 조사사업

□ 수출현안조사

무역환경의 변화에 우리 기업이나 정부가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경제, 무역 관련 제도, 절차 등 심층 조사서비스를 제공한다.

□ 수출 유망상품 및 산업별 시장동향 정보 수집

특정상품의 수요 및 생산동향, 수출입추이, 경쟁동향 및 시장분석, 마케팅 확대방안을 조사분석하고 현지 소비자, 수입상들의 기호변화, 최근 수입흐름 등을 적시에 파악하여 국내기업에 전파하고 있다.

□ 국가정보 업데이트

뉴질랜드의 경제현황 및 산업, 제도, 투자 등 비즈니스 기초정보와 지역경제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있다.

4) 전시사업을 통한 수출지원

□ 박람회 참가 지원

수입상 발굴, 자사 상품소개 등 업체의 해외시장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관할지역에서 개최되는 유명국제박람회를 선정, 한국관으로 적극 참가하거나 기타 박람회의 개별참가업체 지원업무 수행한다.

KOTRA가 주관하거나 지원하는 국내 전시회에 참가하거나 참관할 해외 현지업체 모집 및 지원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예) 서울국제식품전(Seoul Food), 한국자동차부품전 (KOAA)

□ 국제박람회 정보수집

관할지역에서 개최되는 유망 전시회 정보를 수집하여 매년 발간되는 'KOTRA 국제박람회 디렉토리'에 반영하고 있다.